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p>권두칼럼</p> <p>현안분석</p> <hr/> <p>정책토론포트</p> <p>주요국의 조세동향</p> <p>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p> <p>정책흐름</p> <p>재정통계</p> <p>이슈 & 포커스</p>	<p>02 활기찬 시장경제, 정권교체 정체성에 길이 있다 · 배병후</p> <p>06 기준조세체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 김종면</p> <p>19 평균 은퇴연령에 대하여 · 전병힐</p> <hr/> <p>41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p> <p>80 대만 세제개혁안 발표 외</p> <p>88 美, 세금환급 효과 ‘반짝’..6월 물가↑, 실질소비↓ 외</p> <p>95 주·토공 통합 등 공기업 선진화 착수</p> <p>106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 및 재정사업 발주 현황</p> <p>108 '07년도 경영평가 부진 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본격 착수</p> <p>110 7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p> <p>112 08. 6월 및 2/4분기 산업활동동향 분석 및 평가</p> <p>116 외부전문가 세무조사대상 선정절차에 참여</p> <p>118 경영애로 기업의 납세유예시 담보면제 대폭 확대</p> <p>120 갑근세 등 원천세, 매월 신고·납부에서 6개월에 한 번으로</p> <p>122 지방재정에 대한 공공증, 한 번에 푼다</p> <p>125 소득세 예산 및 징수 외</p> <p>134 감세안 붓물..재원 마련 가능할까 외</p>
---	---

활기찬 시장경제 정권교체 정체성에 길이 있다



배병휴
월간 『경제풍월』 발행인

신정부의 핵심과제인 ‘활기찬 시장경제’가 거의 실종지경이다. 당초 전봇대 뽑기로부터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로 활기차게 출범했지만 촛불시위 정국에 발목이 묶여 경제 살리기 정책이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촛불시위의 목적과 성격이 변질되고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력 악화를 보고 정권교체를 원했던 세상 민심은 “이건 아니야”라고 고개를 내젓는다.

신정부의 불운과 국민 불행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출범했지만 초기단계에 국민정서와 의 불화로 통상적인 ‘허니문’ 기간도 누리지 못했다. 곧이어 광우병 괴담으로부터 촛불시위 장기화에 따른 반시장경제 세력의 도전 앞에 기진맥진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촛불문화제의 순수한 목적이 도중에 누군가에 의해 불법 폭력으로 악화되어 정권 퇴진론으로 번져 법질서가 무너진 형국이었으니 시장경제가 설 땅이 없어진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초보정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야권이 정치파업으로 의회정치를 정지시키고 전투적 노조가 정권퇴진 투쟁을 공언하기에 이르렀으니 아무리 훌륭한 정책인들 소용이 없었다.

전임 노무현 정부는 친노동 성향이었지만 국민소득 2만달러, 주가 2천포인트, 무역고 7천억달러라는 획기적인 경제지표를 생산하고 물러났다. 반면에 친기업 경제대통령은 준비된 정책을 포기하면서까지 고물가·저성장을 저지코자 했지만 각종 지수 추락을 막을 재간이 없었다. 한마디로 정권 차원의 불운이자 국민 성공시대를 염원한 국민의 실패가 아닐 수 없다.

국민 성공에 이명박 정부 실패

한미 쇠고기 협상의 경우 신규 정권이 모두 한미FTA와 전면개방의 신념을

가진 시장경제 수호론자들에 의해 추진됐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원칙동의에 차이가 있을 수 없었다. 다만 최종 결단과정에서 신정부가 조심성 없이 서둘러 서둘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촛불시위가 직접적 느껴지지만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강조한 것은 성과였고 정부가 추가협상을 통해 상당한 검역주권을 확보한 것도 성과이다. 그런데도 촛불이 꺼질듯 하면 다시 불길을 지피는 세력이 등장한 것은 당초 목적 외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느냐고 의심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촛불문화제 민심을 향해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국민과의 소통에 성의를 다하고자 자세를 고친 점은 국민의 승리였다. 반면에 대선, 총선 실패를 통해 국정 파탄세력이라고 자인했던 구여권이 반사적 기세가 등등해져 초보정부를 상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실패에 속한다.

정책 논의에 앞서 법질서 확립

촛불시위의 장기화는 시장경제의 적대세력에게 활동무대를 제공한 것이 가장 우려할 대목이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사람들은 지금껏 국책사업을 발목 잡아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반미운동으로 한미관계를 손상시킨 역전의 용사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또, 국민대책회의 참여단체들로 보면 평소 반재벌, 반시장 행동을 서슴지 않은 전투적 파업 전력이 화려하다. 민노총의 경우 공기업 구조조정을 반대하기 위해 “철도가 멎고 전기가 끊어지는” 파업을 단행할 수 있다고 공개선언했다. 일부 시위대가 폭력으로 보수언론사 간판을 떼고 광고주를 협박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상인들마저 위협한 것이 시장경제 적대세력들의 행태를 말해 준다.

이렇게 짚어보면 시장경제의 활성화는 특정 정책논의에 앞서 법과 질서의 확립으로부터 촛불시위를 정치적 이득의 기회로 삼는 일부 정치권과 전투적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정권교체 정체성에 길이 있다

신정부가 시장경제 활성화 정책과제들을 제시해 놓고도 작동시키지 못하는 정치적 책임은 절대다수당을 차지한 집권당에게 있다. 소수 야당과의 국회 개원협상에서부터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는 것은 집권당의 무능이자 신정

.....
 시장경제의 활성화는 특정 정책논의에 앞서 법과 질서의 확립으로부터 촛불시위를 정치적 이득의 기회로 삼는 일부 정치권과 전투적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절대 다수의 국민 편에 서서 '활기찬 시장 경제'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력을 내 보이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성공과 국민 성공 시대에 대한 보답이라고 믿는다.

부의 경제살리기를 제약하는 큰 요인이다.

정부와 집권당이 개혁하며 가야 할 길은 멀고 바쁘다. 3차 오일쇼크 상황에서 에너지와 물가 대책은 말할 것도 없고 공기업 개혁, 세계개편 등 법과 제도의 개선과제가 시각을 다투며 산적해 있다.

신정부가 6개월 쯤 됐으면 초기의 실패와 시련을 비싼 교훈으로 삼아 경제살리기 정부의 특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 지지에 보답하고 정권교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법과 질서와 시장경제 수호에 매달리는 것이 상책이다.

첫째, '여의도 정치'를 멀리 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가까이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국회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정치와 경제논리의 분리는 원론이지만 다수당이 소수당을 설득시킬 수 있는 설득력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둘째, 3차 오일 쇼크적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통합이 최상책이므로 법질서와 친시장경제로 총화를 이루도록 나서야 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는 최장시간 근로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만 부가가치 생산성은 꼴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고비용 저효율은 시장경제 원리를 작동시켜 극복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셋째, 각종 개혁정책은 정치적 이유로 양보하거나 후퇴시켜서는 안 되고 설득력과 추진력을 확보하여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만 한다. 공기업 개혁, 세계개편, 금융혁신, 민생안정 등 어느 것 하나 정치적·사회적 반론이 없을 수 없는 고난도 개혁 과제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이명박 정부의 성공요인은 '정권교체의 정체성' 확립으로 집약된다. 정권교체의 정체성은 곧 대한민국 정부의 정체성이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정체성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비판과 거부가 따르고 정치적 갈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절대 다수의 국민 편에 서서 '활기찬 시장경제'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력을 내 보이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성공과 국민 성공시대에 대한 보답이라고 믿는다. KIPF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기준조세체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김종면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평균 은퇴연령에 대하여
전병힐 ·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기준조세체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jhrv@kipf.re.kr)

조세지출예산서의 제출을 의무화한 가장 중요한 취지 중 하나는 조세지출도 국가재원 배분의 일부라고 간주하여 예산편성, 즉 재원배분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조하는 것이며, 이는 OECD의 재정투명성 기준에도 적시되어 있다.

I. 서론

본고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세지출과 관련된 논의 및 제도 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세지출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기준조세체계의 개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그리고 주요 OECD 회원국의 기준조세체계 및 조세지출제도에 대해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의 제정으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법 부칙에 따라, 2010회계연도(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조세지출예산서의 제출을 의무화한 가장 중요한 취지 중 하나는 조세지출도 국가재원 배분의 일부라고 간주하여 예산편성, 즉 재원배분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조하는 것이며, 이는 OECD의 재정투명성 기준에도 적시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조세지출을 명확하게 정의한 법 또는 규정이 없으며, 국가재정법 및 그 부칙에서 아래와 같이 우회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다분히 포괄적인 정의를 사용함으로써 국세감면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기 쉬운 면이 있다.

국가재정법 제27조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課稅移延)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부칙 <제19806호, 2006. 12. 29>

제4조 (조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법 부칙 제6조제2항에서 “국세감면금액·국세감면율 등에 관한 전년도 실적 및 당해 연도 전망보고서”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연도별 국세감면액 등을 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1. 근로자·농어민 지원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항목에 따라 국세감면액 등을 집계한 기능별 분석
2.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세 등 각각의 세목에 따라 국세감면액 등을 집계한 세목별 분석
3. 특례세율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세특례 방식에 따라 국세감면액 등을 집계한 감면방법별 분석

이에 비해 현행 우리나라 『조세지출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사용하여 조세감면과 차별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으나, 조세지출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조세지출보고서』에서는 조세지출을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조세 보조금으로서 “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로 정의하고 있으며, 조세지출보고서의 포괄세목은 국세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지출 해당여부는 지원대상의 특정성, 예산지출 등을 통한 대체 가능성, 지원제도의 폐지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원수단은 직접세 부문에서 「비과세·세액공제·소득공제·저율과세·준비금」 등을, 간접세 부문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특별소비세 면제, 저율과세」 등을 포함하고 있다.

II. 기준조세체계의 개념

조세지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위하여 1995년 OECD는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조세체계상의 일반표준(norm)”이라고 정의하였다. 기준조세체계를 세목별 과세대상, 세율 구조, 과세

『조세지출보고서』에서는 조세지출을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조세 보조금으로서 “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로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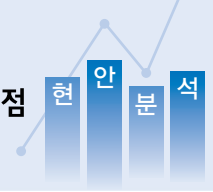
기준조세체계의 개념이 명확하더라도, 각국의 조세체계의 차이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운영방식, 조세지출 추정기법의 차이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지출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다.

구간, 과세단위, 과세기간, 회계 관행에 따른 규정, 행정 효율을 위한 규정, 국제조세규약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기준조세체계에 벗어나는 항목들이 존재할 때 이를 조세지출이라고 정의하였다.

1996년 OECD보고서는 각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조세지출은 대체적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① 조세지출은 특정 산업 활동 및 과세계급에게 이익을 주어야 함 ② 조세지출은 조세제도가 아닌 다른 정책수단을 사용하여도 성취할 수 있는 정책목적은 조세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할 때 발생 ③ 조세제도를 개정함으로써 특정 조세지출을 없애는 것이 실현 가능하여야 함 ④ 조세지출은 그 규모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기준인 기준조세제도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당 세목의 범위가 넓어야 함 ⑤ 조세지출이 제공하는 혜택을 크게 상쇄시킬 수 있는 조항이 동일한 조세제도 내에 존재하지 않아야 함 등이다.

위와 같은 정의는 조세지출을 정의할 때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들을 잘 설명하고 있으나, 「조세체계상의 일반표준」의 개념 자체는 다소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 조세지출을 주제로 한 OECD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필자가 확인한 결과, 기준조세체계의 정확한 개념을 다음 사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이며, 따라서 이때 소득세에 관한 한 기준조세체계는 현행 누진제를 정의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때 다소 과장된 사례로, 이러한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소득세가 비례세(flat tax)에 기초하되 각 소득구간별로 상이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제와 결과적으로 사실상 동일한 세제로 정의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각 소득구간별로 발생하는 조세감면은 기준조세체계를 정의하는 “구조적 요소”로 간주되어 기준조세체계에 포함됨으로써 조세지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준조세체계의 개념이 명확하더라도, 각국의 조세체계의 차이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운영방식, 조세지출 추정기법의 차이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지출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며, 기준조세체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 자체가 국가별로 상이하다. 특히 기존의 기준조세체계는 표준조세체계(normative tax system)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관적 가치판단이 필연적으로 개입되었다. 즉, 후자는 “세제는 이렇게 설정되는 것이 옳다”는 당위론적인 이상적 조세체계를 의미하며, 이는 국가간에 견해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을 뿐더러, 하나의 특정 국가나 사회 내에서도 완벽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최근 OECD의 논의는 표준조세체계의 개념은 정책 측면에서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non-operational), 기준조세체계를 이와 별도의 가치중립적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기준조세체계는 각 국가별로 조세감면과 조세지출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가상의 조세체계를 의미할 뿐이며, 어떤 ‘바람직한’ 조세체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1974년의 예산법 제3(3)조에서 조세지출을 “연방 조세 관련법의 우대적 예외조항, 비과세, 감면, 공제, 우대세율, 과세이연의 형태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의 손실”로 정의하고 있다.

III. 외국의 기준조세체계 사례

1. 영미계통 국가

가. 미국

미국 정부는 조세지출의 포괄범위를 소득세(개인소득세와 법인세)로 한정하고 있다. 여타 조세에도 감면제도가 있으나 조세지출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미국 OMB 관료들은 다른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조세지출이 소득세 또는 일부 조세에만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OECD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조세에 대한 감면 등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원칙적으로는 조세지출의 개념을 여타 조세에 대한 감면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OMB와 재무부는 소득세로 대상을 국한하여 해석하고 있고 따라서 의회에 제출되는 대통령 예산안에 포함된 조세지출 보고 역시 소득세에 대한 감면으로 국한된다.

미국은 1974년의 예산법¹⁾ 제3(3)조에서 조세지출을 “연방 조세 관련법의 우대적 예외조항, 비과세, 감면, 공제, 우대세율, 과세이연의 형태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의 손실”로 정의하고 있다.

“revenue losses attributable to provisions of the Federal tax laws which allow a special exclusion, exemption, or deduction from gross income or which provide a special credit, a preferential rate of tax, or a deferral of tax liability.”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Sec. 3(3))

동법에서 조세지출을 이와 같이 정의하였으나, 다른 법에서도 조세지출의

1) 공식 명칭은 “의회 예산 및 지출유보 통제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줄여서 예산법이라고 함. 동법의 주요 취지는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명확히 하고, 의회의 예산편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를 신설하는 것임. 또한 의회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행정부가 지출을 유보하는 형태로 집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미국의 조세지출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조세체계는 법에서 정한 것이 없으며, 조세지출의 추계를 위해 담당부처인 재무부가 이를 정한다.

기준인 기준조세체계를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조세체계에 대한 공식 정의는 없다. 실제로는 매년 수행되는 조세지출의 추계 과정에서 재무부(Treasury)는 표준조세기준(normal tax baseline)과 준거조세법기준(reference tax law baseline)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조세지출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조세체계는 이와 같이 법에서 정한 것이 없으며, 조세지출의 추계를 위해 담당부처인 재무부가 이를 정한다. 재무부는 표준조세기준(normal tax baseline)과 준거조세법기준(reference tax law baseline) 등 2개를 기준조세체계로 사용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양자 모두 (가상의) 포괄적 소득세법(comprehensive income tax)에 근거하지만, 준거조세법기준이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더 가까운 반면 표준조세기준은 순수한 소득세(pure income tax) 체계에 가깝다.

그렇다면 표준조세기준과 준거조세법기준을 각각 적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차이점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준거조세법기준에서 조세지출로 인정되는 항목은 표준조세기준에서도 조세지출로 인정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가까운 준거조세법기준이 포괄적 소득세에 가까운 표준조세기준보다 포괄적으로 기준조세를 정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거조세법기준하에서는 가속 감가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을 조세지출로 간주하지 않으며, 표준조세기준과 달리 준거조세법기준하에서는 외국기업에 대한 지배적 소유권이 있는 경우 허용되는 과세이연을 조세지출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준거조세법기준하에서는 정부로부터의 “증여”(각종 이전소득 등)에 대해 조세지출을 인정하지 않으나, 표준조세기준체계는 비과세 이전소득을 조세지출로 간주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상기한 2개의 기준조세체계와 포괄적 소득세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2개의 기준조세체계 모두 포괄적 소득세와는 달리 발생주의가 아니라 현금주의로 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농가의 농산물 등 현물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지출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나, 소유거주주택의 귀속임대료(imputed rental value)에는 적용된다. 인적공제 및 표준공제는 2개의 기준조세체계 모두 조세지출에서 제외한다. 포괄적 소득세제하에서는 개인소득세와 별도로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나, 재무부의 두 가지 기준조세체계는 별도의 법인세가 존재한다. 아울러 2개의 기준조세체계 모두 소득과 결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을 기준조세체계에 포함한다. 또한 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해 물가상승이 감안되지 않으므로, 실질가치가 불변이더라도 명목가치 상승 시 과세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표준조세기준과 준거조세법기준은 모두 소득세에 기반하여 조세지출을 정의하고 있는바, 이와 달리 소비세에 기반하여 조세지출을 정의한 경우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기존 조세지출 중 상당수의 항목은 소득세하에서는 조세지출로 간주되나 조세지출 산정의 세원(tax base)이 소비세일 경우에는 이러한 항목이 제외될 것이다. 특히 IRA(개인은퇴계정,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와 공적·사적연금 등 소득보장 분야에서 조세지출이 적용되는 세금우대 저축수단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캐나다는 조세지출을 기준조세체계에서 벗어나는 모든 조세특례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과 달리 (개인·법인) 소득세뿐만 아니라 소비세도 포함된다.

나. 캐나다

캐나다는 조세지출을 기준조세체계에서 벗어나는 모든 조세특례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과 달리 (개인·법인) 소득세뿐만 아니라 소비세도 포함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조세지출 보고서의 작성 의무는 없으며 기준조세체계에 대한 법적 정의도 존재하지 않아, 특정 조세조항이 조세지출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기도 한다.

캐나다의 기준조세체계는 상당히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에 따라 조세제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구조적인 요소만이 기준조세체계에 인정되고 있으며, 그 예로, 개인 소득세의 경우 기본적인 세율체계, 물가상승의 명시적 고려(과세구간 및 세액공제 조정), 회계연도의 정의 등으로써 정의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조세지출의 보고가 매우 상세하다는 것이다. 즉,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비록 기준조세체계에 포함되어 공식적으로는 조세지출로 간주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세감면의 성격이 있으면 “비망항목(memorandum items)”으로 분류하여 조세지출 보고서에 포함하기도 한다. 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 배당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조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독자가 다른 개념의 기준조세체계를 적용하여 조세지출을 나름대로 추산해볼 수 있도록 여러 조세규정으로 인한 세수손실에 대해 가급적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세지출의 보고에서 최대한의 투명성을 추구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대부분의 조세지출은 재정사업의 성격보다는 조세정책적 시각(tax policy rationales)으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예외적으로 현행 조세지출 항목 중 일부만이 재정사업을 대체하는 성격을 지니는데, 전액 또는 일부만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제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 예로는 저소득 가구 대상의



미국 및 캐나다와는 달리 거의 모든 연방세제를 포괄하는 호주의 조세지출은 그 포괄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호주 연방정부가 과세하는 대부분의 세금에 적용된다.

소비세 세액공제(Goods and Services Tax Credit), 2008년 도입 예정인 근로 소득우대세제(Working Income Tax Benefit),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는 저소득 계층 대상의 환급제도(Refundable Medical Expense Supplement), 캐나다 대서양 지역에서의 투자, 영화·영상 제작,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다. 한편 일부 정책은 조세체계를 통하여 운영되지만, 보고 목적상 재정사업으로 분류되어 조세지출에서 제외되며, 2006년 이래 연방정부의 세입예산에 해당 제도로 인한 지출을 포함시켜 보고하고 있다. 자녀양육수당(Canada Child Tax Benefits)과 그 구성 프로그램들(장애아동수당(Child Disability Benefits)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 호주

미국 및 캐나다와는 달리 거의 모든 연방세제를 포괄하는 호주의 조세지출은 그 포괄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호주 연방정부가 과세하는 대부분의 세금에 적용된다. 개인소득세, 법인세, 퇴직소득세부가급여세(fringe benefit tax), 자본이득세, 물품세(excise duty), 천연자원 과세, 고급 승용차세(luxury car tax), 와인 균등세(wine equalisation tax) 등이 포함되며, 비용 복구 목적으로 부과된 “특정 목적의 세금들(specified-purpose taxes),” 관세(customs duty and tariffs), 부가가치세(GST)는 제외된다(호주의 부가가치세는 주정부(States and Territories)를 대신하여 연방정부가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제외).

호주는 “예산법령 헌장 1998(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에 의거하여 「조세지출예산서(Tax Expenditures Statement)」를 매년 작성하고 있는 바, 동 헌장에서는 조세지출보고서를 출판하여 정부의 조세지출 정보를 납세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조세지출의 개념을 특정 경제활동이나 특정 납세자 계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세특례(tax concession)로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세지출의 형식은 비과세(tax exemption), 공제(tax deduction), 세액 차감(tax offset), 과세이연, 저세율 등이며, 세제상 특혜의 성격과 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적용되는 조세를 기준조세(benchmark)로 먼저 정의하며, 조세지출은 기준조세로부터 벗어나서 특정 행위나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었을 경우 발생한다고 간주한다. 크게 소득세와 물품세(commodity tax)로 구분하여 기준조세체계를 정의하며, 이외에 연금과 자본이득에 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조세특례를 조세지출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일부 조세특례의 경우 기준조세체계의 구조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 예로 개인소득세의 경우 저소득층에게 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기준조세체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독일의 조세지출은 주로 민간기업 및 산업부문에 대한 조세특혜에 초점을 두며, 직접적인 경로의 조세특혜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경로의 조세특혜도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있다.

라. 영국

영국에서는 기준조세체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나, 조세감면은 상당히 상세하게 집계된다. 조세감면은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조세지출(tax expenditures)’로서, 조세감면의 목적이 특정 유형의 개인·활동·제품을 지원하거나 장려하는 것이고, 직접지출의 대안이 되며, 그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조세감면들이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로는 ‘구조적인 조세감면(structural reliefs)’으로, 조세체계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간주될 수 있는 조세감면들이며,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 조세분배 목적 및 세무행정을 간소화하고 납세순응을 위한 조세감면 등이 동 감면에 포함된다. 마지막 범주는 ‘조세지출과 구조적인 요소를 모두 가진 조세감면(reliefs with tax expenditures and structural components)’으로, 조세지출과 구조적인 조세감면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없는 조세감면들이 이에 해당한다.

2. 기타 국가

가. 독일

독일은 조세지출 여부를 2단계에 걸쳐 판별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특정 조세특례가 이상적인 조세체계에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2차적으로 “경제안정과 성장을 촉진하는 법” 제 12편에서 규정한 보조금의 개념에 합당하지 판단하게 된다. 즉, 법률적으로 조세지출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상술한 2차 기준이 사실상 중요시되므로 결과적으로 독일의 조세지출은 주로 민간기업 및 산업부문에 대한 조세특혜에 초점을 두며, 직접적인 경로의 조세특혜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경로의 조세특혜도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지원으로 혜택을 받는 납세자가 많을수록 해당 조세지원은 보고서에서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향이 존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세지출이 어떻게 보고되는지 살펴보면, “경제안정과 성장을 촉진하는 법” 제 12편에 의거 조세지출 관련 보고서인 『보조금 보고서』가



스웨덴 내에서 예산 관점에서의
조세지출에 대한 시각은
특정 정책 분야(policy area)에
속하는 조세지출은 예산지출
금액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작성된다. 동 법률에서는 “연방정부는 간접보조금과 조세지원에 대한 보고서를 연방의회와 연방평의회에 예산추정치의 일부로서 2년에 한 번씩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 보조금과 조세특혜를 모두 포함한 『보조금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어떤 보조금이 기업과 산업부문을 직·간접으로 우대하고 있는가를 제시한다.

나.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조세수입이 사전에 정의된 특정기준(norm), 즉 기준조세체계로부터 도출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조세지출로 간주한다. 따라서 조세지출은 실현되지 않은 조세수입의 손실로 추정된 금액이 되며, 음(-)의 조세지출, 즉 ‘조세 벌금(tax penalties)’도 존재한다. 스웨덴에서는 조세지출의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한 조세지출, 둘째는 조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세지출(예: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연)이며, 일부 조세지출은 위의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될 수도 있다.

스웨덴은 기준조세체계를 개념적으로 정의하여 “표준 조세구조(normal tax structure)”의 개념과 연계하고 있는데, 스웨덴에서 “표준 조세구조”라 함은 1990년 스웨덴 조세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는 “동일 과세원칙(principle of uniform taxation)”에 의해 정의된다. 동일 과세원칙은 개별 세목 내에서의 과세는 동일(uniform)하여야 하며 예외가 없어야 함을 의미하나, 다만 누진적인 소득세와 같이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기준조세체계 내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여긴다.

스웨덴 내에서 예산 관점에서의 조세지출에 대한 시각은 특정 정책 분야(policy area)에 속하는 조세지출은 예산지출 금액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에 따라 조세지출은 일반 세출예산과 함께 중앙정부의 재정수지(balance of budget)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여, 중기 재정계획에서는 27개 분야의 지출한도와 함께 조세지출규모를 병기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조세지출의 포괄 세목은 소득세(근로, 자본 및 사업),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치세, 물품세(에너지세 및 이산화탄소세만을 포함) 등 사실상 모든 세목을 포함한다.

스웨덴에서는 최근 조세지출과 관련하여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 현 의회의 다수당은 야당 시절에 정부가 직접지출의 한도 제약을 우회하기 위해 일부 조세지출이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된 조세지출



은 주로 수혜자의 세무계좌(tax account)에 예치금(credit)을 증가시켜 주는 조세지출들로서, 이런 형태의 조세지출은 조세체계와의 연계성이 약하기 때문에 스웨덴의 국민계정(national account) 통계에서는 정부지출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비판의 결과, 세무계좌에 예치금을 증가시켜 주는 형태의 조세지출은 대부분 폐지되거나 또는 재정의 직접지출로 재분류되었다. 이로 인해 투명성이 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재분류는 재원배분 의사결정 체계를 규정하는 예산법의 취지와도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특정 조세감면이 조세체계에 장기간, 즉 약 30년 이상 존속되면 기준조세체계의 일부로 간주하여 조세지출에서 제외하며, 조세지출은 표준조세(norm)를 적용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세수입을 낮아지게 하는 조세특례를 조세지출로 정의하고 있다. 기준조세체계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재량적(subjective)으로 결정한다. 특히 조세감면의 대상 계층이 광범위하거나 상술한대로 오랫동안(약 30년) 조세체계에 존속하고 있다면 기준조세체계의 일부로 간주한다.

라.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조세체계의 기본적 구조인 기준조세체계로부터의 벗어난 부분을 조세지출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세에서 공제 항목(기부 등), 비과세(경찰차 및 앰블런스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 특별 세율(대중교통 및 도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낮은 세율 적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준조세체계로는 세율 구조, 기본적인 비과세, 일반적인 세액공제, 과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규정 등이 포함된다. 소득세의 경우, 응능원칙(ability to pay principle)에 부합하는 과세대상 소득을 조정하는 비과세, 공제, 세액공제 등도 기준조세체계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실제 적용단계에서는 일부 감면은 기준조세체계와 조세지출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는
조세지출의 포괄범위는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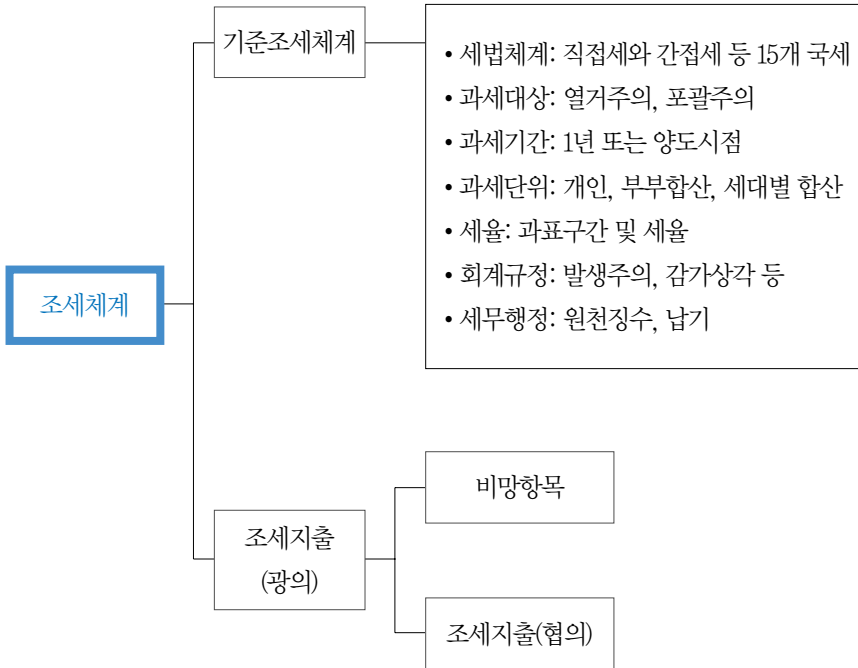
IV. 시사점

이상의 국외사례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주로 소득세를 표준세원(normative tax base)으로 삼은 기준조세체계를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예외적으로 조세지출을 소득세에 대한 감면으로 국한하였고, 다른 나라는 대부분 모든 세목을 포함하지만, 대부분 국세로 국한하고 있다(독일의 경우는 산업보조금 성격의 조세감면으로 국한).

조세지출의 포괄범위는 조세체계의 구조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기준조세체계의 정의에 의존하고 있어서, 기준조세체계가 좁게 정의되면 조세지출의 포괄범위는 넓어지는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기준조세체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해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기준조세체계와 조세지출의 분명한 경계를 이견 없이 긋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는 조세지출의 포괄범위는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캐나다의 경우 기준조세체계에 간주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등의 조세지출항목들을 비망항목으로 처리하여 조세지출예산서에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예산서에도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여 조세체계를 기준조세체계와 (광의의) 조세지출로 구분한 다음, 광의의 조세지출을 비망항목과 협의의 조세지출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그림 1 참조)²⁾.

2) 조세지출 예산서에 가능한 한 많은 특례조항들을 포함하는 것은 재정 투명성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2년 후까지의 감면실적을 예측해야 한다는 기술적 어려움을 동반하는 단점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추계해야 되는 조세감면이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아직까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조세지출의 전망을 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요인에 기인한다. 선진국의 조세지출예산서는 물론, 2011회계연도 예산에 제출되어야 하는 우리의 조세지출예산서에도 예산 연도, 즉 그 다음 연도의 조세지출 전망치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전망 기법은 본고의 참고문헌을 참조.

[그림 1] 조세체계의 구분



〈참 고〉

◇ 비망항목으로 분류 가능한 항목의 특성

- ① 필요경비적 성격이 존재하는 지출에 대한 세제혜택
 - 교육비나 의료비처럼 직접적 경비로 볼 수 없지만 영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
- ② 폐지할 경우 정부의 부담이 증가하는 규정
 - 정부가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 외국과의 호혜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도 해당 조항의 폐지가 어렵고, 해당조항을 폐지하면 세입의 증대 외에 손실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망 항목으로 구분
- ③ 손해배상금처럼 위로금 성격의 조세혜택은 비망 항목으로 취급
 -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세제상 특혜를 주는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
- ④ 개인의 지출선택권이 없는 소득
 - 사업주가 종업원을 위하여 (정기/퇴직)보험을 들고 해당 보



조세감면 축소 등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실현을 위해서 철폐가
어렵거나 장기간 존속하여온
감면의 경우 기준조세체계나
비망항목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험료를 보험회 사에 지급할 경우*

* 해당 소득이 종업원의 자유의사에 따른 지출이 아니므로
해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비망 항목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합

EITC 등 “non-wastable tax credit”의 처리에 관해서는 스웨덴, 캐나다, 네델란드 사례 및 기타 국제적인 사례·해석에 따라 EITC는 조세지출로 분류하지 않고 직접 재정지출로 분류하여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조세감면 축소 등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실현을 위해서 철폐가 어렵거나 특히 프랑스의 사례를 참조하여 장기간 존속하여온 감면의 경우 기준조세체계나 비망항목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로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한 조세감면이 이에 해당될 것이며, 이러한 조세감면을 기준조세체계의 일부로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를 철폐하거나 축소하는데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다른 조세감면, 즉 조세지출 목록에 포함된, 현실적으로 축소·철폐가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조세감면 축소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조세체계 정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KIPF**

<참고문헌>

김종면 외, 『조세지출 해외사례 연구 및 개선방안』, 기획예산처 정책자문 용역 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및 OECD, 2007. 12.
Kraan, Dirk-Jan, “Off-budget and Tax Expenditures,”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 4, No. 1, 2004, pp. 121~142.
Minarik, Joseph J., “Tax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OECD GOV/PGC/SBO(2008)8, presented at the 29th annual meeting of Senior Budget Officials, 2-3 June 2008.



평균 은퇴연령에 대하여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bjun@kipf.re.kr)

I. 서론

OECD 주요 국가들이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을 경험함에 따라 개인들의 은퇴 결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OECD (1995)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개인들의 은퇴 시기가 빨라졌음을 발견하였다. 개인들의 빠른 은퇴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국민생산의 저하와 복지제도와 연관된 재정지출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평균적인 은퇴 시기가 현재 추세대로 점점 더 낮아지거나 혹은 현재의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노령인구 증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결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의사 결정에서 각종 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역시 제도의 평가 및 효율적인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위한 사전적 정보의 제공이란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평균 은퇴연령 (average age of retirement or average age of withdrawal)은 이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지표 중 하나이다. 사회 내의 개인이 은퇴하는 시점에서의 평균 연령을 의미하는 통계량으로, 노동참가율과 평균 은퇴연령 사이에 양(+)의 관계가 있을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노동시장 상황 및 제도의 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 변화 추이를 평가하는 수단이다. 평균적인 개인의 은퇴연령이라는 수치로 노동시장을 요약함에 따라 직관적 이해가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널리 이용되었다. 구체적으

평균적인 은퇴 시기가 점점 더 낮아지거나 혹은 현재의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노령인구 증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평균 은퇴연령이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은퇴 및 노동시장 상황을 단일지수로 요약하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단일지수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로 기존 연구들은 주어진 기간 동안의 평균 은퇴연령 추이를 통해 기간별로 노동 공급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제도 개혁 전후, 예컨대 연금 개혁 전후의 사회 내 평균 은퇴연령을 비교함으로써 연금개혁이 개인의 근로 의욕과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평균 은퇴연령이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은퇴 및 노동시장 상황을 단일지수(single index)로 요약하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단일지수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기존 논의에서 제기된 한계들은 개인의 은퇴라는 분포에 관한 정보를 하나의 수치에 모두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고의 제2장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기존의 문헌에서 지적된 평균 은퇴연령에 대한 한계 외에 추가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방식의 평균 은퇴연령 추정치는 현재 사회 내에 생존해 있는 은퇴자들의 평균 은퇴연령에 대한 추정치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추정방식에 의존한 결과는 노동시장 상황 및 개인의 근로 의욕을 요약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존 방식이 사망자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향 추출(biased sampling)의 결과이다.

기존 추정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평균 은퇴연령이 대표적인 은퇴연령을 추정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 제도의 변화가 개인의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여전히 평균 은퇴연령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두 가지의 수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방식은 편향된 추출에서 야기되는 불일치성(inconsistency)을 해결하기 위해 생명표를 이용하여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수정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 자료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를 하는 방식을 통해 평균 은퇴연령을 추정하는 방식도 제시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된 방식에 의한 구체적인 추정결과가 제3장에 제시될 것이다. 여기서 제시된 평균 은퇴연령의 추정치는 주어진 정보의 제약으로 인해 성별을 제외한 다른 특성 및 내생성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제도개혁에 따른 인과관계로 해석하기보다는 주어진 기간 동안 노동시장 상황을 요약하는 지수로서 이해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평균 은퇴연령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본고에서 추가적으로 제기할 개념적 문제점이 고려된 추정방식을 제안할 것이다. 더불어서 기존 추정방식에 의존한 연구결과의 해석 및 노동시장 요약 또는 노



동 인센티브 평가라는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는 은퇴의 개념적 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평균 은퇴연령 추정은 은퇴에 대한 개념적 정의로부터 출발한다.

II. 평균 은퇴연령에 대한 기존 논의

가. 평균 은퇴연령의 추정방식

평균 은퇴연령 추정은 은퇴에 대한 개념적 정의로부터 출발한다.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은퇴에 대한 정의는 개인별·사회별로 차이를 보인다. 국가별 비교 혹은 장기간의 추세 비교를 위해서는 일정 연령, 예컨대 45세 이상의 사람이 비경제활동 상황에 있는 경우를 은퇴에 대한 프락시(proxy) 변수로 사용한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인구로부터의 평균 이탈연령 (average age of withdrawal from the labor force)이 평균 은퇴연령에 대한 보다 정확한 명칭이라 할 수 있다.

평균 은퇴연령의 추정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적인 추정방식은 다음을 따른다.

연령 $a-1$ 에 노동시장에 있었다는 조건하에 연령 a 에 은퇴할 조건부 확률을¹⁾ h_a 라고 하자. 이 경우 연령 a 에 은퇴할 확률을 p_a 라고 하면, p_a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 p_a = \Pr(a-1 \text{ 세까지 노동시장에 남음}) \times \Pr(a \text{ 세에 은퇴} | a-1 \text{ 세까지 노}$$

$$\text{동시장에 남음}) = \prod_{j=m}^{a-1} (1 - h_j) \times h_a$$

식 (1) 에서 $m-1$ 세까지는 은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가정을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이 $n+1$ 세가 되기 전까지 은퇴한다는 가정을 하면, 은퇴 시의 평균 연령은

$$(2) \mu = \sum_m^n j p_j$$

이다. 식 (2)를 적용해 실제로 위험률 h_a 를 구하는 방식에 따라 정태적 (static) 과 동태적 (dynamic)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단순하게 말해 정태적 방식은 각

¹⁾ 위험률 (hazard rate) 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역U자형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M자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 집단이 동질적이란 가정하에 각 연도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로부터 직접적 위험률을 계산한다. 반면에 동태적 방식은 각 연령집단의 상이함에 주목하여 각 연령집단의 지난 기와 이번 기간에 발생한 경제활동참가율의 변동을 이용하여 위험률을 계산한다²⁾. 본고에서는 정태적 추정 방식, 보다 구체적으로 Scherer(2002)를 이용할 것이다. Scherer(2002)는 a세에서의 경제활동참가율을 A_a 라고 할 때, a-1세까지 경제활동을 한다는 조건하에 a세에 은퇴할 조건부 확률을

$$(3) h_a = \frac{A_a}{A_{a-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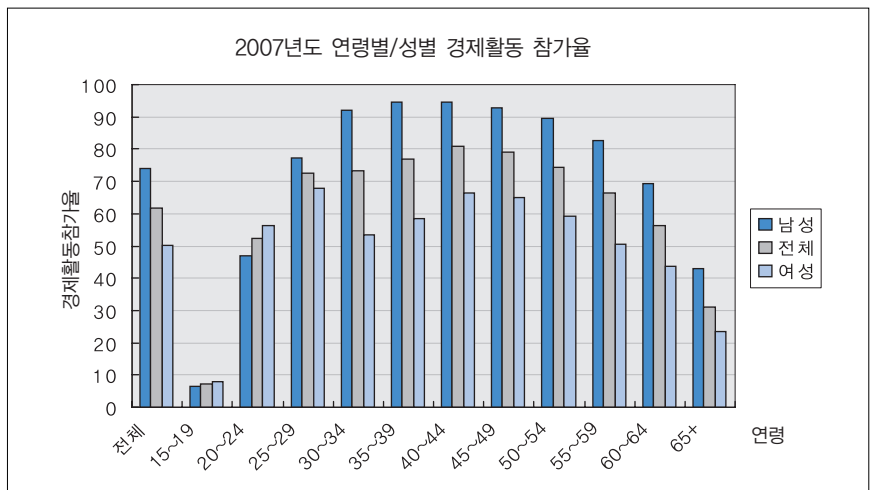
라고 정의한다³⁾.

나. 평균 은퇴연령 추정결과

본절에서는 앞서 소개한 평균 은퇴연령 추정 방식을 이용한 1989년~2007년도 평균 은퇴연령 추정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그림 1]은 구직 기간 1주를 기준으로 한 2007년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남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역U자형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M자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경제활동참가율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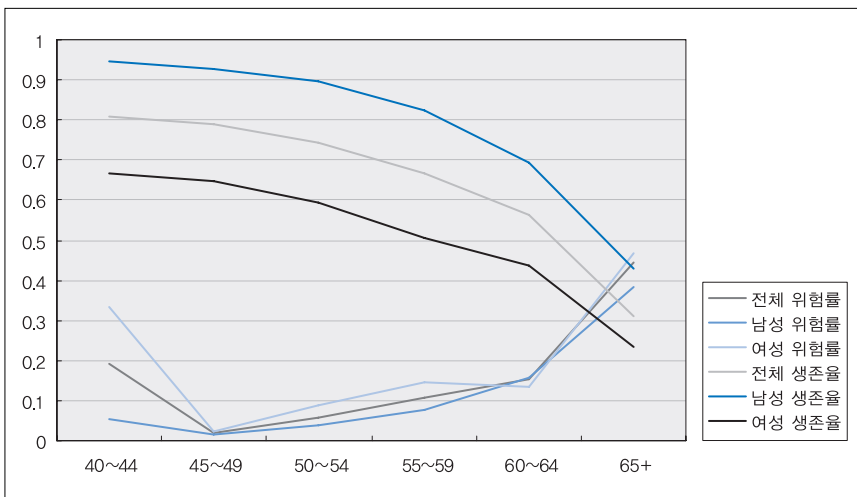
2) 동태적 방식의 구체적인 적용은 식 (4)에서 찾을 수 있다.
 3) Scherer(2002)의 방식은 은퇴연령에 대한 가중기하평균 (weighted geometric mean)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Lalippe (1996) 와 Wild (2006)는 가중산술평균 (weighted arithmetic mean) 방식을 이용한다.



주어진 경제활동참가율을 이용해 식 (3)에 따라 위험률과 생존율 (survival rate)을⁴⁾ 구한 결과가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그림 2]의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서 은퇴가 시작되는 최초 연령은 40세로 가정하였다. 또한, 70세까지는 모든 사람이 은퇴하여 더 이상 노동시장에 남아 있지 않다는 가정 역시 사용하였다⁵⁾. 수준 (level) 차이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생존율과 위험률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다. 남성의 생존율은 여성보다 모든 연령대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50%의 남성이 약 65세까지 노동시장에 남아있음에 비해, 여성의 경우 59세 무렵까지 남아있음이 확인된다. 위험률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남녀 모두 U자형 위험률을 따르고 있어서 45세 이후 개인의 조건부 은퇴 확률이 나이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예외적으로 보이는 40~44세 연령대 여성의 높은 위험률은 가정에 의해 40세 현재 비경제활동참가 여성 모두가 40세에 은퇴한 것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수준 차이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생존율과 위험률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다. 남성의 생존율은 여성보다 모든 연령대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위험률과 생존율 함수



1989년부터 2007년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평균 은퇴연령을 계산한 결과가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 남성의 평균 은퇴연령은 약 63세, 여성의 경우 약 55세로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6) 7)}.

- 4) 생존율은 특정 연령까지 은퇴를 하지 않을 확률, 즉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확률을 뜻한다. 여기서는 $\Pi_{(t-h)}$ 가 a세에서의 생존율로 주어진다.
- 5) 은퇴연령에 대한 상한과 하한에 대한 자의적인 가정 역시 기존의 논의에서 제기된 문제점 중 하나이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후에 소개할 것이다.
- 6) <표 1>의 평균 은퇴연령은 Scherer (200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Scherer (2002)는 남성의 평균연령은 약 70세, 여성의 은퇴연령은 약 67세임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상한과 하한에 대한 다른 가정을 사용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7) 안정적인 평균 은퇴연령의 추세는 평균 은퇴연령이 갖는 문제점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후에 소개할 것이다.



1989년부터 2007년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평균 은퇴연령을
계산한 결과 이 기간 동안
남성의 평균 은퇴연령은
약 63세, 여성의 경우
약 55세로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1〉 평균 은퇴연령

(단위: 세)

연도	전체	남성	여성
1989	58.9	63.3	54.4
1990	58.9	63.5	54.4
1991	59.0	63.6	54.5
1992	59.2	63.9	54.7
1993	59.0	63.8	54.7
1994	59.3	64.0	55.0
1995	59.5	64.1	55.3
1996	59.5	64.1	55.3
1997	59.7	64.1	55.5
1998	59.0	63.6	54.8
1999	59.0	63.2	55.1
2000	58.9	62.9	55.0
2001	58.9	62.9	55.0
2002	59.1	63.2	55.2
2003	58.8	63.1	54.7
2004	59.0	63.2	55.0
2005	59.1	63.2	55.1
2006	59.2	63.4	55.2
2007	59.4	63.6	55.4

다. 평균 은퇴연령의 한계점에 대한 기존의 논의

평균 은퇴연령이 갖는 문제점은 여러 문헌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 절에서는 기존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하기로 한다.

우선 은퇴 연령에 대한 상한과 하한의 가정이 자의적이라는 사실이다. 2007년 현재 30~34세와 35~39세의 여성 중 각각 약 53%와 약 58%가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있다. 따라서 최초 은퇴 연령을 40 세로 설정하는 것은 평균 은퇴연령을 과대추정(overestimate)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동일한 문제점이 은퇴연령의 상한에 대해서도 발견된다.

또 다른 기술적 문제점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M자형 혹은 남성의 역U자형 경제활동참가율로 인해 특정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에서 발생한다. 식 (3)에 의존한 위험률 추정치는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경



우 잘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2007년 40~44세 여성집단과 45~4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58.5%와 66.5%이다. 따라서 식 (3)을 적용하여 조건부 은퇴율, 즉 위험률을 계산한다면, 그 추정치가 1보다 커짐에 따라 확률의 정의로부터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복귀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식 (3)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방식이 이용된다.

$$(3)' \quad \hat{h}_a = \min\left(\frac{A_a}{A_{a-1}}, 1\right)^{8)}$$

위험률의 추정에 관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특정연도의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A_a 와 A_{a-1} 은 다른 연령집단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치라는 사실이다. 현재 연도를 y 라고 하면 A_a 는 $y-a$ 년에 출생한 집단의 a 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의미하는 데 반해 A_{a-1} 은 $y-a+1$ 년에 출생한 집단의 $a-1$ 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식 (3) 혹은 (3)'는 $y-a$ 년도에 출생한 집단의 $a-1$ 세의 경제활동참가율 대신 $y-a+1$ 년에 출생한 집단의 $a-1$ 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프락시(proxy)로 사용한다는 가정에 의존한다. 장기간의 자료가 있는 경우 이 가정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위험률의 계산이 가능하다. A_a^y 를 y 년도에 a 세인 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이라고 하면, 이 집단의 위험률은

$$(4) \quad \tilde{h}_a = \frac{A_a^y}{A_{a-1}^{y-1}}$$

로 주어진다⁹⁾.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평균 은퇴연령이 은퇴연령의 분포를 하나의 지수로 요약해야 한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표 2>는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해 서로 다른 세 가지 분포를 포함하고 있다. A의 평균 은퇴연령은 60세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B와 비교해 볼 때 모든 연령대에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인다. 또한, B와 C 모두 평균 은퇴연령은 55세로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C 역시 모든 연령대에서 B보다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유사한 사례는 Johnson (2001)에 나타난다. Johnson (2001)에 따르면 1960년과 2000년 미국 여성의 평균 은퇴연령이 각각 64.7세와 62.4세임에 비해, 1960년과 비교해 2000년 미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0세에서 60세에 이르는 연령대에서 비슷한 수준을 따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¹⁰⁾.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평균 은퇴연령이 은퇴연령의 분포를 하나의 지수로 요약해야 한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8) 본고에서 β , γ 등은 모수(parameter)에 대한 추정치를 의미한다.

9) 식 (4)에 구해진 위험률을 이용해 추정하는 방식을 동태적 추정법이라고 한다.

10) 16세 이상 모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35.7%에서 60.2%로 상승하였다.



평균 은퇴연령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 우선 위험률을 정의하는 데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이다. 다른 문제점은 다른 단일지수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평균 은퇴연령이 은퇴연령에 대한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연관된 단일지수 (single index)로서의 한계는 Reimers (1976)과 Johnson(2001)에 지적되어 있다. 이들에 따르면 경제활동참가율이 40세에서 70세 사이에서 선형 (linear) 추세를 갖는 경우, 평균 은퇴연령은 항상 55세로 고정되어 있게 된다. 다시 말해, 경제활동참가율 = $c + m \times$ 연령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평균 은퇴연령은 하나의 값 (55세)에 고정되어서 경제활동참가율 (c, m)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표 2〉 평균 은퇴연령

연 령	경제활동참가율 (%)		
	A	B	C
40~44	10	90	5
45~49	10	90	5
50~54	10	50	5
55~59	10	30	0
60~64	0	10	0
65+	0	0	0
평균 은퇴연령	60	55	55

출처: Johnson (2001) p.39에서 인용

이상에서 살펴본 평균 은퇴연령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 우선 위험률을 정의하는 데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이다. 이 맥락에서 평균 은퇴연령의 정확성 혹은 로버스트성(robustness)은 사용된 가정의 적절함에 의존한다. 다른 문제점은 다른 단일지수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평균 은퇴연령이 은퇴 연령에 대한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단일지수가 가질수밖에 없는 한계는 경제활동참여율이나 은퇴 연령의 분포에 대한 다른 통계량, 예컨대 분위수 (quantile)를 보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III. 문제 제기 및 제안

가. 개념적 문제 제기¹¹⁾

평균 은퇴연령 추정은 경제활동에 대한 서베이 자료에 의존한다. 각 연령대 별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비율, 즉 은퇴한 비율을 구함으로써, 한 시점에서의 연령별 은퇴 도표 (profile)를 도출하여, 이를 대표적 개인의 연령별 은퇴 상황에 대한 도표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도출된 도표를 이용해 식 (1)~(3)을 적용함으로써 평균 은퇴연령을 구하는 것이 기존의 접근법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연령대별 은퇴비율 혹은 경제활동참가율은 서베이의 성격상 해당 시점에 생존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이다. 암묵적으로 평균 은퇴연령은 해당 시점에 생존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은퇴연령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표적인 개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뒤, 어느 나이에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할지를 의미하는 지수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앞서 정의한 은퇴는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을 의미한다. t기에서 t+1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은퇴연령이 의미하는 바에 따르면 두가지 경로에 따라 이탈이 발생하게 된다. 첫 번째 요인은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은퇴이고, 다른 요인은 죽음이다. 사망에 의한 이탈은 은퇴에 포함되지 못하게 된다. 더불어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은퇴를 한 경우라도 경제활동 서베이 시점 이전에 사망한다면 역시 은퇴자 집단에 포함되지 못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예를 생각하기로 한다. t기의 인구는 P_t 라 하고, 이 시점에서의 모든 사람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고 하자. 즉, $A_t = 1$ 로 가정한다. t+1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50% 비율로 사망하였다면, t+1기에서의 인구는 전기의 50%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5) P_{t+1} = 0.5 \times P_t$$

t+1 시점에서 생존자 모두가 여전히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면 A_{t+1} 은 1로 주어지고, 식 (3)에 의해 t+1 시점에서의 위험률 h_{t+1} 은 0이다. 다시 말해, 지난 기와 이번 기 사이에 발생한 은퇴자의 비율은 0이다. 하지만, 사망으로 인해 감소한 인구 역시 노동시장에서의 이탈, 주어진 맥락에서 은퇴로 감안해야 한다. 그렇다면, t기에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조건하에 t+1기에 은퇴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연령대별 은퇴비율 혹은 경제활동참가율은 서베이의 성격상 해당 시점에 생존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이다.

11) 제2장에서 언급된 기존의 문제점은 이 절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다시 말해, 평균 은퇴연령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와 단일지수로서의 한계점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조사 시점의 사망자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음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집단이 과대추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확률, 즉 h_{t+1} 은 0.5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이 예에서 확인된 기존 추정방식의 문제점을 보다 일반화하여 보자.

주어진 시점에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현재에 생존에 있는 사람들 중 취업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등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부확률로 나타낼 수 있다.

$$(6) A_t = \Pr(t \text{ 기에 노동시장에 남아 있음} \mid t \text{ 기에 생존})$$

전기에 노동시장에 참여했다는 가정하에 이번 기에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확률이 평균 은퇴연령의 계산에 필요한 위험률을 상기하자. 단순한 산식에 의해, 경제활동참가율은 정확한 의미의 위험률 계산에 필요한 조건부 확률을 과대 추정함을 보일 수 있다. 즉,

$$(7) A_t \geq \Pr(t \text{ 기에 노동시장에 남아 있음} \mid t-1 \text{ 기에 노동시장에 참여})$$

직관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집단과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는 집단으로 분류할 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조사 시점의 사망자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음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집단이 과대추출(over-sampling)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외적으로 두 기간 사이에 사망자가 없는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얻어진 참가율을 이용함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표 3〉 경제활동참가율과 생존율 예

연 령	인 구	경제활동참가율	생존율 ¹⁾
40~44	100,000	1.0	1.0
45~49	100,000	1.0	1.0
50~54	100,000	1.0	1.0
55~59	100,000	1.0	1.0
60~64	50,000	1.0	0.5
65+	50,000	0	0

주: 1) 여기서 생존율이라함은 매 시점에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확률을 뜻한다.

12) 논의의 편의를 위해 〈표 3〉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상황에 따라 정태적 혹은 동태적인 수치라고 가정하자. 두 상황 모두 기존의 평균 은퇴연령의 도출과정에 개념적 문제가 있다는 결론은 동일하다.

〈표 3〉은 기존 방식이 평균 은퇴연령이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 이탈 연령의 평균을 추정하지 못하는, 가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¹²⁾. 경제활동



참가율을 이용해 식 (1)~(3)의 기존 방식을 이용한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모든 이탈은 65세에 발생한 것으로 기록된다. 따라서 평균 은퇴연령은 65세로 주어진다. 실제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은 두 번에 걸쳐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우선 60세와 64세 사이에 50%에 해당하는 50,000명이 사망으로 인해 이탈하게 된다. 남은 50%의 인구는 65세에 이탈하므로, 이 경우 사망 요인으로 인한 은퇴를 감안하는 경우 평균 은퇴연령은 62.5세가 타당하다.

편향 추출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통계학에서 추출확률을 조정함으로써 해결한다.

나. 제안 및 추정결과

편향 추출 (biased sampling)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통계학에서 추출확률을 조정함으로써 해결한다. 여기서도 비슷한 접근을 이용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령대별로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존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구해진다. 사망자 모두 노동시장에 이탈해 있는 상태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정 연령대 혹은 연령집단의 (누적)사망확률을 필요로 한다. 연령 a 세까지의 생존할 확률을 A_a 라 하자. 그러면, 연령 a 세에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확률은 $A_a \times A_a$ 로 주어진다. 따라서, 정확한 의미의 위험률을 h_a^* 라고 할 때 다음의 식을 얻는다.

$$(8) \quad h_a^* = 1 - \frac{A_a \times A_a}{A_{a-1} \times A_{a-1}} = 1 - A_{a|a-1} \times (1 - h_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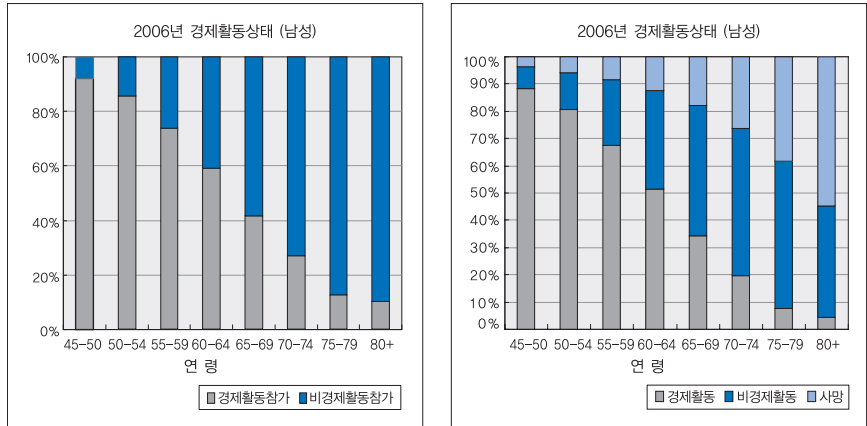
식 (8)에서 $A_{a|a-1}$ 는 대표적인 개인이 $a-1$ 세에 생존한다는 조건하에 a 세에 생존할 조건부 확률을 의미한다.

식 (8)은 식 (3)에서 얻어진 위험률을 생명표 등에서 얻어진 생존율을 이용해 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기간 사이에 사망자가 없는 경우, 즉 조건부 생존율 $A_{a|a-1}$ 이 1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 (3)에 의해 도출되는 위험률 함수 (hazard rate function)는 불일치 성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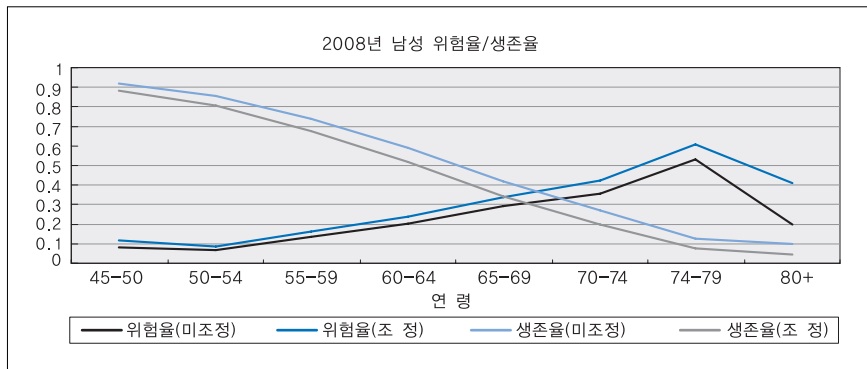
예측한 바와 같이
모든 연령대에서 실제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확률은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낮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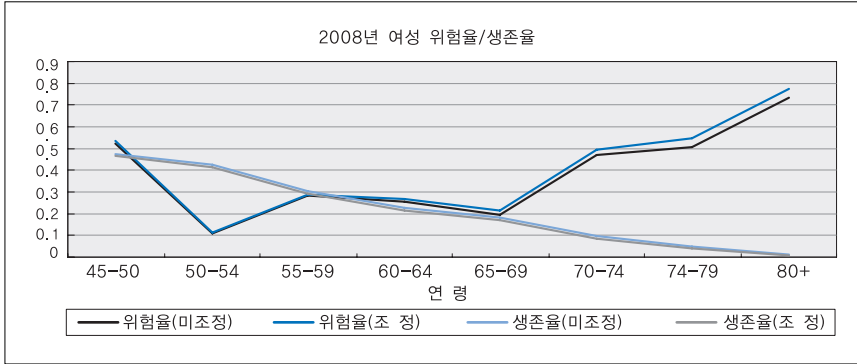
[그림 3] 2006년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그림 3]은 생명표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구해진 2006년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준다. 보다 넓은 연령대의 범위에서 사망자를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노동시장참가율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예측한 바와 같이 모든 연령대에서 실제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확률은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낮게 나타난다. 예컨대, 50~54세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73%이나, 사망률을 감안해 노동시장에 참가할 확률은 약 67% 수준으로 떨어진다. 여성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가 얻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2006년 성별 위험률/생존율





남성 위험률의 경우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70세 이후부터 점차 오차가 증가하는 성향이 존재한다.

[그림 4]는 2006년도 기존 방식과 수정된 방식에 따라 구한 성별 위험률과 생존율을 보여준다. 식 (3)에 의한 추정식은 모든 연령에 있어서, 생존함수를 과대추정하고, 위험률 함수는 과소추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남성 위험률의 경우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70세 이후부터 점차 오차가 증가하는 성향이 존재한다. 여성의 경우 위험률과 생존율 함수의 오차 모두 1%포인트 내외였다. 여성의 경우 오차가 작은 것은 남성 집단과 비교하여 낮은 사망률 및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에 기인한 결과이다. 이는 식 (8)을 정리한 식 (9)에서 확인된다.

$$(9) h_a - h_a^* = A_{ala-1} \times h_a$$

식 (9)로부터 (i) 사망률이 높거나 (ii)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가 클수록 기존의 평균 은퇴연령의 추정방식의 오차가 커짐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두 상황은 높은 연령대에서 관측되므로, 노령층에서의 위험율 추정결과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보다 큰 오차를 갖는 것이다.

〈표 4〉 2006년 평균 은퇴연령

(단위: 세)

	평균은퇴연령 (미조정)	평균은퇴연령 (조정)
전체	59.2	58.1
남성	65.1	62.7
여성	53.8	53.4

사망요인을 고려한 평균 은퇴연령은 〈표 4〉에 요약되어 있다¹³⁾. 남성의 경우 기존 방식을 따르는 경우 약 65.1세가 평균 은퇴연령임에 비해, 사망을 고려하

13) 〈표 1〉과 비교하여 2006년도 평균 은퇴연령은 다른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은퇴연령의 분포에서 다른 가정을 사용했음이 부분적인 이유이다. 〈표 1〉에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집계 통계량이 허용하는 대로 65세를, 〈표 4〉에서는 80세를 은퇴 상한 연령으로 사용하였다. 보다 중요한 이유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 두 서베이가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지난 1주 혹은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미취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 고령자패널의 경우 여러 문항을 이용해 생성된 w01ecoact를 비경제활동 변수로 이용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노동연구원(2007)을 참조하라.



지난 20여년간의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은퇴연령에 변화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여 수정된 추정법에 따르면 약 62.7세에 평균적으로 은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자의 경우 앞서 위험률과 생존율 함수의 추정에서 예측된 바와 같이 오차가 작은 수준(0.4세)이었다.

장기간에 걸친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1989년에서 2007년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간이생명표를 이용하여 구한 평균 은퇴연령 추정치는 부록의 <표 5>에 요약하였다. 남녀 모두 기존의 평균 은퇴연령 추정방식은 약 1세 가량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해당 기간동안 평균 은퇴연령의 추세는 사망요인을 조정하여 계산된 평균 은퇴연령 역시 안정된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기존의 추정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¹⁴⁾. 지난 20여년간의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은퇴연령에 변화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 생존 분석¹⁵⁾

본절에서는 생존 분석을 이용한 평균 은퇴연령의 추정방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는 시점은 사망과 개인의 최적화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은퇴에 의해 결정된다. 이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두 요인을 다음과 같이 확률변수로 표시하자. 개인이 사망하는 연령을 C, 사망이 없을 시 개인이 선택하게 되는 은퇴연령을 R이라고 하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시점 T는 두 변수 중 작은 값에 의해 결정된다. 즉,

$$(10) T = \min(R, C)$$

다시 말해, 사망 시점이 개인이 의도한 은퇴 시점보다 늦은 경우 최적화 행위로 얻어진 은퇴 연령 R이 노동시장에서의 이탈 연령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망 시점에서의 연령 C가 노동시장에서의 이탈 연령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식 (10)은 생존 분석 모형 자체로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분석 대상의 선정에 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존 은퇴연령에 대한 연구 및 본고의 제3장 제2절에서의 분석은 이탈시점 T 자체로 한정되었다. 대표적 개인이 노동시장에서의 이탈하는 연령별 추세를 추정하려는 취지의 연구는 T를 분석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개인의 근로 의욕 또는 노동시장 참가에 관한 인센

14) 은퇴연령이 안정된 추세를 보인다는 공통된 결론은 정태적 추정법에 한정된다.

15) 이 절은 생존분석을 통한 직접적으로 평균 은퇴연령을 계산할 수 있음을 예시하고, 개인의 은퇴 결정에 관한 정책 및 경제적 변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후 소개할 확률변수 R을 이용함이 보다 타당함을 보이려는 목적이 다. 이를 위해 상당히 제약적인 독립성 가정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얻어진 추정치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티브와 관련해서는 최적화 은퇴 시점 R 을 분석대상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금제도의 개혁이 노령층의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려는 연구가 그러한 예이다¹⁶⁾. 따라서, 분석의 목적에 따라 두 가지 측면에서의 은퇴 연령 T와 R 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식은 보다 포괄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하에서는 생존 분석을 이용하여 두 변수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분을 위해 $\mu_T, h_{a,T}, S_{a,T}$ 는 확률 변수 T의 평균, 위험률, 생존율이라고 하자. 비슷하게 $\mu_R, h_{a,R}, S_{a,R}$ 과 $\mu_C, h_{a,C}, S_{a,C}$ 는 확률 변수 R과 C의 평균과 위험률과 생존율을 뜻한다. 최적 은퇴연령 R과 사망시점 C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 하에¹⁷⁾ 다음의 관계가 도출된다.

$$(11) S_{a,T} = S_{a,R} \times S_{s,C}$$

식 (11)에서 얻어진 생존함수를 이용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이탈 연령 T에 대한 분포함수 (distribution function) 가 도출될 수 있다. 도출된 분포함수에 최우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을 적용하여 식 (11)에 등장하는 모수 (parameter), 즉 은퇴연령 R 및 사망연령 C 에 대한 여러 요인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비록 자료에 사망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도 주어진 가정하에서 외부 자료를 이용해 사망에 대한 분포를 대체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여전히 최우추정법이 이용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생명표 혹은 사망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다른 자료로부터 얻어진 생존함수 $S_{s,C}$ 의 캐플란-마이어 추정량 (Kaplan-Meier estimator)과 최우추정량을 통해 얻어진 최적 은퇴 연령의 생존함수 $S_{a,R}$ 을 결합하여 넓은 의미의 은퇴에 대한 분포함수를 구할 수 있다.

고령자패널 1차연도 서베이에 이용한 생존 분석의 추정결과가 부록에 요약되어 있다. 생존 분석을 바탕으로 남성의 경우 78.8세, 여성의 경우 54.1세가 각각 사망이라는 요인이 없는 경우의 평균적인 은퇴연령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50%의 사람이 은퇴하는 나이, 즉 R의 중간값은 남녀의 경우 각각 70세와 49세로 나타났다. 좁은 의미의 은퇴연령 R에 대한 분석 결과를 <표 4>에서의 결과, 즉 넓은 의미에서의 은퇴연령 T와 비교하였을 때 남성이 보다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과 비교하여 많은 수의 고령층 남성들이 사망 시점 당시에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은퇴연령 R에 대한 분포함수와 각 연령별 생명표의 정보를 식 (11)에 적용하여 평균은퇴연령 μ_T 를 추정

**생존 분석을 바탕으로
남성의 경우 78.8세,
여성의 경우 54.1세가 각각
사망이라는 요인이 없는
경우의 평균적인
은퇴연령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6) 두 시점에서의 C의 분포 함수가 동일한 경우라면 이탈 연령 T에 분석 자체가 여전히 유의하다. 보다 완화된 가정 하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7) 논의의 편의를 위해 독립성을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건강 수준이 사망확률과 은퇴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생존확률에 동시에 영향을 주므로, 사망 시점 C와 은퇴 연령 R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 하지만, 보다 완화된 가정에서 모형의 분석이 가능하다.



수정된 방식을 적용하여
2006년 남성과 여성의
평균 은퇴연령을 계산해
본 결과 남녀의 평균
은퇴연령은 각각 62.7세와
53.4세로 나타났다.

한 결과 남성과 여성 각각 61.8세와 50.8세로 나타났다.

IV. 시사점 및 맺음말

평균 은퇴연령은 노동 공급을 요약하는 기초 자료로 주어진 기간 동안 노동시장의 상황을 요약하고, 각종 제도가 노령층의 노동시장 참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정책을 평가하는 수단의 성격을 갖는다. 노동시장 상황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지표로서 평균 은퇴연령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평균 은퇴연령에 대한 추정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평균 은퇴연령은 대표적인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것으로 예측되는 평균적인 연령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추정방식은 주어진 시점에 생존해 있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은퇴연령을 추정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방식은 사망자에 대한 조정 없이 단순히 경제활동참가율을 이용해 위험률을 과소 추정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식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제안은 생명표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위험률을 수정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제안은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생존분석을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 평균 은퇴연령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수정된 방식을 적용하여 2006년 남성과 여성의 평균 은퇴연령을 계산해 본 결과 남녀의 평균 은퇴연령은 각각 62.7세와 53.4세로 나타났다. 기존의 방식이 남성 평균 은퇴연령 추정에서 약 2.5세의 오차를, 여자의 평균 은퇴연령에 대해서는 약 0.5세의 오차를 보인 것이다. 이는 남성의 사망률이 주요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사망을 고려하지 않음에 따른 위험률의 과소추정이 컸기 때문이다. 장기추세와 관련하여서는 남녀의 평균 은퇴연령 모두 일정한 정도의 오차를 가져, 안정된 추세를 갖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일정한 정도의 오차가 유지되었음은 해당 기간 동안의 사망에 대한 분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여기서 제시된 평균 연령의 수치는 다른 특성, 예컨대 학력 등의 요인이 통제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노동시장의 여건에 영향을 줌으로써 개인의 노동 참가에 관한 의사결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또 다른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결과를 인과관계로 해석하기보다는 평균 은퇴연령이 본래 의도한 바대로 노동공급에 대한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정된 평균 은퇴연령 추정치와 기존의 추정치로부터의 비교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존 추정방식을 사용한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특히 주요 연령대의 사망률이 높은 집단에 대한 기존 결과를 해석할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들 집단의 경우 오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비슷한 맥락에서 서로 상이한 연령대별 사망률 분포를 갖는 두 집단에 대한 평균 은퇴연령을 비교한 기존 연구들은 다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상이한 두 국가 간의 평균 은퇴연령의 비교 및 장기간에 걸쳐 도출된 평균 은퇴연령에 기반한 결론들은 고려되는 집단의 사망률의 차이로 인하여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평균 은퇴연령은 노동공급 상황을 요약하는 하나의 지수로서만 해석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추정치 자체가 기술적인 가정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의사 결정에 관한 여러 요인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내생성의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평균 은퇴연령에 대한 추정치를 이용해 다른 변수의 추계, 예컨대 국민연금 지출 규모 등의 재정 소요를 추정하고자 하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상에서 언급된 시사점 외에도 정책과 정책 효과 분석의 목적에 따라 지표로 설정해야 하는 은퇴의 개념이 달라져야 할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본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은퇴는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요인을 포함하는 정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 개인의 최적화 행위에 따른 자발적인 이탈만을 의미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에서 사망의 요인까지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노령층의 노동참가에 인센티브에 영향을 주는 여러 제도를 평가하려는 취지라면 좁은 의미의 은퇴연령 (R)을 고려함이 옳다. 예컨대 연금제도가 은퇴에 중립적인 방향으로 개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반면에 노령층의 노동참가율 자체 혹은 은퇴 이후 부양비율 (dependency ratio)에¹⁸⁾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사망의 요인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의 은퇴 (T)가 적절한 분석의 대상이다. 이러한 점에서 생존 분석을 이용한 제3장의 접근이 바람직한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의미의 은퇴에 대한 명확한 설정에서 출발하므로 두 변수의 분포 및 두 변수로부터 생성되는 다른 변수에 대한 정보 또한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는다. 예컨대 은퇴 시의 여명에 관한 사실은 두 은퇴 변수에 대한 차이, 즉 $\min(T-R, 0)$ 를 통해 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제시된 추정방식 역시 여러 사회 경제적 요인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경제적 상황 하에서 개인의 의사결정이 달

은퇴는 좁은 의미에서 개인의 최적화 행위에 따른 자발적인 이탈만을 의미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에서 사망의 요인까지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18)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노인인구부양비율, 즉 65세 인구나 20~64세 인구의 비율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부양비율, 예컨대 경제활동인구비를 대비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자.



생존 분석을 이용한 제3장의 접근이 바람직한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의미의 은퇴에 대한 명확한 설정에서 출발하므로 두 변수의 분포 및 두 변수로부터 생성되는 다른 변수에 대한 정보 또한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 한계점은 보다 세밀한 자료의 구축 및 은퇴 결정에 관한 구조적 접근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 록

가. 평균 은퇴연령표

〈부표 1〉 2006년 평균 은퇴연령

(단위: 세)

연 도	전 체		남 성		여 성	
	조 정	미 조 정	조 정	미 조 정	조 정	미 조 정
1989	57.0	58.9	60.1	63.3	53.6	54.4
1990	57.1	58.9	60.3	63.5	53.6	54.4
1991	57.1	59.0	60.4	63.6	53.6	54.5
1992	57.3	59.2	60.6	63.9	53.8	54.7
1993	57.2	59.0	60.6	63.8	53.8	54.7
1994	57.4	59.3	60.7	64.0	54.1	55.0
1995	57.6	59.5	60.9	64.1	54.4	55.3
1996	57.7	59.5	61.0	64.1	54.4	55.3
1997	57.9	59.7	61.2	64.1	54.7	55.5
1998	57.5	59.0	60.9	63.6	54.1	54.8
1999	57.5	59.0	60.7	63.2	54.4	55.1
2000	57.5	58.9	60.6	62.9	54.3	55.0
2001	57.6	58.9	60.7	62.9	54.4	55.0
2002	57.8	59.1	61.1	63.2	54.6	55.2
2003	57.6	58.8	61.0	63.1	54.2	54.7
2004	57.8	59.0	61.3	63.2	54.4	55.0
2005	58.0	59.1	61.4	63.2	54.5	55.1
2006	58.2	59.2	61.7	63.4	54.7	55.2
2007	58.4	59.4	61.9	63.6	54.9	55.4

주: 1. 1989-2007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생명표를 이용하여 구함.
 2. 2007년 생명표는 2006년 생명표로 대체.



나. 최우추정법

고령자 패널 1차 조사는 45세 이상 성인 10,254명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 4,059명이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나머지 6,195명은 은퇴자이다. 은퇴자 중 1,999명에 대한 은퇴 시점에서의 연령 정보가 알려져 있다. 나머지 4,196명은 대리인에 의한 인터뷰로 인해 은퇴시점에서의 연령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상치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은퇴연령이 주어진 1,999명 중 은퇴시 연령이 35세 미만인 70명을 제외한 9,554명이 최종 분석대상이다.

[그림 4]에 나타난 연령별 위험률 형태를 감안하여 로그로지스틱(loglogistic) 분포를 위험률 함수의 모형으로 채택하였다¹⁹⁾. 이 경우 R에 대한 위험률 함수와 생존율 함수는 다음과 같다.

$$(12) h_{a,R} = \lambda \times \gamma \times \frac{a^{\gamma-1}}{1 + \lambda t^\gamma}$$

$$(13) S_{a,R} = \frac{1}{1 + \lambda t^\gamma}$$

식 (12)와 (13)에서 파라미터 λ 와 γ 는 양수라는 제약식을 사용하였다²⁰⁾. 이제 $d_{1,i}$ 와 $d_{2,i}$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14) d_{1,i} = 1(i \text{가 은퇴하였고, 은퇴시 연령이 알려져 있음})^{21)}$$

$$(15) d_{2,i} = 1(i \text{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됨})$$

이 경우 로그 우도함수(log-likelihood function)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6) L = \sum_i d_{1i} \times \ln f(t_i) + d_{2i} \times \ln S(t_i) + (1 - d_{1i} - d_{2i}) \times \ln F(t_i)$$

남성과 여성 집단의 모수에 대한 최우추정량(maximum likelihood estimator)이 <부표 2>에 요약되어 있다.

19) 로그로지스틱 분포를 위험률 함수로 정하는 경우 파라미터 값에 따라 시간에 대한 위험률이 증가 혹은 감소가 단조(monotone)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 시간에 따라 위험률이 증가하는 성향을 보일 수 있도록, γ 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을 부과한 것이다.
21) 여기서 1(.)은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1의 값을 갖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지수함수(indicator function)을 뜻한다.



〈부표 2〉 최우추정치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남성	λ	0.001×10^{-7}	(5.230×10^{-9})
	γ	3.792	(0.005)
여성	λ	0.001×10^{-7}	(4.580×10^{-8})
	γ	4.140	(0.008)



〈참고문헌〉

한국노동연구원, 「2006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 기본조사 데이터 생성변수 안내서 1」, 2007

기획재정부, 「관세운영경비지출제도 운용방안」, 2002, www.mosf.go.kr

남문섭, 「정부구매카드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5

Blöndal, S. and S. Scarpetta, “The Retirement Decision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202, OECD Publishing, 1999

Johnson, R., “Why the “average age of retireemnt” is a misleading measure of labor supply”, *Monthly Labor Review*, Dec. 2001, 2001, pp. 38~40

Latulippe, D., Effective retirement age and duration of retirement in the industrial countries between 1950 and 1990. Issues in social prorection. Discussion paper 2.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1996

OECD, “The Transition from Work to Retirement,” *Social Policy Studies* No. 16, Paris, 1995

Reimers, C., “Is the Average Age at Retirement Changing?,” *Journal of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Sep. 1976, Vol. 71 , No. 355, 1976, pp. 552~558

Scherer, P., “Age of Withdrawl from the Labour Force in OECD Countries,” OECD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49, OECD Publishing, 2002

Wild, R., "Estimating the Average Age of Withdrawal from the Labour Force," Pensions Analysis Unit U.K. Office for the National Statistics, 2006, available at.

http://www.statistics.gov.uk/downloads/theme_compendia/pensions_trends/EstAveAgeWithdrawalLabForce.pdf



정책토론회 리포트

■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 본 원고는 2008년 7월 24, 25, 31일 한국조세연구원이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토론회」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소비과세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요

- 주 제 부가가치세제 · 개별소비세제 개선방안,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방안
- 일 시 2008년 7월 24일(목) 14:30~18:00
- 장 소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

• 진행순서

14:30~14:40 인사말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직무대행

14:40~18:00 주제발표 및 토론

▶ 사 회 자 곽태원 서강대 교수

14:40~15:40 [제1주제] 부가가치세제 개선방안

▶ 발 표 자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토 론 자 김유찬 계명대 교수

심충진 건국대 교수

주영섭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현진권 아주대 교수

15:50~16:50 [제2주제] 개별소비세제 개선방안

▶ 발 표 자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 론 자 김유찬 계명대 교수

이명현 인천대 교수

정원현 한국귀금속관련단체장협의회 회장

주영섭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17:00~18:00 [제3주제]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방안

▶ 발 표 자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 론 자 우영호 증권거래소 선물시장본부장

이창희 서울대 교수

정해근 대우증권 전무

주영섭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가나다 순)

18:00 폐회

제1주제

부가가치세제 개선방안

발표 요약

김승래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1. 부가가치세의 현황과 문제점

- 부가가치세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면세 대상이 추가되어 현재 면세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이는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와 누적효과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함
- 일부 품목이 면세 대상이 됨으로써 유사한 성격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면세화 요구(exemption creep)가 계속 제기
- 또한 면세가 최종단계가 아닌 중간단계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에 의하여 오히려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995년에 도입
- 2006년 기준 162만 명으로 전체의 38.1%에 이르면서도 세수는 829억원으로 전체의 0.2%수준에 그침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간이과세 범위에 안주하려는 자영사업자들로 인하여 그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없음
- 이는 근거과세를 저해하고 탈세의 온상이 될 뿐만 아니라 부가세의 탈루는 소득세의 탈루로 이어지며, 근로소득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
- 부가가치세는 도입당시부터 사업장 단위로 과세되며 예외적으로 특정 전산시스템을 갖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사업자 단위로 과세

- 그러나 현행 사업장과세제도는 납세협력 비용, 세무행정 비용, 과세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를 초래

2. 부가가치세의 개선방안

- 면세범위에 대한 개선방안
 - OECD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거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면세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면세 항목은 원칙적으로 과세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다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
- 간이과세제도의 개선
 - 간이과세제는 고유가 등 최근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당분간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중장기적으로는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축소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확대
 - EU국가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 중인 사업자과세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one-stop 서비스 등 세정서비스 확대로 납세편의가 제고되는 효과가 있음
 -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사업자등록 관리, 세원관리 등에서 많은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효과

* 사업자과세제도로의 전환시 대략 1,000억원 수준의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효과

토론 요약

장기적으로 면세제도 폐지 바람직

김유찬 / 계명대 교수

김승래 박사께서 발표한 순서대로 면세범위의 조정과 간이과세제도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면세제도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면세되느냐 과세되느냐의 차이에 따라 가격체계를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제도이다. 발표자가 제시한 면세범위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한다. 이번 토론을 통하여 과세 전환에 대한 단기적 검토보다는 장기적으로 면세제도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유럽과 달리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세율이 낮은 특징을 갖고 있다. 이처럼 경감세율이 없는 단일세율체계에서는 면세제도만이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하지만 면세제도는 경감세율보다 세부담 역진성을 보완하는 기능이 미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면세범위가 좁은가 넓은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면세제도는 폐지되고 전부 과세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러한 과세 전환은 일률적인 단일세율(정상세율)의 적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면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영세율 또는 경감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면세제도는 사회적 지원 기능이 약하고 누적효과 환수효과 등의 불완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영세율, 경감세율을 통하여 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사회적 지원효과를 유지하여야 한다.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는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부

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영세율의 경우는 과세대상 거래이므로 납세의무자에게 기장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발생한다. 영세율이나 경감세율의 적용에 따른 추가적인 납세비용이나 징세비용은 유럽 국가의 예에서 봤을 때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제문에서는 별도로 지적하지 않았지만 법인세율 축소로 인하여 손실된 세수를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을 통하여 조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인세율 인하 조치는 일부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 소득분위 상위계층에 유리하게 소득재분배 효과를 유발한다. 만약 영세율이나 경감세율 등 다른 조치 없이 면세 범위만 축소 조정한다면, 소득분배에 있어 저소득층에 불리한 세제 조치가 될 것이며 한 계층에 대해서만 과중한 혜택이 돌아가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간이과세제도는 근거과세를 저해하며 탈세의 온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간이과세를 축소하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며, 발제문에서 간이과세의 축소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간이과세 축소의 기본방향은 발제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업태별 세분화 조치가 바람직하다. 다만, 정도와 시차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추가로 세무행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방과 비교했을 때 수도권인 경우 세무행정의 집중도가 떨어진다. 즉, 수도권인 경우 사업자 수에 비하여 세무행정 인력이 부족하여 부정 간이과세자를 적발하기 어렵다. 반면에 지방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낙후되었으며, 세무행정 인력이 수도권에 비해 충실하다. 때문에 수도권 세무행정 기구를 증설하고 지방은 서비스 위주 소규모 세무서로 재편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면세 축소의 경우 서민 부담을 고려해야

심종진/건국대 교수

면세범위 개선방안, 간이과세제도 개선방안,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부가가치세는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 정도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소득과세 및 재산과세에서 포착하지 못한 세원을 추가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또한 거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정상화가 요구된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제이므로 면세범위를 축소하여 과세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가격이 인상되어 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하반기에는 IMF 수준 이상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면세대상의 축소가 자칫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면세제도의 한계점으로 환수효과, 누적효과가 종종 지적되는데,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는 면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일반과세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급대상이 최종 소비자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행 금융업, 보건용역 등은 최종단계가 일반소비자이므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발생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본다.

부수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으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하에서 단지 부수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 또한 부수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교육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교육세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둘째,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수적인 재화나 용역

의 공급은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데 금융업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의료보험제도가 국민건강을 100% 담보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의료보건의용역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된다면,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산·서민층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교육용역에 대한 과세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고소득자의 교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과세로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은 교육의 기회를 더 박탈당할 수 있다. 단, 성인 교육에 대한 과세 전환에는 반대하지 않으며 경감세율을 도입하면서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간이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간이과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소득 포착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통하여 과세관청의 소득포착 기반이 충분히 구축되었다고 본다. 이처럼 소득포착의 개선이 먼저 이루어진 후 비로소 기준금액 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현행 사업장단위 과세를 사업자별로 전환하여 소득포착 검정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며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자단위별 과세제도를 도입하면 부당하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례를 적발할 수 있을 것이다.

부가가치세제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조세의 효율성이 잘 달성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행의 단순비례세율보다는 경감세율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면세의 폐지에 대해서는 시일을 두고 장기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방만한 면세 대상의 정비 필요

주영섭 /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실무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추가적인 의견 개진보다는 토론에서 논의된 의견을 취합하여 바람직한 부가가치세 운영방향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논의의 주제는 크게 면세범위의 축소, 간이과세 개선방안, 과세단위 전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제로서 모든 재화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과세한다. 때문에 소득에 역진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면제제도나 특별소비세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 특별소비세는 이러한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면제제도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복수세율을 운영하는 나라가 다수 존재하는 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단일비례세율제도만을 운영하고 있다. 복수세율의 도입에 대하여는 이미 검토한 바 있으나, IMF의 자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단일세율제도는 훌륭하며 면제제도가 경감세율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면제제도를 잘 이용하면 별도로 경감세율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면세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면세 범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넓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면세에 대한 제안은 많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과세 전환에 대한 건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기인한다. 신정부 출범에 따라 기존 부가가치세의 면세항목 전반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방만한하게 운영되고 있는 면제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면제제도는 일반소비세의 역진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면제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 면제제도의 적용 대상에 대하여 품목별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

인 과세 전환 대상에 대한 논의는 쉽지 않지만 현재 면세품목 중 시급히 과세 전환이 필요한 항목을 검토하고 있다.

면세를 과세로 전환했을 경우, 물가 상승이나 서민 생활 어려움 가중 등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전체 소비생활에서 본다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또한 물가는 단기적인 현상으로 조정 당시에는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일시적 부담을 이유로 장기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체계의 개선을 게을리할 수는 없다고 본다.

과세 전환의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단체나 관련 업종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일반 국민의 경우에도 과세 전환에 공감하더라도 적극적인 찬성을 보내기보다는 관련 단체의 반발이 훨씬 격렬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과세 전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간이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래로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다. 간이과세제도의 경우에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영세납세자의 경우 납세 편의를 제고하거나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간이과세제도는 경제학적 논리와 정치논리의 대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현실적으로 간이과세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단계적 축소에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제도는 장기적으로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준금액 4,800만원을 인상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면, 국민소득·소비 수준의 향상에 따라 간이과세의 적용범위가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세무행정 측면에서 지역적으로 또는 일부 업종별로 간이과세 적용 배제범위를 점차 확대하도록 하여 점진적으로 간이과세가 축소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 양성화를 위한 시스템적 개혁은 그간 꾸준한 노력이 경주되었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제도, 그리고 사업자계좌제도 등을 통하여 과표 양성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세무행정 강화로 간이과세자 비중 축소해야

현진권/아주대 교수

오늘 토론의 요지는 소비자 측면, 그리고 세무행정을 포함한 공급자 측면에서의 세부담 완화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경제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면세범위는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하지만 실제로 의사결정은 합리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민주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효율성뿐만 아니라 민주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면세 범위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면세제도의 폐지가 가능할 것인가? 최근 들어 경기가 위축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면세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때문에 정책의 기본방향은 면세 범위의 축소·폐지이지만,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세수를 저소득층 복지 등 사회복지 지출과 연계하는 패키지 형태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둘째, 공급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현재 38%를 차지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의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 발제자께서는 그 대안으로 기준금액을 낮추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체 납세자 중 간이과세자의 비중을 축소하여 현재 간이과세자 비중을 10% 이하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기준금액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세무행정 개선을 통하여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 수도권에서 사업자 중 연간 매출 4,800만원 이하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때문에 세무행정 강화를 통해 간이과세자 비중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세제를 통한 해결은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세무행정 등 다른 방향의 접근이 바람직하다.

과세단위의 조정에 대해서는 그간 사업장 단위 과세는 세무행정과 세목과의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하여 과중한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을 유발하였다. 또한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조정함으로써 탈세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탈세 방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무조사인데 사업장별 과세보다는 사업자별 과세의 경우 세무조사 효과가 훨씬 클 것임을 알 수 있다.

제2주제 **개별소비세제 개선방안**

발표 요약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배경

- 개별(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 보완을 목적(사치세)으로 도입되었으나 지속적 경제성장 및 소득 증가로 최근 사치세 기능이 극히 미약
- 소득재분배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사치세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반면, 관련 산업의 수요기반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 발생
- 최근 ‘시장의 실패 교정적 조세’로서의 개별소비세 기능이 강조되기 시작
- 개별소비세제 전반에 대해 과세의 목적, 기능, 역할,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의 범위 재조정 및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의 모색이 필요

2. 현황과 문제점

- 1990년대 후반부터 개별(특별)소비세의 재분배 효과가 급격히 감소
- 외부불경제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사치세 → 외부불경제 교정적 조세’로서의 면모 일신이 필요
- 보석·귀금속산업 등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로 인해 고가품시장의 음성화 및 무자료거래, 탈세 등

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상적인 생산·유통경로가 차단되어 국내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큰 장애

- 2006년 현재 부과기준 과세실적은 30억원(납부세액 기준)에 불과
- 개별소비세 과세 → 탈세 → 정상적 시장 위축 → 국내 관련 산업의 판로봉쇄 및 산업기반 위축 → 신기술·신제품 개발 부진 → 경쟁력 약화 → 판로축소 및 산업기반 위축 → ...의 악순환이 지속되어 높은 기술수준 및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산업발전이 크게 저해

- 고급가구, 고급시계, 고급용단, 고급사진기, 고급모피와 동제품 등의 경우 초과금액 과세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나 ‘영수증 분할’ 등을 통해 상당부분 탈세 추정
- 가격 구분에 따른 시장분리로 인해 국내업체의 고급품 시장 진입이 사실상 제한

- 담배소비세를 죄악세로 이해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나 담배소비세가 주요 지방재정 수입원으로 기능하고 있어 소비억제 효과가 미약
- 본래의 죄악세·소비억제적 조세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세가 보다 바람직
- 다만 지방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현 수준의 지방세분 소비세는 유지가 현실적
- 종량세 과세체계로 인한 실효과세율 저하 방지를 위한 보조적 장치 필요

3. 개선방안

- 보석·귀금속·향수류·고급가구 등의 품목의 경우 과세 실효성 측면, 음성적 시장의 정상화를 통한 국내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등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담배, 주류 등도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개별 소비세의 틀 안에서 합리적으로 과세할 필요
- 이에 따라, 담배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국세분 담배세를 신설하되 기존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폐지·대체(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
- 다만, 현행 지방세분 소비세(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현행 유지가 바람직

토론 요약

고가 사치재에 대한 과세 당위성 있어

김유찬/계명대 교수

발표자께서 개별소비세가 사치세 기능이 남아 있지 않고 후퇴되어 있다고 지적하였지만, 실제로 90년대 이후 가전제품이 특소세 품목에서 제외되고 남아 있는 것을 보면(1종, 2종 : 보석,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가구,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 아직도 사치세로서의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많다. 전체적으로 보면 위와 같은 물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최상위계층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보고서 P.39의 개별소비세의 소득계층별 분포 결과를 보면, 실제로 실효적인 과세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진적 구조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유럽은 부가가치세가 20%대의 세율을 가지고 있고, 생필품은 저율 또는 영세율로 해주고 있으니 추가과세 필요성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10% 세율이므로 고가상품에 추가적 과세는 당위성을 가질 수 있다.

보고서 P.57의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실제로 실효성 있는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과세로 전환한다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사치세 성격이 없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 과세 실효성이 없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과연 이 과세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하지 말자는 것은 과세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품목 중 자동차, 석유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승용차 홀짝제는 에너지 절약 차원의 실효성도 없고 실제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산업분야가 많은데(개인들은 별로 사용하지 않음) 국민들이 고통스럽게 정책을 따르고 있다. 오히려 산업분야 조세지원이나 제재(TAX를 부과)와 같은 조세정책으로 전체 산업에 에너지산업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품목별 증장기 세수효과 등 논의 필요

이명현/인천대 교수

이 발표문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개별소비세제가 사치세로의 실효가 거의 없어졌으므로 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이다. 과연 사치세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과세효과가 별로 없는데 사치세로 과세하는 것이 옳다면 분명히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재화가 있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면 세법개정으로 새로운 세목을 포착해서 사치세로 과세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고찰해봐야 한다.

선진국에 사치세가 없다는 것도 논거가 될 수 있지

만, 사치세라는 것이 산업발전, 고용창출 효과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소득세에 맡길 수 있고 사치세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자원왜곡 효과가 큰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보고서 P.39 그림에서 세부담을 어떻게 산출하였는지에 따라 해석 문제가 있다. 실제 납부한 세금을 정확히 포착해서 도출하였다면 보고서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관련 지출품목 파악으로 지출금액을 산출해서 곱하기 세율(법정세율: 이상적으로 제도가 작동했을 때 가상의 세부담)을 했을 때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실질적 세율을 곱해서 산출할 수도 있으므로 보고서의 논리에 대한 설득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고가품에 대해서 현재 징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탈세의 문제인지, 아니면 과세당국이 과세 의지가 없어서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비과세로 했을 때도 산업 증진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 반면에 세율이 높아서 실질적으로 산업활동을 위축시켜 tax base를 형성시키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런 경우 비교적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품목별로 시장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개별 품목단위를 합해서 봤을 때, 제시한 단기적인 제안을 받아들였을 경우와 중장기적인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세수효과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제시하면 정책당국이 정책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담배소비세는 국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지방세 재원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현재 지방소비세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 담배 소비와 지방재정 사이에 있는 고리를 끊고 다른 세원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적극적인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세제지원 없어 귀금속산업 경쟁력 취약

정원현 / 한국귀금속관련단체장협의회 회장

지금 우리가 대학생한테 초등학생 옷을 입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 산업은 산업대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정 귀금속류는 유통이 용이하기 때문에 산업 전체적으로 묵시적으로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손재주가 발달해서 귀금속 가공능력이 뛰어나다.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세제지원 등이 없어서 영세성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과세실적이 30억원에 불과한데 거시적인 측면에서 노동집약적 산업 또는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정책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소비자와 숨바꼭질하는 상황에서 실질세수는 연간 30억~50억원인데 만약 세제 양성화를 한다면 더 많은 세수를 얻을 수 있다.

1천만원짜리 귀금속의 경우 세금이 500만원이 붙는데 이 때문에 소비자에게 1,1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팔고 있다. 조세정책을 산업에 초점을 맞춰서 실행해 주어야 한다. 과세로 인해 우리나라 귀금속의 성장잠재력에 비해 외국과의 경쟁력에 취약한 실정이다.

귀금속 분야에는 우리나라의 명품브랜드가 없는데 외국 명품브랜드는 세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더구나 밀수, 탈세 등으로 여러 곳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었으면 한다.



시장왜곡 바로잡아 실효성 있는 과세 검토

주영섭 /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특별소비세에서 개별소비세로 바뀌었는데 다양한 과세대상에 대해 개별소비세로 부과되고 있지만 과세 이유는 다르다. 사치세로의 성격 품목도 있고 외부불경제 교정 성격의 품목도 있고, 혼재되어 있는 것도 있다.

토론대상 품목은 주로 제1종과 제2종인데 사치세 혹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언급한 효과가 있다면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런 기능이 없다면 그 이유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재화인지 분석을 해 보아야 한다.

제1종, 제2종 품목에 사치성이 없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따라서 과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 그대로 시장에서 왜곡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소득재분배 효과만 나타나면 좋은데, 당연히 시장에서는 회피하려고 하면서 왜곡이 나타나는데 그 왜곡에 따른 비용을 감수하면서 이 제도를 그대로 운영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동안 소비세를 오랫동안 운영해 왔지만 시장왜곡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세수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폐지보다는 시장왜곡을 바로 잡아 실효성 있게 과세하는 것이 더 正道가 아닌지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제도적 목적 달성의 효과는 세수면에서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에 시장왜곡은 컸다. 과세대상 품목이 대기업이 공급하는 것이면 관리가 용이하여 시장왜곡 효과는 작겠지만, 귀금속과 같은 다수의 품목은 관리가 쉽지 않아서 시장왜곡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이 제도의 존속 여부, 과세

대상 축소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객석토론〉

이창희 / 서울대 교수

발표자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주차장 없이도 차를 가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도로나, 주차장에 미치는 시장왜곡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제3주제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방안

발표 요약

홍범교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현재 우리나라의 선물·옵션 거래는 1996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음.
- 현재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연간 거래금액은 ‘경’ 단위로 거래되고 있을 정도로 커다란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특히 KOSPI 200 선물과 옵션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현재 그 거래량이 세계 최고 수준
- 이러한 시장의 성장에는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대한 비과세 정책도 크게 기여하였음.
- 전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KOSPI 200 정도의 거래량을 보이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거래세의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상
-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파생금융상품시장에 대해서만 아무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 국제적으로 볼 때,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물시장에서 양도차익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차익과세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
- 따라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의 도입이 차선책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음.

-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함
- 시장 안정성을 해치는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여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금융시장으로의 과도한 자본집중을 억제함으로써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음.
- 반면, 거래세 부과는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차익거래 또는 시장안정화 거래를 억제하게 되어 시장 유동성 감소 및 시장 효율성을 낮출 우려가 있고, 시장개방과 금융시장 통합 상황에서 거래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의 도입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시장 상황·해외 금융시장과의 상대적 관계·거래세 과세 범위 및 세율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임
- 다만, 거래세를 도입하는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시장이 확립된 KOSPI 200 선물 및 옵션 등의 상품에 한정하여 거래비용의 상대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초기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 이 경우, 거래세의 부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며 최소한도에 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토론 요약

거래세 부과시 심각한 비효율성 야기

우영호 / 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본부장

먼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물시장만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주식시장과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현물과 선물을 이용한 차익거래에도 장애가 되는 점을 잘 지적해주셨다. 그리고 현물시장과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소득과세는 양 시장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동시에 시행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은 우리나라의 현물과 선물시장 과세제도 정비시 매우 유용한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파생상품의 본질은 위험관리이고, 이를 위한 헷지/차익거래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투기거래자가 헷지/차익거래자의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있다. 헷지거래의 경우, 기초자산의 포지션과 반대방향으로 파생상품시장에서 포지션을 설정하고 있어 현물시장과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가격 움직임에 상관없이 양 시장에서의 손익이 상쇄되어 소득이 제로가 된다. 따라서 자본이득과세가 순자본이득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볼 때, 거래세 과세시 헤지거래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곳에 과세하게 되어 파생상품시장 및 관련 현물시장까지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된다.

거래세 도입의 장점으로 투기를 억제하여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은 최근 몇 년간의 안정적인 주식시장 변동성 감안시 지금의 현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선물거래의 경우 현물가격변동에 민감하여 사고 파는 반복적인 거래가 많을 뿐이어서, 거래세 과세시 투자자는 거래비용 부담으로 기존보다 거래횟수를 축소할 수밖에 없어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파생상품거래규모는 주식대금 대비 파생대금은 3.6배, GDP 대비 파생대금은 7.6배로 거래가 부진하다고 알려진 일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어서, 해외 주요국과 비교시 결코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

2006년 기준 증권유관기관의 수수료 구조 및 해외 거래소와의 비교분석을 2008년 기준으로 재산출 시, 코스피200 선물의 거래소 수수료는 약 0.53달러로 영국, 유럽, 싱가포르보다 비싼 수준이다. 또한 투자자의 거래비용 분석은 거래소의 수수료 수준 비교가 아닌 위탁수수료로 해야 적정하며, 위탁수수료 비교시 국내와 해외는 큰 차이가 없어, 거래세 부과 시 다른 나라와의 상대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사례와 관련하여, 브라질의 경우 장외상품의 성격이 짙고, 홍콩·싱가포르의 경우 과세되고 있는 상품이 유가증권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품이고 캐나다의 경우 퀘벡 거주자만 해당하는 지역적 제한으로 인해 주가지수상품에 부과하는 직접적인 외국 비교사례는 대만이 유일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만의 경우에도 자국시장에서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율을 기존 0.025%에서 2006년 0.01%로 인하하였고, 지금 거래세 폐지를 건의중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거래세 부과가 거래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분석한 인도 사례의 경우 분석 기간이 특정월물의 과세 전·후 2개월에 국한된 단기라서 과세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과세 이후 인도상품거래소의 거래량이 감소한 점을 볼 때, 거래세 과세가 거래규모에 미치는 장기적인 충격이 없다고 판단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

현재 선물거래규모를 고려 시 거래세의 잠정적 부과 여건이 되고 해외시장의 이탈 우려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은 안일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현재 코스피 200시장은 딜러 및 브로커 간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있어

거래세 부과조치는 시장참여자 이탈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인 해외시장으로의 거래 수요 이탈은 해외에서의 투자수요 유입 차단은 물론 외국투자자의 이탈을 촉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거래세 도입이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고, 금융시장으로의 과도한 자본집중을 억제”를 통하여 자본비용을 낮춘다”는 주장은 현재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09. 2)을 앞두고, 금융기관 국제경쟁력 강화 및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등 정부의 의욕적인 금융시장 발전 노력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또한 연구자는 소득세 징수의 어려움에 차선책으로 파생상품 특히 코스피 200선물·옵션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거래세 도입은 징수 편의성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지만, 더욱 중요한 세원개발 및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내용을 정리하면, 세계적인 추세가 자본시장에서의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고 소득세 도입 여건 미비에 의한 차선책으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득(파생상품 세수증대)보다 실(거래위축으로 주식시장 세수감소)이 더욱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선물시장의 소득과세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기적으로는 파생상품을 더욱 육성하여 현물시장 규모 확대를 통한 세수증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등가관계 고려할 때 선물시장 과세 당면

이창희/ 서울대학교수

조세이론으로는 기본적으로 거래세의 부과는 정당하지 않다. 부동산 거래에서 사용자부담금 정도를 넘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정당화하기 어려운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현행법하에서 파생상품과세 문제는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거래세 부과가 정당화되는가를 물어야 한다. 선물시장만 본다면 여차피 제로섬 게임인만큼 소득세를 매기든 말든 경제의 효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로섬 게임의 성질상 시장 전체를 본다면 국가가 걷는 세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태여 소득세를 부과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차선책으로서 거래세라는 것도 필요없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문제는 현물시장에서도, 이미 발행된 주식의 매매거래는 모두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다. 선물을 산다는 것은 돈을 써서 현물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을 생각하면, 현물시장에서도 주식을 산 사람이 버는 소득이 있다면 주식을 판 사람은 같은 금액의 소득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이 등가관계를 생각한다면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은 조세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같은 방식으로 과세해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현물시장에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하는가이다. 부과해야 한다.

현물시장에 소득세를 매겨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기본적으로는 공평의 문제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현물시장에서도 새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에서 생기는 소득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현물시장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그 대신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 현물시장의 과세를 거래세에서 소득세로 바꾸지 못하는 동안은 선물시장에도 거래세를 매길 수밖에

에 없다.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세율은 선물시장의 과세표준은 현물시장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역시 등가관계 때문이다. 옵션시장의 과세표준을 옵션프리미엄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거래세 도입시 경제 침체, 해외자금 이탈

정해근/대우증권 전무

결론적으로 말하면,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가 침체된다. 그리고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논의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과거 유가증권 등에 대한 과세문제를 논의할 때, 소득이 있는 세금이 있다는 논리하에 소득세 부과를 논의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신 차선택으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현물·선물시장에서는 거래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여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과거에는 조세편의상 거래세를 부과했으나, 지금은 금융실명제가 정착되고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현황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세로 과세해야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시각은 거래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금융후진국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과약이 어려워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 거래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정부가 이중과세를 바라보고 거래세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시장

에서의 거래 대부분이 법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법인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선 장외파생상품시장의 40%가 코스피 200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오히려 장외파생상품시장이 침체된다. 또한 증권사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 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면 금융기관들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거래세 부과시 미래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 매매가 감소하게 되면, 이를 통해 발생하는 세수 및 수수료 수입도 감소하게 된다. 더불어 관련산업이 침체되게 되면, 법인세 세수도 감소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단타 거래가 감소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선물·증업업계가 침체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금융후진국화가 되면 해외자금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과세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해야

주영섭/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그 동안 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었으나, 시장의 부작용 때문에 번번히 도입되지 못했다. 신정부 들어서도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의 정도는 차익과세이다. 제로섬게임에서도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소득과세 차원에서 접근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시장특성상 현물시장에 대해 차익과세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생상품에 대해서 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차선택으로

파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 부과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오히려 법인세수의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결국,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문제는 조세논리, 시장논리 그리고 산업정책의 논리로 구분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낮은 거래세 세율을 부과할 경우, 조세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측면에서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KIPF**



소득세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요

- 주 제 소득세제 개선방안
- 일 시 2008년 7월 25일(금) 15:00~17:00
- 장 소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
- 진행순서
 - 15:00~15:10 인사말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직무대행
 - 15:10~16:40 주제발표 및 토론 「소득세제 개선방안」
 - ▶ 사 회 자 안중범 성균관대 교수
 - ▶ 발 표 자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 토 론 자 김상겸 단국대 교수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서경대 교수)
윤영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이철인 성균관대 교수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책임연구위원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

(가나다 순)

16:40~17: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7:00 폐회

주제

소득세제 개선방안

발표 요약

전병목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1. 배경

-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높은 면세자 비중, 복잡한 공제제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와의 차별적 공제제도 운영, 가구규모에 대한 고려부족 등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근로소득자의 높은 면세자 비중은 소득과약을 격차를 고려하여 세부담 경감차원에서 제공된 각종 공제제도 등의 영향
- 개산공제의 역할을 하는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의 역할을 하는 10여종의 특별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특별공제를 신청함으로써 인해 제도 운영의 복잡성 증대
- 이러한 소득세제의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소득세제 개편방향을 검토할 필요
-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이에 부합할 수 있는 소득세제 개편방향 필요
- 특히 재원조달을 위한 소득세원의 확보와 최근의 소득세부담 증가세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

2. 세제개편 방향

가. 기본방향

-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은 OECD 선진국들에 비해 낮고 세수기반도 협소하여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확대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2004년 이후 조세/국민 부담률 상승추세가 높아 소득세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에는 한계
- 그러므로 소득세 세부담 증가율을 정상성장률(혹은 임금상승률) 대비 일정범위 내로 조정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인 소득세 역할 증대가 바람직

- 소득세의 역할증대와 함께 면세자 축소, 가구규모에 대한 고려, 세제 간소화, 소득과약을 제고 등 구조개선 노력도 필요
- 면세자 축소, 소득과약을 제고 등의 정책은 전반적인 세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이를 적절히 완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동시에 실시할 필요
 - 세율인하 등과의 연계가 바람직

나. 구체적 방안

- 최근의 높은 소득세수(근소+중소) 증가(2007년 18.7% 증가)와 법인세율 인하정책, 소득세 부담구조 조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정도와 연계하여 소득세율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유가환급금 지원이 끝나는 2010년 적용이 바람직
- 근로소득공제가 큰 반면 인적공제는 적어 가구원수에 따른 세제지원 효과가 약한 편
- 인적공제 등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가 있는 공제항목의 확대가 필요하나, 이는 과세자비율을 하락시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보완책과 병행 추진할 필요
- 근로소득공제는 소득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과세기반 확충 등 소득세 기능 강화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 현행 특별공제제도는 항목만 16개로 매우 복잡하고, 근로자의 면세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축소가 필요

* 예시 : 투자조합출자금 공제 등 실효성이 낮고 과세원칙에 맞지 않는 항목

- 소득세제의 기능 강화를 위해 뚜렷한 이론적·법적 근거 없이 비과세되고 있는 부분(예시 : 사내근로복지기금,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과세로 전환할 필요

다. 중장기 과제

- 물가연동제는 중장기적으로 신중 검토해 나가며, 자녀세액공제는 근로장려금(EITC)이 정착된 이후, 동 제도의 확대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소득세제의 보완, 확대 제안이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옳은 방향이지만, 자칫 이러한 개선이 소득세 부분의 비중 확대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근래 사회보장성기여금 부담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그런 추세로 갈 것이라고 예측되는 가운데, 납세자는 소득과 연동하여 움직이는 사회보장성기여금 등이 세금과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세부담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발표자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근래 사회보장부담의 증가 추이와 이러한 기초 유지가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의 증가로 비취질 수 있는 세계개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각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 소득세율 인하와 관련하여 현재는 별로 조정할 부분이 없고 2010년 이후에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들어 세율 구간 조정 및 유가환급금정책 등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이 작은 정부, 감세, 경제활성화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전향적인 정책방안 제시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즉, 현재 상황에서 소득세율을 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짓기보다는, 현 정부의 경제운용 기조와 법인의 소득세율인 법인세율 인하 조정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소득세율 인하가 장기적인 방향임을 고려한다면 보다 전향적인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어떠한가 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명목세율이 외국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서 꼭 낮출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과거에는 선진국 또는 경쟁국의 세율 인하 여부를 살핀 후 수동적으로 시행해온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이왕 인하할 거라면 먼저 단행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소득세제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두 번째 개편안인 공제제도 축소와 관련해서는 전

토론 요약

선제적 소득세율 인하도 검토 필요

김상겸 / 단국대 교수

발표자께서 소득세제 개선방안을 총론 및 각론으로 구분지어 발표하였는데, 본 토론자도 이에 맞추어 의견을 제시하겠다.

총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발표 내용은 매우 합리적이며 본 토론자 역시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다

부 찬성하는 바다. 다만 발표자께서 지적한 대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용이한 것부터 점진적으로 축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세 번째 과세기반 확대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미술품 등에 대한 과세'에 대해 동의한다. 현행 미술품 등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미술품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지만, 세제 측면에서 보자면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특혜를 부여한다는 인상을 주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아울러 미술품 등의 비과세제도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자칫 소득세제의 허점(loophole)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세가 타당하다고 본다. 이 경우 관련 분야의 큰 조세저항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관련 분야의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증장기과세 중 하나인 자녀세액공제는 이 제도 자체만으로 보면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 이에 따른 저성장시대 도래로 경제 활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정부는 이미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형태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세액공제는 이보다 강력한 혜택이 있는 정책이다. 물론 자녀세액공제제도가 출산기피자까지 출산하도록 유도하지는 못하겠지만, 정부가 출산에 대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세액공제제도를 계획된 EITC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EITC는 도입 국가가 몇 안 되는 선진적인 제도로 우리 소득세제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솔직히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이나 상황에 적합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일 자녀세액공제제도를 EITC 범주에서 추진한다면, 결국 2011년부터 시행될 계획인 근로장

려세제(EITC)의 2단계에서 실시되어야 하는데, 계획 시행에만 얽매어 무리하게 시행하기보다는 1단계(2008~2010년) 시행 결과를 적절히 평가한 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복지지출은 시행하기는 쉬워도 이를 줄이거나 폐지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잠재적인 문제점들, 즉 소득과약, 제도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장치의 구축 및 부정수급자 처리 등에 대해 보다 치밀하게 대책방안을 구축한 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EITC 제도는 증세와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구하던 과거 정부에서 도입되었으나 실제 시행은 감세를 천명한 현 정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감세정책의 실효성 충분한 검토 있어야

유경문 / 서경대 교수

본 토론자는 발표자와 좀 다른 시각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사회분위기 및 정부의 정책방향이 세울 인화를 추진하는 추세인데, 과연 이와 같은 감세정책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적절한 것인가를 좀 더 냉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의 운영철학 또는 재정철학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세금은 줄여주되 교육·의료·주택 등 여러 문제를 개인이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소위 보는 시각에 따라 '시장논리'라고도 하고, '신자유주의'라고도 하는 재정철학이 있고, 또한 세금을 좀 더 부담하되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사회적인 공공재 혜택을 향유하도록 하는 재정철학이 있다.

이 중 양극화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각한 우리 실정에 어떤 것이 적합할지, 과연 전자와 같은 재정철학이 사회적 통합 및 장기적인 경제운용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보아야 한다.

물론 납세자 입장에서는 감세를 무조건 환영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 납세자의 권익보호 또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세율 인하에 의한 감세정책이 진정으로 국민 또는 납세자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납세자의 요구를 감안해 무분별하게 감세정책을 취하게 되면 '인기영합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감세정책은 장기적으로 재정수입의 약화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볼 때 동의하기 어렵다.

감세정책 옹호론자들은 감세가 개인의 경우에는 가처분소득의 증가와 소비수요를 증가시키고, 기업의 경우는 기업의 이윤 증대 및 투자 촉진, 더 나아가 기업 활성화를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논리적으로 일면 맞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 현실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하며, 이런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도입하게 되면 고소득자, 대기업 등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즉 개인고소득자는 그 비중이 작고 이미 상당한 수준의 소비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활성화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아울러 이들은 가처분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국내보다는 해외여행 및 쇼핑 등을 함으로 인해 국내소비 진작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 역시 법인세를 20% 수준까지 낮춘다고 하는데, 선진국의 법인세율 인하가 꾸준히 추진되었다고는 하나 낮은 세율 수준이 현행 우리 세율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과연 세율인하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우려되고 있는 기업의 투자감소는 높은 세금보다는 현금보유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으로 과연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대폭적인 세금 감소가 기업들, 특히 대기업의 투자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감세정책이 정부 목표인 경제성장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데 대해 본 토론자는 회의적이다.

만약 정부가 재정이 충분하여 감세할 여력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사회복지비의 국가간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OECD국가 중 사회복지 수준이 매우 열악하므로, 이를 빈곤계층이나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또는 우리 국민의 높은 사교육비 부담이 공교육이 부실한 데서 오는 문제이므로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 역시 타당하다. 그리고 성장을 추구하는 경우에도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기초과학기술 투자 확대 등이 보다 바람직한 것이지, 이를 감세로 연결시키는 것은 특히 중장기적으로 볼 때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감세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그럼에도 감세정책을 취해야 한다면 고소득자, 대기업보다는 저소득자, 중소기업에 감세혜택이 더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물가연동제를 발표자께서 언급한 것처럼 중장기 계획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적어도 2~3년마다 소비자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1인당 국민소득 등의 증가율을 사용해서 물가변동이 있을 시 이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납세자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표자료 <표 1>에서 보듯이 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인하하여 왔는데, 이 경우 세제혜택이 고 소득자에게 보다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상대적으로 중산층,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일률적인 세율 인하보다는 1,200만원 이하는 5%, 1,200만~5,000만원 8%, 5,000~8,000만원 17%, 8,000만원~1억원 30%, 1억원 초과는 35%의 약 5단계로 과표구간이나 세율체계 변경을 고려해볼 것을 건의한다.

소득세제 정상화, 체계적 추진 긴요

윤영선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흔히 3대 세목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언급된다. 특히 소득세는 납세자가 가장 많아 관심이 집중되는 세목이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제는 불안정하다는 문제점 및 이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차제에 신정부가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여 소득세제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중세인 소득세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 방향을 우선 살펴보고, 그 방향 하에서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오늘 발표내용은 장기적으로 세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추진해야 할 단기적 과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현행 소득세제가 추구해야 할 세 가지 목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기간세목이므로 재정에 있어 역할을 해 주어야 하고, 두 번째, 소득세제는 다양한 정책들을 반영한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는 정책세제이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세 번째, 소득세제 본연의 문제인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소득세제 목표는 소득세제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와 같은 검토는 발표자가 제시한 장기적 세제개선 방안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단기적 과제 선택의 적절성을 재고할 수 있다.

다음은 발표자의 장기적 세제개선 방향에 입각한 단기적 과제 추진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명목세율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실효세율 역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정부는 양 세율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을 맞춰가면서 과세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과세자 확대를 위해 기존 특정계층에 적용하던 '감면' 혜택을 축소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리고 최근 5~6년 동안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 양성화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는데, 이로 인해 기존의 소득세 체계하에서 결정된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아울러 한계세율을 점차 인하해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이러한 흐름 역시 단기적 과제의 고려사항으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인적공제와 관련해서는 다자녀가구 또는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유리한 소득세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와 관련해서 이들에 대한 공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소득세 율체계와 소득세공제체계의 개편 시점과 관련해 발표자와 토론자 간 이견이 있었는데, 이는 정부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전제로 이것이 손상받지 않는 시점에 가능한 작업임을 밝혀두겠다. 즉 정부 재원은 세금과 국채로 확보되기 때문에 특정시기 감세정책으로 재정이 부족하여 국채를 발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세율 인하,

공제체계 개편은 재정건전성과 긴밀하게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과세기반을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현행 소득세제는 fringe benefits(변형급여)의 과세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데, 단계적으로 이에 대한 비과세를 축소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물가 인상시기에 각각의 실질소득을 보상해 준다는 측면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국민을 설득시키는 달콤한 공약으로 이용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소득세제가 정상적인 상태일 때 강조될 수 있지, 지금과 같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현재와 같이 과세자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3% 수준에 불과한 비정상적인 시기에 과세저변을 훼손할 수 있는 물가연동제 도입을 유보하여야 한다. 즉 물가연동제는 도입에 앞서 소득세제 선진화가 먼저 이루어진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자녀세액공제 도입을 주장하였는데, 우리나라처럼 명목세율은 물론 실효세율까지 모두 낮고 면세자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동 제도까지 도입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소득세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근로 소득세액공제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금년부터 EITC 세액공제제도까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세액공제제도까지 고려한다면 공제제도는 더욱 복잡해지고 소득세제의 정책적 기능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향후 저출산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며, 이 때의 재정수요를 생각해본다면 소득세제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소득세제 정상화를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발표자는 물론 다른 토론자께서도 언급하신 좋은 의견들을 토대로 정책방향 및 범위를 결정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소득세 위상 제고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이철인 / 성균관대 교수

감세·증세에 대한 찬반에 대해 언급하기보다는 현상에 대한 진단 및 이에 대한 대안을 언급하는 수준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세율 및 소득구간 체계 등의 구조 면에서 선진국의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소득세 위상이 약해 이로 인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하다는 비난이 있어 왔다. 이와 같은 비난을 사게 된 원인에 대해, 발표자는 높은 면세자 비중, 복잡한 공제제도,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공제제도 적용 그리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고려 없이 오히려 소수자 가구를 더 많이 배려한 공제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본 토론자는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인 및 대응방식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광범위하고 복잡한 공제제도를 운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자영자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자영자는 소득의 불투명성 때문에 근로자보다 소득 파악이 여의치 않으며 자영자의 세부담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용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정치적인 고려까지 맞물려 공제 수준을 계속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랜 기간 노출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공제제도를 운영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요한 이유라 본다.

그 결과, '세부담이 일부 계층에 국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좀 더 기술적으로 설명해보면, 한계세율이 일정 소득구간 이상인 경우에 매우 높아지는 데 비해 일정 수준 이하일 때는 영(0)에 머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정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근로소득에 대

해 징벌적 성격의 조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빚어진다.

동시에, 광범위한 공제제도 운영으로 소득세제를 통해 세부적 정책사안(예: 소수자가구 대비 다자녀가구의 세부담 등)에 대해 세심하게 대응할 능력 및 여지가 축소된다.

지금까지 소득세 위상을 약화시킨 원인 및 이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짚어보았다. 본 토론자는 이와 같은 문제들의 기저에 규칙(rule)에 대한 신뢰가 약하고 위반시 강력한 제재가 쉽지 않은, 달리 말하자면, 계약관계에 대한 개념이 다소 불분명한 '아시아적 가치관(Asian value)'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막연히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발표자료에서 일본은 이미 12년 전의 면세자 비중이 10% 수준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이는 근거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 보다는 우리나라가 보다 세밀한 조세제도 운영에 실패하였고, 정치적·행정적 노력 등이 왜곡된 방식으로 가해진 것으로 진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여러 토론자께서는 세율 인하 또는 인상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보다는 소득세 위상 제고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여건 변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자영자 비중을 축소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달러인 다른 유사 소득수준의 국가보다 자영자 비중이 매우 높으며,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전체적인 생산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서비스 분야에서 업체의 기업화·대형화 등의 추진을 통해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자연스럽게 자영자 비중을 낮출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현 상황에서 과세기반 확대 및 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기 위해 조세행정을 계속 강화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으며, 이보다는 자영자의 대형화, 기업화 방법에 의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포함한 제도 개편 노력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는 것이 소득세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이 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왜곡된 소득세제를 바로 잡을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음으로 소득세 위상은 낮으면서 세율수준 및 과세구간은 선진국 수준이다 보니 일부 소득구간에서의 한계세율이 특정 세율 이상으로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복지국가로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달리 말해, 세율의 누진성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구하는 방식, 즉 세부담이 높더라도 한계세율이 그다지 높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굳이 '최적소득세제(optimizing income taxation)'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겠지만 보다 평률세제(flat tax rate)에 가까운 방식으로 소득세제를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세율체계에 있어 한계세율 수준이 높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 약간의 평률적 요소가 가미된 형태의 체계를 도입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밖에도 소득세제 기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정치적인 고려, 국민정서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자의성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로 인해 선거 때마다 새로운 공제제도가 추가적으로 도입됨으로써 면세점이 계속 올라가고 최근 10년간 면세자 수가 더욱 늘어났다. 결국 공제제도 확대가 중산서민층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은 중산층 이상 특히 고소득층에 더욱 집중되는 교묘한 형태로 활용된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여 사회에서 필요한 누진성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세수기반은 유지한 채 한계세율을 낮추려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대안의 하나로 조세제도와 사회안전망제도의 연계방안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예를 들어 EITC 제도가 도입되면 저소득계층에게는 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로 실효세율

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대다수의 근로자가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면세점을 낮추는 소득세제 개편을 하더라도 EITC의 도입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세부담을 만들어 내어, 실질적으로는 한계세율을 낮추는 평률세제(flat tax)와 유사한 효과를 창출해낼 수도 있다. 결국 EITC와 같은 사회안전망제도를 조세제도와 잘 맞추어 활용하다 보면 면세점을 낮출 수 있고 이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발표자께서 인적공제 확대를 주장하였는데 중장기적으로 이에 동의하며, 동시에 특별공제 등은 축소하여야 공제제도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다만 공제제도를 무조건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및 복지관련 공제는 가능한 한 살리고 그 외의 공제는 가급적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표준공제와 특별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공제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율 및 공제체계를 점진적으로 개편한 다음에는 조세제도의 자의성(discretion)을 줄이고 규칙(rule)에 의거한 운용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즉 조세제도에 정치적 요인이 개입되는 것을 가급적 줄이도록 물가연동제 등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소득분배 불공평성 파악 위해 사전 분석 필요

이태규 / 한국공인회계사회 책임연구위원

발표자께서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전반적인 현황, 세율수준 및 구조 등 현행 쟁점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소득세제가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본 토론자는 발표 내용 중 다음의 몇 가지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므로 이에 대한 간략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 발표자는 현행 소득세제와 관련해 높은 면세자 비중, 복잡한 공제제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와의 차별적 공제, 가구규모 미고려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형평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지니계수를 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분배 악화 추세가 완화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세의 1차적 기능은 재정수입의 확보지만 그 과정이 공평하지 못하면 납세자의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불만은 저소득계층의 경우에는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고소득계층의 경우에는 조세회피를 유발할 것이므로, 소득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사전적 분석이 고려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소득세율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발표자료 <표 5>의 과표구간별 근로소득세 부담액을 살펴보면 1996년과 2006년 각각의 과세표준 구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4천만원부터 8천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자의 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6년도에는 9.9%였으나 2006년도에는 24%로 2.5배 증가하였으며, 8천만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자의 세액은 1996년도에는 전체의 6.0%였으나 2006년도에는 무려 25.9%로 4배 이상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과표구간별 납세자의 세부담액이 비정상적인 이유는 10년 넘게 실질가치가 아닌 명목가치 기준으로 소득이 증가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한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중산층의 자본형성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근 법인세를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율의 조정이 없다면 과세양성화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된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저항을 불러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발표자는 지금 당장 소득세율 체계 변화를 야기할 유인이 없다고 하지만, 본 토론자는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가장 낮은 과표구간은 면세점을 낮춤과 동시에 세율을 현행 8%에서 5%로 낮추며, 높은 구간의 과세표준은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세율은 35%에서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과세표준 구간도 좀 더 세분화하여 현행 4단계에서 5단계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근로소득 공제개편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공제를 위해 개별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지만 근로소득은 개별적 증빙서류 구비가 곤란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위해 통상 소요되는 표준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에 대해 실액공제를 인정한 이상,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성격인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근로소득자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현행 근로소득공제의 문제는 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공제를 해주고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덜 공제해주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과 비교해본 결과, 연급여가 1,700만원인 경우에는 일본의 근로소득공제가 약 1.6배 더 큰 반면 연급여가 6,200만원 정도되는 소득자의 경우 일본의 약 80% 정도 공제받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별도의 실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근로소득의 법정필요경비 지출액이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비용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일본과 같이 개별소득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액공제와 근로소득공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정액 근로소득공제는 동결하거나 점차 낮추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네 번째, 인적공제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인적공제는 소득세의 과세원칙인 최저생활비 면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2005년 인구가 구통계에 의하면 전국 약 1,600만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9명이고, 이 중 4인 이하 가구가 전체의 90%, 5인 가구 이상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 인해 발표자께서 지적한 것과 달리 인적공제의 확대가 과세자비율의 하락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소득재분배의 정책적 효과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보다는 현재의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고령자가구 및 최근 이혼 증가로 인한 편모가구 수의 급속한 증가를 감안하여 이들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 번째, 특별공제 개편과 관련해 '의료비 등의 특별공제'는 성격상 갑작스런 거액의 지출로 인한 담세력의 감소를 고려하고 소득과세의 원리 및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적 조치라 생각된다. 다만 보험료기부금은 공익상 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본 토론자는 보험료 공제는 보험종목별로 특별공제의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의료비 공제는 적용 대상 인적범위를 민법상 부양의무에 맞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섯 번째, 소득세 과세저변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의 80% 필요경비공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개인소득세제에 최저한세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물가연동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복잡한 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우

려된다. 이런 측면에서 세제 간소화라는 현행 세제 운용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제도의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

스테그플레이션 대비한 정책 방향 제시되어야

임주영 / 서울시립대 교수

본 토론자는 발표 논문에서 다음의 세 가지 사안이 추가적으로 보완되었으면 한다.

첫 번째, 발표자는 소득세제개선방안을 근로소득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사업소득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때 사업소득의 '소득과익률 제고'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가 아닌, 이미 소득과익률이 제고되었고 앞으로도 개선되리라는 전제하에서 사업소득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담겨져야 한다.

두 번째, 근로소득과 관련해 제시된 방안 가운데 다음의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명목세율 개편방향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었으면 한다. 물론 현행 소득세제가 한계세율 측면에서 매우 기형적이고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 전문가들이 보다 집중해야 하므로, 명목세율의 인하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명목세율의 방향이 정책에 대한 시그널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명목세율의 인하 또는 인상에 대한 개편방향 및 범위가 보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정확하고 충분한 논의가 어려울 수 있겠으나 특별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의 조정 및 축소방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테그플레이션에 대비한 소득세 정

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 경제상황은 고물가, 저성장의 스테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소득세제와 같은 기반세제를 이용하려는 정치적 고려가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이와 관련해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물가가 견잡을 수 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자의 의견처럼 작년에 과표구간을 조정했다는 것만으로 세율조정을 유보하려는 생각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즉 최고세율 적용구간으로 소득 8,800만원 이상이 적합한 것인지 등에 대한 세율체계 및 과표구간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소홀히 한 결과, 1970년대 'bracket creep'으로 납세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결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명목임금 인상분만큼 명목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세부담이 기형적으로 높아져 초래되는 문제이며, 따라서 이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스테그플레이션을 소득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좋은 예로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의 스테그플레이션 대책을 벤치마크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감세를 통해 어떻게 투자와 저축을 늘려나갈 것이며, 어떻게 이를 신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스테그플레이션을 극복해 나갈지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본 토론자는 투자세액공제제도와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지금보다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싶다. **KIPF**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요

- 주 제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
- 일 시 2008년 7월 31일(목) 15:00~17:30
- 장 소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
- 진행순서

15:00~15:10 인사말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직무대행

15:10~17:10 주제발표 및 토론

▶ 사 회 자 이우택 한양대 명예교수

▶ 발 표 자 이진오 성균관대 교수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

박상원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

▶ 토 론 자 김 광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김상겸 단국대 교수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서경대 교수)

윤영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세본부장

(가나다 순)

16:40~17: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7:00 폐회

제1주제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

발표 요약

이전오 / 성균관대 교수

1. 납세협력비용의 개념

-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가 세법과 과세권자가 요구하는 여러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지출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으로 세금 이외에 납세자에게 추가적으로 중요한 부담으로 작용함

2.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OECD국가 동향

- 최근 OECD 회원국 사이에서는 규제로 인한 기업의 행정적 부담(Administrative Burden)을 줄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례가 없는 강도로 진행중임
- 조세와 관련해서는 납세편의 제고로 복잡한 법령에 대한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신고·납부의 불확실성을 줄이며 부문·계층 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삼고 있음

(예 시)

- 행정부담의 역진성을 감안한 면제기준(thresholds)의 확대와 세금 계산방식의 간소화를 통한 중소기업자 부담을 완화
- 자료수집·세금징수 절차를 재설계하여 표준사업신고제도(Standard Business Report) 등을 통해 중복 행정을 배제하고 사회보장 기여금과 다른 조세 징수절차를 통합

- 납세자 그룹별 시각에서 조세정책과 행정절차를 기획
- IT기술 발전을 이용한 절차 개선과 제3자가 보유한 정보와 거래를 이용한 납세편의를 도모(예 : 신고서 사전작성 안내제도 혹은 전자세금계산서)
- 납세자별 위험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다양한 방식의 조사 수행 등 과세당국의 개입을 재설계

3. 납세협력비용 감축 기본방향

-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중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징세비용 감축에 초점을 두고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 조세제도 및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납세자 순응도 제고를 위해 신고·납부절차 등 조세체계 전반에 걸친 제도 및 프로세스의 간소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

-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
-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조사·분석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함
- 국세청에서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 신고·납부횟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주로 매월 신고납부하는 세목을 중심으로 가급적 신고·납부횟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세수이월 규모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특별회계 등 세출조정과 함께 검토

- 되어야 함
- 세목간 신고·납부기한의 통일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세목별 차등화되어 있는 현행 분납제도(45일 또는 2월)를 월단위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장부·증빙서류 등의 전자보관을 허용하여야 함
-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화문서에 대해서는 세법상 원본 보관의무를 면제하되, 조세회피, 탈세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전자신고, 전자신청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 '08. 10월 시행 예정인 신용카드납부 대상세목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 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로 200만원을 한도로 함
- 향후 제도 활성화, 납세자편의 등을 감안하여 납부대상세목 및 금액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신고서 사전작성 안내제도(Pre-filled income tax returns)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제도 도입에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현행 질의·회신제도를 법령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는 외국의 시행사례, 일반 질의회신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봄
- 우선, 국세청 훈령 등을 통해 국세청 자체적으로 사전답변제도를 운영해 본 후, 시행성과 등을 보아가며 법령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확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부가가치세의 경우 현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제2주제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

발표 요약

박상원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1. 문제점

- 복잡한 조세체계는 납세협력비용과 조세행정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목적세는 대표적인 비판대상임
-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다양한 세목에 부가세(Sur-tax) 형태로 부과되어 세입구조를 복잡하게 하며, 세입·세출 간 연계성도 낮아 수익자 부담원칙도 미흡함
- 목적세 재원은 관련 특별회계에 경직적으로 배분되므로 방만한 사업운영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있음
- 각종 소비세제의 경우 교정세(Pigouvian tax)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조세체계 간소화 차원에서 개선 여부를 검토할 필요

2. 개선방안

- 먼저, 교육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
 - 【1안】 개별소비세·교통세·주세분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 본세가 없는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에 대한 교육세의 경우에는 다음의 대안을 검토할 필요
 - ①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전환
 - ② 금융개별소비세로 전환
 - 【2안】 세수여건·대체재원 확보 가능성을 감안하

여 단계적으로 폐지

- 농어촌특별세의 개편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1안】 각종 부가세(Sur-tax)를 본세에 통합하고 농특세는 폐지
 - 【2안】 세수여건·대체재원 확보 가능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 2안의 경우, 비과세·감면분 농특세를 우선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교통세의 개편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1안】 개별소비세에 편입시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방안
 - 【2안】 현행체계를 유지하되, 도로혼잡 및 환경오염의 중요성에 따라 세출 측면의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 소비세제의 경우 개별소비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각 세목은 독립된 세원을 갖고 있으며 과세목적·세율체계 등이 상이하어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음

토론 요약**계량화된 모델로 주기적 측정 필요**

박정수 / 이화여대 교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유경문 / 한국납세자연협회 회장, 서경대 교수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 납세협력과 같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것에 감사드리고 실무에서 많은 부분 적용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 투입, 인력 보강 등을 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일회성 세미나보다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납세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개선방안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무당국은 OECD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거나 납세자들의 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부분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질의 및 회신을 체계적으로 유형별 정리를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공개를 하면 납세비용을 줄이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다면 탈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탈세에 대한 의식 전환을 위해 정당한 세금, 납세의무에 대한 교육이 시행된다면 납세자의 의식이 고취될 수 있다.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에서는 주로 목적세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셨는데 특히, 교육세의 경우 박상원 박사의 제안처럼 본세에 통합한다면 재원의 감소로 인한 세액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효성이 없는 세목을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것에는 적극 동의한다.

두 박사께서 발표한 내용에 전반적으로 생각을 같이하며 국세청의 영문이름이 National Tax Service 인데 어떤 의도로 service라고 명명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세계은행이 발행한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의 납세비용이 106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측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무조건적인 반박보다는 논리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정형화해서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거나 조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발제문에서 OECD 여러 나라들이 SCM(Standard Cost Model)을 통해 감소되는 납세비용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한계점을 감안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납세협력비용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조세체계 간소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도 동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자신고 비율이 이를 먼저 실행한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전자장부화, 전자문서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더불어 사전답변 제도(Advanced Ruling)가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한다.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에서는 목적세를 집중조명하였는데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전반적인 조세체제도 검토하여 납세비용의 감축에 확대적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덧붙여 논문의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조세체계의 복잡성을 수량화하고, 수량화된 데이터를 통해 주변국과의 비교도 시도해 보기를 권한다. 다시 말해, 목적세를 간소화하는 방안의 득과 실을 계량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정책 권요

이현석/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발표하신 순서대로 기업 입장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협력비용 감축은 기업입장에서 보면 감세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인데, 그 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TF팀도 만들고, 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납세자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조세관련 입법과정에 있어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법개정에 있어서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전은 교수께서 발표하신 대로 국세청에서 사전답변제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질의를 할 경우 관련 법령을 소개해주고, 사실판단은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식의 답변이 많아 납세자들의 어려움이 컸다. 따라서 유권해석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사전답변제도가 도입되면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사전답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 적용범위, 수수료 부과 여부 및 실명기재 여부 등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업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동안 여러 차례 거론이 되었던 기업회계와 세무신고를 일치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양자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

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앞으로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고, 이에 따라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게 된다. 따라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법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마련한다면 기업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급속하게 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여 세제가 발빠르게 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디지털기술이 발달하면서, 유선, 무선, 방송, 통신, 컴퓨터 등의 이종사업자 간의 결합상품 등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자가 한 명의 이용자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 만약 대표사업자가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각각의 사업자가 월별로 합계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에게 발행한다면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세체계 간소화방안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세제를 말씀드려야겠다. 기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 외에도 농특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의 목적세를 부담하게 된다. 건물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사업소세 등 동일한 세원에 네 개의 목적세가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세목과 관련된 목적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이러한 폐지가 정서상 어렵다면 본세에 통합하여 일원화한다면 조세체계가 좀 더 간소화되고, 납세협력부담도 좀 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현행 제도에서는 교육세와 관련해서 금융 및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서 교육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바람직한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세는 일반적으로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에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고 있으나, 금융 및 보험업자에 대해서만 수익금액에 0.5% 부과되고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형평성문제 때문에 어렵다면, 다른 형태

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분기별로 즉, 연 4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업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다.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 개념 정리 필요

박명호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본 토론회의 주제인 납세협력비용의 감축 및 조세체계 간소화방안은 지난 7월에 발표된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서 성장잠재력 확충방안의 실천과제로 대표명되는 등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납세협력비용 감축이 신정부에서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민간부문의 한정된 자원을 납세협력 같이 행정적인 활동에 투입하기보다는 생산적인 활동에 투입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의 경제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 결과가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여, 이를 위한 세제나 세정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먼저, 첫 번째 논문과 관련하여, 먼저 개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다. 납세협력비용과 징세협력비용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계에서 사용되는 납세협력비용의 개념은 조세제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민간들이 부담하는 전체 비용 중에서 직접적인 세금과 조세제도의 비중립성 즉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인한 초과부담을 제외하고 남은 모든 비용을 말한다. 발표자께서 지적한 것처럼 세금만 뺀 비용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초과부담 즉, Excess Burden도 제거한 다음의 비용을 납세협

력비용이라고 한다.

징세비용은 정부쪽의 조세운용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국세청의 예산만을 징세비용을 간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위는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럽이나 OECD의 많은 국가들이 최근 납세협력비용 및 민간의 행정비용부담을 측정하는 방법론으로 성과지표방식에 표준비용모형을 활용하고 있다고 발표자는 말씀하셨는데, 표준비용모형 자체는 성과지표방식이 아니고 그 결과를 성과지표방식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란다.

또한, 세무 관련 업무단위를 구분하였는데, 발표내용을 축약하다보니 언급한 단위업무가 세금과 관련된 모든 업무단위를 열거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요” 업무단위라는 것을 언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림 1]에서 보면 납세협력비용이 징세비용이나 납세순응도 제고방안과 서로 상충되는 관계로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납세순응도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할 수 있고,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동시에 감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에서 전자신고를 도입한 결과 납세협력비용이 줄어들었다고 하셨고, 전자신고로 인해 징세비용도 줄었다고 한다면,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이 동시에 낮아질 수 있다는 것도 언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병렬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세제와 관련된 방안들과 세정과 관련된 방안들을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실시 가능한 방안들과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방안들로 분류해 주는 것이 정책입안자들이나 독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납세협력비용의 감축

기본방향에서 종합적인 세계개편의 하나로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제시한 방안들에 이러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조세제도의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각종 비과세 및 감면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해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에서 납세비용의 조사 및 분석의 정례화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고, 특히 SCM을 이용해서 해보자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한다. 다만, 이 모델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 영국의 경우, 영국의 국세청에서 2005년도 및 2006년도에 전반적인 세목에 대해서 SCM을 사용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였다. 이 용역은 영국 KPMG에서 수행하였는데, 조세전문가 5~60명이 참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3~4개월 단위로 5~6명이 참여한다고 하면 10억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인원이 10배이니까 이를 단순하게 계산한다면 SCM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이 100억원 정도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고 초기 투입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언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고납부횟수 축소와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경우처럼,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허용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자신고 및 전자세정 대상의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하는데, 발표자께서는 신고제도로 운영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전자신고가 가능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가치평가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지우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원의 김형준 박사와 제가 지난해에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전자신고를 하더라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많아서 다수의 납세자가 서면신고도 동시에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자께서 제안한 것처럼, 추가 제출서류를 축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된다. 또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만을 항상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사전작성안내제도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경제정책에 있어서 Business Friendly로 나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도 User Friendly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자신고와 관련한 사전작성안내제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 미흡하다.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 계정에 접근하려면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신분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자기 계좌를 접근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자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제 생각에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할 필요없이 바로 사업자등록번호 등 자기 계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필요한 중복입력을 방지해야 User Friendly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발표문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목적세를 정비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목적세가 운영상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조세제도가 복잡해지는 결과를 낳고, 더불어 납세협력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발표자께서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본문의 <표 1>의 목적세의 장·단점을 논할 때, 단점항목에 세제가 복잡해져 납세협력비용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박정수교수께서 세계의 복잡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미국의 경우, Slemrod교수 등에 의하면 조세체계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용하는 것이 조세운영비용이다.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합한 것이 조세운영

비용이므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규모에 정확한 추계가 이뤄져야지 조세제도의 복잡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융 및 보험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대해서 0.5%의 교육세가 붙고 있는데, 이것이 부가가치세를 대신한다고 결코 볼 수 없다. 수입금액의 0.5%라는 것은 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5%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 이는 불가능하다.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조세체계 간소화에서 목적세뿐만 아니라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내용도 다루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목적세 개편, 특별회계와 연계하여 검토해야

김상겸/단국대 교수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잘 정리해주셨다. 덕분에 공부하는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목적세제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목적세 개편에 대한 논의는 목적세를 보통세 화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는 목적세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연히 말씀하시는데,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목적세가 일방적으로 야단맞아야 할 세금은 아니다. 실제로 도입목적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면 굳이 목적세 형태, 다시 말하면, 특별회계로 운영되거나 일반회계로 운영되거나 별로 큰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목적세가 연결된 특별회계가 사회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재정 사업에 운영된다면 일반회계와 상관없이 효율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이론적인 것으로서, 현실적으

로 목적세는 여러 가지 비용을 낳고 있다. 예산권 침해, 재정의 칸막이운용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한번 목적세를 만들어놓게 되면, 목적세가 필요하지 않아도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게 되는 위험이 있고, 별도의 특별회계를 갖고 있는 부처에서도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이 잠재적인 문제라 할 것이다.

또한, 목적세와 연결된 특별회계 자체 내에서도 지출상의 사전적 배분비율이 정해져 있는 등 경직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중의 경직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보통 목적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목적세의 정비가 잘 되지 않은 이유는 표면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목적세는 특별회계와 연결되고, 이 특별회계를 갖고 있는 부처의 이해관계와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목적세 개편을 논의할 때는 연관된 부처의 특별회계와 연계하고 검토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그리고, 경제학의 논의범위를 넘어서는 논의라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갈등조정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론에서 말씀드리면, 교육세는 특정 목적과 별반 상관없이 많이 과세되고 있으므로 조세이론 측면에서 조세의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는 반면, 세제의 복잡성은 증대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교육세가 여기저기 부가되는 이유는 세수와 교육의 특정지출을 위한 재원조달 측면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한다. 발표자가 제안한 교육세의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개혁의 효과 측면에서 보자면 전면적인 개편이 바람직하다. 다만, 일시에 개편을 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이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전면적 개편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여지가 별로 없다. 반면, 점진적인 개편은 그 반대이다. 교육세를 개편한다고 하면, 연관된 특별회계



때문에 진척이 잘 안될 수 있다. 어느 게 좋은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될 일이라 생각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일몰연장을 두 번이나 했고, 추가적으로 세목에 에너지·환경이란 이름이 추가됨으로써, 일몰연장이 추가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한다. 첫 번째 존치할 때, 교통세와 관련하여 작업을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당시 재경부에서 선제적으로 2003년 일몰시점을 앞당겨 조기에 보통세화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교통시설의 공급 부족, 교통분야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목적으로 연장존치가 되었다. 2007년부터 이 세목에 환경·에너지란 제목이 붙으니 또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발표자가 제시한 개선방안 중에서 발표자가 적시한 부분에 동의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교통회계에서 도로, 철도, 항만, 도시철도 등 배분비율이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칸막이효과가 이중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약조건이 늘어날수록 최적화 문제의 해는 더욱 열등해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 설치 이전에 특별소비세였는데, 보통세화한다면 에너지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로 환원시켜, 휘발유·경유 외의 개별소비세들과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에너지소비세가 향후 세제운용상에 있어서 다양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세금이 될 수 있으므로 세원하고 세제를 각별히 보호하고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에너지 소비가 발생시키는 다양한 외부성 즉, 대기오염, 소음, 도로파손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세제에는 명시적인 환경세 또는 탄소세가 없다.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도입하면서 환경세가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환경세적 기능은 아직 취약한 상태로 보여지므로, 환경세 또는 탄소세로서 에너지소비세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세수 측면이라기보다는 정책

세계적인 측면에서, 즉 우리나라의 상황과 세계적인 국제환경 공조로서 탄소세가 긴요하게 쓰일 확률이 높다. 에너지 소비의 합리화, 다시 말하면 비용효과적인 소비유도 및 수급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에너지소비세의 역할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

교통세를 일반회계로 환원시키게 되면, 지방교부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자가 지적하셨는데, 이는 사실이다. 하지만 의지가 있다면 교부금 비율을 조절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부분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세제의 복잡성 문제를 잘 대변해주는 세목들이라 생각한다.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인데, 여기에 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추가된다. 본세는 하나인데, 부가세들이 세 개나 되니, 결국 세금을 납부할 때는 총 네 가지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는 자칫 납세자가 공연한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심화되면 납세의식의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세 통합 등과 같은 방식으로 세목 수를 줄여, 세제단순화 및 납세의식 제고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납세협력비용 감축 노력 지속 추진

김 광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세청에서는 납세협력비용 감축문제를 세정혁신의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감사드린다.

토론에서 제안된 여러 대안은 국세청 업무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반영하겠다. 단, 유경문 납세자 연합회

장게서 제안하신 질의에 대한 공개는 이미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질의 회신 등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통하여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감세와 동일한 경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고객 우선의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납세협력비용 측정모델을 한국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 중에 있는데, 이 모델이 완성되면 납세협력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다음과 같이 납세협력비용 감축 노력을 기울여 왔다.

첫째, 과세자료의 축소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 왔다. 그 예로 대기업의 경우 주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과세자료를 내려 보내지 않고 세무조사 시 일괄 출력하여 처리하고 있다. 또한 실익이 낮은 과세자료는 과감하게 출력을 폐지하고, 출력자료 자체를 축소하며, 자료 파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납세자 제출서류 축소를 위하여 활용도가 낮은 제출서류를 발굴, 재정부에 건의하여 제출서류 자체를 축소하기 위하여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2010년 도입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전자장부, 사전작성안내제도 등의 도입 기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과세불량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과세기준 및 과세쟁점 자문제도'를 시행하여, 과세단계에서 발생하는 사실판단 및 법령해석상의 다툼에 대하여 사전 자문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후 행정심 인용사건을 분석하여 '과세품질혁신위원회'를 열어 부실과세 여부를 심사하는 등, 2년 이내 과세불량률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과세 전 과정을 분석하여 억울한 과세로 인하여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있다. 올해 7월 시작된 'VOC(고객의 소리)제도'를 통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제도 관행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문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납세자, 경제단체 등 다양한 채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 동시에 절감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을 추진하겠다.

유경문 교수의 의견과 같이 납세협력비용의 감축 문제는 세정이나 세제당국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와 동시에 납세자 인식,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시장질서 확립 등 사회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기획재정부에 건의도 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계속 노력하겠다. 또한 오늘의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세제 간소화

윤영선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오늘 훌륭한 연구에 감사드리며, 토론에서 말씀해주신 좋은 의견은 8월 하순경 발표 예정인 정부 세제 개편 시 최대한 반영하겠다.

납세협력비용과 조세체계 간소화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다. 금년 세제개편은 신정부 출범 후 첫 해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신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시기이다. 신정부의 정책 모토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다. 이를 위하여 세율 인하, 규제 완화,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 중 비용 최소화는 세율 완화보다 더 효

과적이며,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여 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서울인하 정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인하와 더불어 각종 비용을 인하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지속적 실행이 요구된다.

납세협력비용 증대요인은 다음의 몇 가지 특성에서 기인한다.

첫째, 복잡한 목적세이다.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현재 목적세는 한 개의 세목에 여러 개가 부가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실무자의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실정이다. 둘째, 과다한 비과세 감면제도이다. 세제상 각종 특례조항이 많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행정적인 측면에서 행정단계에서 필요한 정보 이외에 과다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받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납세자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하여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다.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먼저 조세체계를 단순화하여야 한다. 목적세의 경우 세제상 논리는 단순하다. 조세란 민간과 공공부문의 재원배분이며, 목적세는 관련 분야의 예산을 쉽게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목적세를 시행한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며, 때문에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미와 목적 등 원론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세제와 예산관련 법령 등 국세의 개선이 선행된 후에 고려할 것이다.

'Doing Business'에서 2008년 우리나라의 납세경쟁력이 세계 106위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동일한 조사에 대하여 2007년 우리나라의 납세경쟁력은 45위 수준이었다. 이처럼 1년 사이 우리나라의 순위가 급락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는 표준기업을 대상으로 3개 항목에 대하여 측정이 이루어진

다. 표준기업이란 종업원 300명 이상,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법인이며, 측정 항목은 세금신고 횟수, 세금신고시 시간과 비용이다. 이때 신고 대상 세금에는 국세, 지방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세(우리나라의 경우 4대 보험)를 모두 포괄한다. 납세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에는 첫째, 대부분 전산화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일부 수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서베이 답변하는 경우 담당자 교체 등으로 주관적 답변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할 것이다.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으로 신고납부방식의 축소를 제안하고 있다. 교통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매월 납부하는 방식에서 분기별 납부방식으로 바뀌는 경우 세수의 배분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이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현재 ERP 대상만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하여 추진한다면, 지방에서는 경리 분야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이 마케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효율을 제고할 것이다. 앞으로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국세청 조직 축소, 납세자 인건비 절감을 통하여 전반적인 사회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갈수록 조세정책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 조세는 재정수입의 확보, 소득재분배 등 일부 목적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EITC 등 복지정책이 추가되었고, 그에 따라 각종 과세자료 파악을 위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고유가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 환경정책 수행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하는 등, 조세정책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납세협력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향후 납세협력 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늘의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세제

개편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세금고지서 하나에는 하나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목적세와 관련하여 세출측 이해당사자들의 예산확보 편리성 때문에 납세자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해 주시고, 여론조성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KIPF**

주요국의 조세동향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의 주요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동향 0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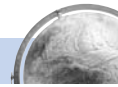
요약

- 대만은 산업고도화 촉진조례의 만료를 맞아 조세 개혁안 발표
 - 주요 내용은 법인세율 인하(25%→20%), 저소득층에 대한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제도 도입, 해운산업 톤세제도 도입 검토 등
- 뉴질랜드는 지난 5월 22일 발표한 2008년 예산안에서 뉴질랜드 기업에 대해 납세협력비용을 낮추는 방안과 NZD 106억에 달하는 소득세 감면안 제시
 - 2011년까지 4년에 걸친 개인소득세 부담인하(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Families Tax Credit 금액 인상, 기업의 각종 신고 의무 범위 완화 등
- 독일 정부는 지난 6월 12일 집권 연립당이 자동차세를 엔진크기가 아닌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과세하는 안에 동의했음을 발표
 - 동 법안은 친환경 자동차 구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부터 발효될 예정

1. 대만 세계개혁안 발표

- 대만의 부총리 Paul Chiu가 6월 15일 2009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산업고도화 촉진조례¹⁾의 만료와 이에 따른 세계개혁안을 발표
 - 주요 개혁 내용들은 Ma Ying-jeou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조세 분야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임
 - Ma 대통령이 내세웠던 주요 공약에는 조세 공평성을 제고함으로써 빈곤층을 돕고, 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등이 있음
 - 선거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재계·시민단체·학계에서 뽑힌 20명 이상의 개인들로 세계개혁위원회가 구성됐음
 - Paul Chiu가 의장직을 맡고 있고, 2008년 6월말부터 시작하여 매월 회의를 가질 예정
 - 세계개혁위원회가 가진 세 가지 주요 세계개혁 목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경제 발전을 위해 좀 더 많은 세제상의 혜택 제공, 조세 부담의 공평성 제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조세 시스템의 개발
- 금번 세계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우리나라의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199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09년 12월 31일에 기한 만료. 2006년까지 이 조례에 근거하여 NT \$ 1,194조의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나, 이는 전체 세금 징수 금액의 18.5%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법
 - 법인세율 인하: 현행 25%에서 20%까지 인하²⁾
 - 10%의 유보이익세금(retained earning tax) 폐지
- 소득세법
 -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 인상: NT \$78,000 → NT \$100,000
 -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제 인상: NT \$77,000 → NT \$100,000
 - 교육공제 인상: 1가구당 NT \$25,000 → 1인당 NT \$25,000
 - 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 system) 도입
 - ▲ 연간 소득 NT \$360,000 이하의 4인 가구에 NT \$46,800의 보조금 지급

■ 이와 더불어 세계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톤세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음

- 대만 재정부가 조만간 이에 관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세계개혁위원회에 제출 예정임
- 이는 대만의 해운회사가 대만 국내에 선박을 등록하는 것을 장려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톤세제도로의 전환이 이뤄지면 법인세가 면제되는 대신 선적 톤수에 따라 과세가 이뤄지는데, 국내 해운 회사들의 전반적인 세부담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 기대

2. 뉴질랜드 예산안과 조세정책 변화

- 뉴질랜드 재무장관 Michael Cullen은 지난 5월 22일 뉴질랜드 기업에 대해 납세협력비용을 낮추는 방안과 NZD 106억에 달하는 소득세 감면안을 포함한 예산안을 발표

- 뉴질랜드 국내의 물가상승 및 국제적인 신용위기 등의 국내·외적 요인으로 2008년 경제는 상당히 둔화된 상태이므로 2009년 3월까지 경제성장률은 1.5%로 바닥을 찍은 후 2010년에 2.3%, 2011년에 3.2%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

현 재		2008. 10. 1 ~		2010. 4. 1. ~		2011. 4. 1. ~	
과세구간 (NZD)	세율 (%)	과세구간 (NZD)	세율 (%)	과세구간 (NZD)	세율 (%)	과세구간 (NZD)	세율 (%)
~9,500	15	~14,000	12.5	~17,500	12.5	~20,000	12.5
9,501~38,000	21	14,001~40,000	21	17,5001~40,000	21	20,001~42,500	21
38,001~60,000	33	40,001~70,000	33	40,001~75,000	33	42,501~80,000	33
60,001~	39	70,001~	39	75,001~	39	80,001~	39

■ 개인소득세

- 4년에 걸친 소득세 부담 인하방안은 2008.10.1.에 시작해서 2011. 4. 1.에 완료
- 세율은 최저세율만 인하하고 전반적으로 과표구간을 확장

■ Working Families Tax Credit

- 근로소득이 있고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2008. 10. 1.부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공제액을 인상하고 소득 기준금액을 NZD 35,000에서 NZD 36,827로 인상

자녀 기준	현행 공제금액	2008.10.1.~
16세 미만의 첫 번째 자녀	NZD 82.00	NZD 86.29
16세 이상의 첫 번째 자녀	95.00	99.96
13세 미만의 두 번째 이후 자녀	57.00	59.98
13세~15세의 두 번째 이후 자녀	65.00	68.40
16세 이상의 두 번째 이후 자녀	85.00	89.44

주: 공제금액은 주당금액임.

2) 2008년 1월 대만 행정원이 입법부에 제출한 2010년부터 시작하는 법인세율 인하방안(25% → 17.5%)이 그 간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것으로 보임

■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납세협력 비용의 부담이 큰 중소기업이 주로 적용대상이며 신고기준 금액을 낮추어 신고서 제출의무를 줄이는 방법 추진
- 연간 PAYE(Pay As You Earn) 공제액이 NZD 100,000 미만인 경우 소기업(small employer)으로 분류하여 월 1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준 금액을 NZD 250,000으로 인상함으로써 월 2회 신고 대신 월 1회 신고하는 기업의 범위 확대
- FBT(Fringe Benefit Tax)의 연간 세금신고서 제출 기준금액인 전년도 총공제 및 연금 원천징수액을 NZD 100,000에서 NZD 250,000로 인상함으로써 분기별 신고 대신 연간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범위 확대
- GST 등록 기준 금액을 매출 NZD 40,000에서 NZD 50,000으로 인상
- GST의 반기 신고서 제출 기준 금액인 과세대상 공급가액을 NZD 250,000에서 NZD 500,000으로 인상함으로써 2개월별 신고 대신 반기 신고서 제출하는 기업의 범위 확대

3. 독일 친환경 자동차세 도입 추진

- 독일정부는 지난 6월 12일 집권 연립당(ruling coalition parties)이 자동차세를 엔진 크기가 아닌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과세하는 안에 동의했음을 발표
 - 동 법안은 친환경 자동차 구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부터 발효될 예정
- 또한 집권 연립당은 친환경 자동차세 도입 초기 다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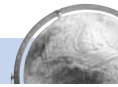
내용에 동의

- 기존 차량의 경우 새로운 조세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은 신규 차량에 대해 조세 혜택 제공
- 그리고 현재 16개 주의 자동차세 징수 업무를 연방정부로 이관할 계획
 - 연방정부는 해당 주에 관련 세수손실을 보상할 예정

동향 08-15

요약

- 이탈리아는 부분적 법인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 시행
 - Law Decree of 25 June 2008 No. 112는 정유회사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율(27.5%)에 5.5%를 추가하여 법인세(33%)를 징수하는 Robin Hood Tax 도입,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 제한 등의 내용 포함
- 포르투갈은 부가가치세율 인하, 프랑스는 차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보조금/벌과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
 - 포르투갈은 재정호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율 인하 (21%→20%)
 - 프랑스는 2008년 1월 1일부터 차량 구입시 CO₂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벌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



- 미국 상원(Senate)은 고유가 파동에 대처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활용 장려 및 세제지원이 포함된 법안(H.R. 3221)를 수정중
 - 정부부처의 친환경 중소형 차량 구입 의무화, 대중교통 서비스 활용 증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전기 하이브리드(plug-in hybrid vehicles)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포함

1. 이탈리아 2008 Summer Decree

- 이탈리아는 지난 6월 25일 Law Decree of 25 June 2008 No. 112를 발행하였으며 이는 동 일자부터 시행
 - 법인세 관련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음

- Robin Hood Tax 도입
 - 과세기간 수입이 EUR 2,500만을 초과하고 다음의 산업에 종사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율(27.5%)에 5.5%의 세율을 추가하여 법인세(33%) 징수
 - 탄화수소의 연구 및 개발
 - 석유 정제, 정유, 휘발유, 가스, 윤활유, 액화가스 및 천연가스의 생산 및 판매
 - 전기의 생산 및 판매

- 이자비용 공제(Deductible interest expenses) 축소
 -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은행 및 보험회사의 수익이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 과세기반 확대 차원에서 발생이자 96%만을 공제 허용
 - 단, 2008년에는 97%를 적용

- 매출채권 대손상각(Deductible write-down of

- receivables)
 - 비보증채권의 대손충당금은 채권가액의 0.3%(이전 0.4%) 만큼을 손금으로 인정
 - 손금 부인된 금액은 다음 18년(이전 9년) 동안 균등액을 공제
 - 이는 은행, 보험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에 대해 적용

- 반조세회피 규정(Anti-avoidance rule)
 -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 법인의 경우 반대 증거가 없으면 이탈리아의 조세 목적상 거주자인 것으로 간주
 - 이탈리아 부동산 투자 펀드를 50%를 초과하여 보유
 - 이탈리아 거주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

2. 포르투갈 부가가치세 인하 및 프랑스 탄소세 도입

- 포르투갈은 6월 20일 부가가치세율을 21%에서 20%로 인하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킴
 - 포르투갈에서는 공공지출 적자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을 조정해 왔음
 - 2005년 공공지출 적자가 GDP의 6.8%에 달하자 그해 부가가치세율을 인상(19%→21%)
 - 1986년 이후 포르투갈의 부가가치세율은 다음과 같음

기 간	세 율(%)
1986. 1. 1 ~ 1988. 1. 30	16
1988. 1. 31 ~ 1992. 3. 23	17
1992. 3. 24 ~ 1994. 12. 31	16
1995. 1. 1 ~ 2002. 6. 4	17
2002. 6. 5 ~ 2005. 6. 30	19
2005. 7. 1 ~ 2008. 6. 30	21
2008. 7. 1 ~	20

- 한편, 2006년 GDP의 3.9%에서 2007년 2.6%로 공공지출 적자 규모가 기대 이상으로 감소하자 2008년 부가가치세율을 인하(21%→20%)

- 인화된 세율은 2008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 적용

■ 프랑스에서는 CO₂배출량 감축을 위해 2008년 1월 1일부터 차량 구입시 CO₂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벌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

- CO₂배출량이 130g/km 미만인 경우 EUR 200에서 EUR 5,000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
- 반면, 161g/km 이상인 경우 EUR 200에서 EUR 2,600에 이르는 벌과금을 부과

■ 재정수지 측면에서는 보조금만큼 벌과금이 징수되지 않아 EUR 2억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

- 당초 CO₂배출량이 높은 차량을 구입한 자로부터 징수한 벌과금을 CO₂배출량이 낮은 차량을 구입한 자들을 위한 보조금 재원으로 사용하려던 계획과는 달리,

- 보조금 지급 정책의 성공으로 제도 도입 후 5개월의 기간 동안 CO₂배출량이 낮은 차량의 매출은 15% 증가한 반면, CO₂배출량이 높은 차량의 매출은 27% 감소

- 최종적인 정책 목표는 CO₂배출을 줄이는 것이기는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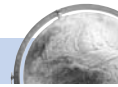
- 보조금 지급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치스런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를 폐지하고 벌과금 제도만을 유지하자는 주장도 있음

3. 미국 고유가 파동 극복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활용 장려

■ 2008년 4월 10일 상원(Senate)에서 통과된 H.R. 3221(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of 2008)법안에 830억달러에 달하는 에너지세액공제를 추가하려는 John Ensign 상원의원(공화당)의 주장으로 2008년 7월 위원회 구성을 통해 수정 여부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에 추가된 에너지세제의 법안은 친환경 에너지 활용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³⁾

- 바이오 정제산업(Bio-refineries)과 바이오 연료생산 시설 투자와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10억달러 한도 내에서 대출보증(loan guarantees)을 승인
-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산하의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ARPA-E)를 설립하여 에너지 수입과 지구온난화 가스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에너지기술개발 정제산업(Bio-refineries)과 바이오 연료생산 시설투자과 개발을 장려
- 정부부처는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지정한 지구온난화 가스 저배출용 중소형 차량을 구입
- 대중교통 서비스의 확대와 요금인하를 위해 미래가 용펀드(Future appropriate fund)에서 도시지역은 연간 7억 5천만달러, 비도시지역은 1억 5천만달러를 지원하고, 하이브리드 철도차량의 구입 보조를 위해 주 및 지방정부에 연간 1천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
-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plug-in hybrid vehicles)에 대한 4000달러의 세액공제와 배터리 용량에 따라 2000달러를 한도로 추가적인 세액공제 허용

³⁾ Chuck O'Toole, "Energy Debate Holds up Housing Bill in Senate", *Tax Notes*, June 16, 2008.



- 단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첫해에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대수가 60,000대 이상이면 phase-out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감소

- 셀룰로오스 알코올 연료(cellulosic alcohol fuel)의 생산업자에 대하여 셀룰로오스 연료 갤런당 50센트의 세액공제를 허용

-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주당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Barack Obama)가 준비한 '석유회사에 대한 초과이윤세(windfall profit tax on oil company)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있던 S.3044(Consumer-First Energy Act of 2008) 법안은 2008년 6월 23일 미국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Senate)에서 통과되지 않음
- 대신 공화당은 2007년 소개되었던 H.R. 3089(No more Excuses Energy Act of 2007)의 입법화를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동 법안에는 대체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와 국내정유사의 자금지원을 위한 면세채권 발행 지원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겨 있음

〈표 1〉 S.3044와 H.R. 3089의 법안 비교

구분	S.3044 (Consumer-First Energy Act of 2008)	H.R. 3089 (No more Excuses Energy Act of 2007)
제정 취지	에너지 가격 안정과 유가의 고가 가격정책 유지에 대한 석유회사의 책임 부과	소비와 유통과 연관된 정책 신뢰성 제고와 규제철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석유회사⁴⁾의 국내 석유, 가스, 관련 생산품의 판매와 관련된 비용공제 배제 • 종합석유회사의 초과이윤⁵⁾에 대하여 25% 세금을 부과 • 법시행으로 얻은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에너지독립안정신탁펀드(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Trust Fund) 조성하여 중서민의 보건의료(health care)에 사용 • 국내정유회사(Refineries)의 재정지원을 위한 면세채권 발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정유회사(Refineries)의 재정지원을 위한 면세채권 발행 지원 • 풍력생산(wind production)에 대한 세액공제를 2018년까지 확대 • 원자력(nuclear energy)시설 세액공제: 적격투자금액의 15% • 석유 또는 가스시설의 이산화탄소 배출절감에 대한 세액공제: 1천 평방피트당 0.75달러

동향 08-16

요약

- 포르투갈 내각은 지난 7월 10일 정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석유재고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 25%의 특별세를 부과하는 안을 의회에 제출
- 스위스 연방평의회(Federal Council)는 지난 6월 26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
 - 제 1안은 세율 및 감면 관련 내용을 제외한 부가가치세제의 전면적인 개편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반면, 제 2안은 제 1안의 내용에 부가가치세율 단일

4) 종합석유회사(integrated oil company)는 매일 500,000 배럴의 원유(crude oil)를 생산하는 법인을 의미

5) 초과이윤(windfall profit)이란 과세기간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조정소득금액(adjusted taxable income)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

화(7.6%, 3.6%, 2.4%→6.1%) 및 감면대상 축소(25개→20개)가 추가됨

- 미국의 고연비(Fuel-efficient)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의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기
 - 현행 세액공제 금액은 제조사별 판매량에 따른 Phase-out 규정이 적용되어 조세공평성과 조세중립성이 침해되는 문제점
 - 세제지원 대상을 하이브리드 기술에만 국한하지 않고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모든 기술에 확장, 제조사에 부여된 판매량 규정을 폐지, 그리고 연료 절감에 대한 측정기준을 정립할 것을 주장

페이지에 달함

- 부가가치세 전문가조차도 거래대상 및 거래단위의 구분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기 때문
- 스위스 연방행정법원 및 대법원은 부가가치세제 관련 수많은 행정해석을 제공한 바 있으며, 대부분 과세관청의 엄격한 해석을 지지하는 쪽으로 결정되고 있는 실정
- 개정안은 두 가지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 1안 : 세율 및 감면을 제외한 부가가치세제 전면 개편
 - 부가가치세 징수 기업에게 특정 사안에 대해 현 행정 해석 외에 부가가치세 과세당국으로부터 구속력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법적 확실성 제공
 - 일부 징수 관련 업무 및 책임을 과세관청에게 옮김으로써 기업의 과중한 형식절차 축소 및 고객중심의 행정 제공
 - 감세 적용시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관련 자료 제출을 허용
 - 기업의 매입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완화
 - 과세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창업법인 및 면세점에 도달하지 못한 법인의 경영여건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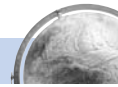
1. 포르투갈 Robin Hood Tax

- 내각(cabinet)은 지난 7월 10일 포르투갈의 정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석유 재고에 대해 25%의 특별세 도입안을 승인하고 의회에 제출
 - 정유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산에 대해 부과
 - 보유하고 있는 석유 재고의 가치 상승분에 기초하여 부과
 - 석유 재고의 가치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계산
 - 특별세수는 올해 EUR 1억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복지프로그램에 사용할 계획

2. 스위스 VAT 개정안

- 스위스 연방평의회(Federal Council)는 지난 6월 26일 두 가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
 - 그 배경은 현 부가가치세제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
 - 연방과세당국이 발간한 안내책자의 양만 해도 수백

- 제 2안 : 제 1안의 개정 내용에 세율 단일화 및 감면대상 축소를 추가
 - 6.1%의 부가가치세 단일세율 도입
 - 현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은 7.6%이며, 특정 품목에 대해 2.4%, 3.6%의 저세율 적용



- 25개의 감면 대상 중 20개를 폐지
- 금융 및 보험 서비스, 복권 관련 매출, 부동산의 판매 및 리스, 농업, 동일한 공동체 내에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서비스 등 5개 분야에 대해서만 감면 유지
- 조세감면 축소로 납세자의 수가 32만명에서 약 35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
- 제1안의 개정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 의회가 첫 번째 단계에서 채택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제 2안의 경우 단일 세율 도입 및 감면대상 축소로 부가가치세제가 상당히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저세율 및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기업의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

3. 미국 고연비 자동차(fuel-efficient cars)에 대한 공제제도 개선논의

- 2008년 7월 Tax Notes의 Economic Analysis 에서는 미국의 현행 고연비 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세 가지로 제안
- 고유가의 경제상황에서 고연비 자동차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조세공평성에 많은 문제점
 - 내년 소득공제 신고 시 미국의 하이브리드 최다 판매 차량인 도요타(Toyota) 프리우스(Prius)는 1갤런당 46마일의 최고의 연비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가 없고, 두 번째 판매 인기차량인 혼다(Honda) 씨빅(Civic)은 1갤런당 43마일의 연비에 연간 525 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예정이지만
 - 미국의 포드(Ford) 이스케이프(Escape SUV)는 프리우스(Prius)나 씨빅(Civic)보다 효율이 낮은 1

갤런당 23마일의 연비를 기록하면서도 세액공제는 연간 2,200달러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

-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는 자동차 제조업체별로 60,000대의 판매까지 100%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60,000대 초과부터는 Phase-out 규정이 적용되어 세액공제 금액은 감소
 - 그 결과 소비자의 폭발적 호응으로 60,000대의 판매 기준을 초과한 도요타(Toyota)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반면,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지엠(GM), 포드(Ford)는 세액공제 가능
 - 왜곡 방지를 위해 제조업체별로 부여된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고효율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 필요
- 고효율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이 특정 기술지원 분야(하이브리드 고연비 기술)에만 국한되어 있어 조세중립성이 훼손되므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니더라도 연료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차량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필요
- 고효율 자동차에 대한 판단기준을 상대적 측정기준이 아닌 절대적 측정기준의 도입 필요
 - 2005년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가 도입되었을 당시 2002년 포드의 하이브리드 차량과 일반 차량(Non-hybrid cars)의 연비를 비교한 상대적인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하이브리드 차량에만 부여하였지만,
 - ‘갤런 당 연료절감액 기준’을 제정하여 절감액에 비례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조세정책 ·

美, 세금환급 효과 ‘반짝’..6월 물가↑, 실질소비 ↓

- 명목지출 0.6% ↑, 실질지출은 0.2% ↓
- PCE 0.8% ↑ ‘27년 최대폭’..인플레이 압력 ‘고조’

미국의 6월 소비물가가 27년래 최대폭으로 올랐다. 치솟는 물가가 세금환급 효과를 앗아가면서 실질 소비지출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미국 상무부는 4일(현지 시간), 6월 개인 소비지출이 0.6%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치솟는 물가로 인해 실질 소비지출은 0.2% 줄었다. 이는 지난 2월 이래 첫 감소세다.

개인소득 증가세도 5월 1.8%에서 0.1%로 둔화됐다. 5월 5.2% 늘었던 실질 가처분소득도 2.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소비지출(PEC) 물가지수 상승률은 0.8%로 지난 1981년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4.1% 올랐다. 이 역시 17년래 최대 상승폭이다.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은 0.3%로 월가 전망치와 동일했다.

저축률은 5월 4.9%에 이어 6월에서 2.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1,100억달러 규모의

세금환급을 시행했으나 치솟는 물가로 인해 반짝 효과를 내는 데 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드레스너 클라인위트의 케빈 로간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세금환급이 소비를 지탱하고 있지만 4분기에는 그 효과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일경제 2008-08-04]

中, 섬유 수출세 환급률 인상

중국이 1일(현지 시간)부터 섬유제품 수출 증치세(부가세) 환급률을 종전의 11%에서 13%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경영 위기에 처한 중국 내 방직 수출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은 자국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수출 억제정책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가 경제정책을 ‘과열 방지’에서 ‘성장 유지’ 쪽으로 전환하면서 수출이 급감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특단

의 대책이 필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 등 관련부처들은 31일 '섬유제품 수출 등 부분 상품에 대한 수출 증치세 조정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 "섬유·의류 및 일부 축제품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13%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잣나무 종자, 일부 농약제품, 일부 아르신(arsine) 제품, 로진(rosin)유, 백은, 정제 아연, 일부 도료제품, 일부 전지제품 등의 수출 증치세 환급은 취소된다. 새 정책은 '수출화물통관단'(수출증치세 환급 전용)과 해관의 수출일자 표기를 기준으로 시행된다.

이번 증치세 환급률 조정은 중국 정부가 최근 창장(長江) 삼각주와 광둥(廣東)지역의 현지 섬유기업을 현장 시찰한 뒤 내놓은 것이다. 노동집약적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섬유업체들은 최근 ▲원부자재 가격의 급등 ▲위안화 절상 ▲인건비 상승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생산활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실제로 중국해관의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섬유제품 수출이 가장 많은 광둥성의 경우 방직·의류제품 수출액은 115억 1,000만위안(약 1조 7,265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7% 하락한 수치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그동안 각종 비용 상승으로 경영악화를 겪어야 했던 중국 수출기업들에 숨통을 열어주는 한편, 증치세 환급률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섬유업계에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OTRA 상하이(上海) 무역관 측은 "중국이 지난 2006년부터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인하해 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인상했다"면서 "이번 환급 조정정책은 '보호와 억제'라는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시아경제 2008-08-01]

美, 경기 악화.. 주정부 세수 부족 '몸살'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각 주가 세수 부족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주입법부전국회의(NCSL)의 조사 결과 미국의 주정부가 이달부터 시작된 회계연도에 400억달러의 세수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 이 같이 보도했다.

이 같은 세수 부족분은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주택시장 침체는 물론 소비 위축, 실업 증가 등에 따라 판매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을 거둬들이는 것이 타격을 받고 있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하는 주정부들은 아직까지는 세율 인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만 교육이나 건강보험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고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세수 부족을 보전하려고 하고 있다.

신문은 주 산하의 각급 지자체들도 재산세 수입 감소와 주정부 지원의 축소 속에 각종 서비스를 줄이는 등 경제 악화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아시아경제 2008-07-25]

DDA, 선진국-개도국 '농산물 관세' 첩에 대립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가 21일(현지 시간)개막돼 26일까지 엿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브라질, 인도 등 30여개국 통상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현안인 농업과 공산품 부문의 자유화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다만, 지난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된 DDA는



그동안 지지부진한 논의로 존폐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합의에 실패할 경우, 국제 사회의 다자간 무역협상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언론들은 DDA 협상의 진행이 늦어질수록 자유무역 퇴조로 글로벌 경제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협상이 실패하면 WTO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도 문제라며 향후 미국 대통령 선거와 인도 총선 같은 주요국의 정치 변수도 예정돼 있어 다자간 협상을 진행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DDA 협상이 모든 참가국이 협상 결과를 한꺼번에 수용해야 하는 ‘일괄타결 방식(package deal)’이라는 점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협상기간중 최대 쟁점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농업과 공산품, 서비스 부문 등에 대한 자유화 원칙이다.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해 공산품 시장 개방과 관련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고, 개도국은 선진국 진영이 농업 보조금이나 수입 농산물 관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개막에 앞서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가가 공산품 관세를 더 많이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말 나스 인도 무역장관은 “개도국은 공산품 수입 관세를 일부 내릴 수 있다”면서 “하지만 농산물 분야에서 선진국이 양보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와 관련, 브라질 등 남미 회원국들도 인도측 주장에 동조하고 나서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진영 간 합의 도출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정책 ·

중국, 일본 제치고 美 최대 채권국 된다

- 국제금융센터 전망
- 외환보유액 늘면서 미 국채 투자 급증
- 연말께 최대 美 채권국 부상 전망

올해 말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조만간 미국의 최대 채권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차이나 달러가 미 국채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중국의 영향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중국의 미 국채 보유금액은 지난 2005년 3,100억달러에서 작년 4,776억달러로 늘었고, 올해 5월에는 5,065억달러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투자자 가운데 중국 비중은 15.3%에서 19.4%로 증가했다.

반면 현재 일본의 미 국채 보유금액은 2005년 6,700억달러에서 작년 5,812억달러, 올해 5월 5,787억달러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치훈 국금센터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와 같은 수준으로 중국이 미국채 투자금액을 늘릴 경우 12월에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최대 미국 국채 보유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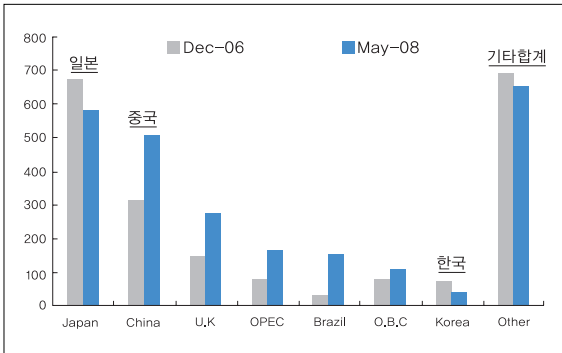
이처럼 중국의 미 국채 투자가 늘어난 것은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국금센터는 분석했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06년 2월 8,536억달러로 세계 1위에 올랐으며 이후로도 급증세를 지속, 올해 6월에는 1조 8,100억달러를 기록했다. 2년 4개월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아시아경제 2008-07-22]

주요국 미 국채 보유금액 변화

(단위: 10억달러)



자료 : 국제금융센터

외환보유액 가운데 미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37.2%에서 올해 4월 28.6%로 8.6%포인트 감소했지만 외환보유액은 그보다 더 큰 폭인 64.7% 증가해 미국채 보유금액은 오히려 26.5% 늘었다.

아울러 대미 협력관계 차원에서도 중국이 미 국채에 투자했을 것으로 국금센터는 추정했다.

작년 중국의 대미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약 19%를 차지한 가운데 자국 산업의 고도화와 국제사회에서의 미국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미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최근 글로벌 스테그플레이션 우려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 것도 이유로 꼽혔다.

국금센터는 중국이 고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외환보유액과 미 국채 투자금액을 늘리면서 향후 국제 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미·중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 미국 주도에서 점차 협력관계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중국이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 등에 대응해 지난해 3~5월까지 연속 미 국채 보유금액을 148억달러 줄이자 미국채 가격은 5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이 중국에게 미국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줄 것

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 1, 2차 미·중경제전략회의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금융개방, 위안화 절상 등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던 분위기였지만 3차회의부터는 상호간의 합의점을 모색하는 분위기로 서서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매일경제 2008-08-06]

美은행, 연쇄 파산.. 공적자금 투입 불가피

-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 주장.. 현재까지 올해 파산 은행 8개

미국에서 향후 수 개월 동안 몇 백개의 은행이 추가로 붕괴될 것이며 이에 따라 최소 1조~2조달러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1일 플로리다주 퍼스트 프라이머리 은행이 파산되는 등 최근 미국에서는 은행 파산 도미노가 벌어지고 있다.

뉴욕대학교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고급 경제지인 배런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침체 2기'에 접어들었으며 최소 18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들이 지금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손실을 상각했을 뿐이라면서 여기에 소비자 신용 손실까지 처리하려면 몇 백개가 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루비니는 금융기관 구제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주주나 채권 투자자, 그리고 경영진까지 구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구제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구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파산된 美은행

은행명	파산일자
퍼스트 프라이어티 बैं크	8. 01
퍼스트 해리티지 बैं크	7. 25
퍼스트 बैं크 오브 네바다	7. 25
인디맥 बैं크	7. 11
퍼스트 인테그리티 बैं크	5. 30
ANB 파이낸셜	5. 09
홈 बैं크	3. 07
더글러스 내셔널 बैं크	1. 25

한편 올해 들어 신용위기로 인해 파산된 미국 은행은 총 여덟 개로 늘었다.

플로리다주의 지역 은행인 퍼스트 프라이어티 은행은 지난 2일(현지 시간)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고 자산을 모두 선트러스트 은행에 넘기라는 명령을 받았다. 퍼스트 프라이어티의 6개 지점은 4일부터 선트러스트 은행 지점으로 영업을 재개한다.

FDIC는 이번 퍼스트 프라이어티의 파산으로 인해 예금을 보전해 주는 데 약 7,200만달러 상당의 기금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퍼스트 프라이어티 은행은 올해 들어 신용위기로 인해 희생된 8번째 은행이 됐다. 이는 지난 2004~2007년간 파산 은행 수 6개보다 많은 것이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향후 1년~1년 6개월 이내에 최대 150개의 지방은행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지방 은행의 파산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뉴욕타임스의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퍼스트 프라이어티가 파산하기 1주일 전에는 미 서부 지역의 소규모 은행인 퍼스트뱅크 오브 네바다와 퍼스트 해리티지 오브 뉴포트 비치가 파산됐다.

빌 클린턴 행정부 때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

씨티그룹 이사회 의장도 3일 CBS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의 불투명한 경제 상황이 상당기간 계속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2008-08-04]

D, 서민지원 경기대책 마련

경기침체와 고유가로 고전중인 중소기업과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의 새 내각이 종합적인 경기대책을 내놓는다.

지난주 내각을 전면 개편한 일본 정부는 요사노 가오루 신임 경제재정상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종합경기대책을 이르면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지신문 등이 3일 보도했다.

경기대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745억엔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농어민들에게 유류비용 90%를 보조하는 긴급 대책을 내놓은 바 있지만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서민층의 생활고통이 가중되면서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한편, 미국 경기침체와 고유가 여파로 일본 상장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대폭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니혼게이지신문이 2분기(4~6월) 상장기업의 경상이익(연결제표 기준)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으로 상장기업의 이익이 감소해 내년 3월 회계연도 결산에서 7년 만에 처음으로 이익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서브프라임 문제로 인한 미국의 경기침체, 엔고 추세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침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매일경제 2008-08-03]

“부시 행정부가 임기 초 역사상 가장 컸던 재정흑자를 임기 말 가장 큰 적자상태로 돌려놓았다”고 꼬집었다. 백악관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 전망치도 연초 예상했던 2.7%에서 1.6%로 낮춰 잡았다. 내년 성장률도 3.0%에서 2.2%로 하향 조정됐다.

[한국일보 2008-07-30]

미국, 내년 최대 재정적자 예상

- 482조원 전망... 성장률 2.2%로 하향도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를 떠안은 채 우울한 취임식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은 올해 10월 1일 시작되는 미국의 2009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482조원에 달해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고 미 예산국의 발표를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올해 2월 내놓은 전망치 407조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물론 2004년 기록한 중전 최고 적자 기록 413조원도 훌쩍 넘어선 수치다.

경제 전문가들이 재정적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는 것은 모기지 업체 부실로 인한 주택시장 붕괴, 금융시장 불안, 올해 2월 국회에서 통과한 168조원 상당의 경기 부양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적자 예상치에 80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전쟁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데다 경기침체의 지속 여부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짐 너슬 백악관 예산국장은 “적자를 줄이기보다는 경제 부양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적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임 기간중 급속히 늘어났다.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다가 부시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2002년 159조원 적자로 반전한 후 그의 임기 내내 적자 수렁을 벗어나지 못 하더니 급기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민주당 소속의 존 스프렛 하원 예산위 위원장은



정책흐름

- 주·토공 통합 등 공기업 선진화 착수
-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 및 재정사업 발주 현황
- '07년도 경영평가 부진 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본격 착수
- 7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 08. 6월 및 2/4분기 산업활동동향 분석 및 평가
- 외부전문가 세무조사대상 선정절차에 참여
- 경영애로 기업의 납세유예시 담보면제 대폭 확대
- 갑근세 등 원천세, 매월 신고·납부에서 6개월에 한 번으로
- 지방재정에 대한 공금증, 한 번에 푼다

주·토공 통합 등 공기업 선진화 착수

- 41개 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 선진화 방안 1차 발표 -

* 이 자료는 2008년 8월 11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서 발표한 「주·토공 통합 등 공기업 선진화 착수」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 오연천 서울대 교수)는 8. 1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보고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안)’ 및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안)’ 등을 심의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 기획재정부 장관) 산하 소위원회로 정부위원(관계부처 차관) 3명,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

- 위원회는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해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41개 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 공공부문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음

① 민영화(27개 기관)

- ① 산업은행은 산은지주회사와 KDF로 분할 후, 산은지주회사는 민영화하고 KDF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하고 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도 모회사와 동반 민영화(6.2 기 발표)
- ② 기업은행은 증시 상황을 보아가며,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민영화하고, 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도 모회사와 동반 민영화
- ③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적 수준의 허브공항으로의 육성을 위해 전문공항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15%)를 포함, 지분 49% 매각

- ④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등 공적자금투입기관 등 구조조정 기업은 조속한 매각 추진
- ⑤ 뉴서울CC(한국문화진흥),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은 민영화

② 주·토공 통합(2→1개)

- 주택공사, 토지공사는 택지개발기능 중복, 분양주택부문이 민간과 경합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통폐합 및 기능조정

③ 기능조정(12개 기관)

- 관광공사는 면세점, 골프장, 관광단지 등 비핵심 사업 매각
-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는 자원개발 기능은 육성 하되, 비축사업 관리, 지원조직 등 비핵심 업무의 조직·인력은 감축·효율화
- 국민체육공단의 스포츠센터(분당, 일산, 올림픽선수촌) 매각
- 전기안전공사는 저압부문의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민간에 이양
- 산업기술시험원은 정부출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여 민간기관으로 전환
- 3개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

공단)에서 중복하여 수행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 KOTRA, 증진공,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는, 국내에서의 수출지원 기능은 증진공으로, 해외에서의 수출지원 기능은 KOTRA로 일원화

■ 향후 계획

- 주·토공, 관광공사, 인천공항, 기업은행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거쳐 의견 수렴
- 재투자, 재출자기관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하여 모기업 및 해당 기관의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지분매각 등 방안 검토
- 아울러, 그동안 쌓아온 공기업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준비되는 대로 선진화 방안을 발표
- 2차 발표에서는 통폐합 기관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 3차 발표에서는 시장경쟁 등 여건조성이 필요한 기관, 선진화 방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
- 아울러,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효율화 방안을 금년 내에 마련해 추진키로 하였음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을 위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안)

I.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배경

- 활기찬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규제 개혁, 공공부문 선진화, 능동적

개방 등 3대 과제 실천

규제 개혁	공공부문 선진화	능동적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허가 규제개혁 • 서비스 산업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 개편 • 공공기관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FTA • 한·EU FTA

- 세계 각국¹⁾은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크게 강화
-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공공부문 개혁이 지속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공기관의 규모가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
-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검토

II. 공공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 (규모) '08년 현재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총 수는 305개, 예산 338조원('08), 종사자 26만명 ('07말) 수준

〈공공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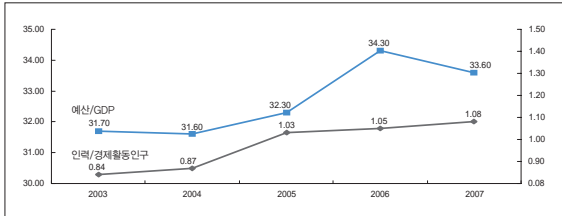
구 분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기관수(개)	305	6	18	63	14	204
인력(천명)	259	28	60	17	49	105
'08 예산 (조원)	338.3	58.8	77.6	65.2	51.4	85.2

- (비중)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증가 추세

1) 영국 : 1979년 대처수상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포함한 대대적인 공공개혁을 단행하여 영국 경제 및 사회를 일신
일본 : 고이즈미 내각의 우정공사 민영화(2007년) 등 과감한 공공개혁으로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고 경제도약의 발판 마련

- 지난 5년간 ('02~'07년) 기관 45개 신설, 인력 4만명²⁾(21%), 예산 88.2조원(43%) 증가

(단위: %)



2.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 (방만경영) 낮은 생산성, 과도한 임금·복리후생
 - 대형 35개³⁾ 공공기관의 경우 '02년 이후 노동생산성보다 더 높은 인건비 증가율
 - * '02~'07년 1인당 부가가치는 연평균 1.8% 증가, 1인당 인건비는 6.6% 증가
 -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 출연, 학자금·주택자금 무상지원 등
- (민간과 경합) 민간역량 성숙으로 역할이 줄어들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역할을 지속 유지하여 시장 마찰 및 민간경제 발전 저해
 - * (예) 주택공사 : 민간건설사 성장 이후에도 일반주택 분양사업 지속 등
- (유사 중복기관) 동일 산업 분야에 지원기관이 다수 존재, 중복지원, 과잉지원, 기관간 갈등 등 비효율
 - * (예) 다수 기관으로 분산된 IT·콘텐츠·방송·영상산업 지원
 -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 ☞ (문화관광부) 게임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III.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

1. 검토대상 기관

■ 총 319개 기관을 검토

- '08. 1월말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305개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공적자금 등을 지원받은 기관* : 14개

* 공공기관 요건에 해당되나 조속한 매각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 유보

공공기관 (305)	공기업 (24)	(시장형, 6개) 가스공사, 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공사, 향만공사(부산·인천)
	준정부기관 (77)	(준시장형, 18개) 조폐공사, 관광공사, 방송광고공사, 마사회, 광진공, 석탄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산재의료관리원, 토지공사, 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감정원,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JDC, 컨테이너부두공단
	기타 공공기관 (204)	(기금관리형, 14개)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예술위, 영진위, 수보,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KAMCO, 신보, 기보, 예보, 주택금융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사학연공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적자금 투입기관 (14개)	(위탁집행형, 63개) 학술진흥재단, 과학문화재단, 정보문화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광해방지사업단, KOTRA, 디자인진흥원, 산업기술재단, 전력거래소, 인터넷진흥원, 건보, 산업안전공단 등	
		산은·수은·기은 등 국책은행 및 그 자회사(12개), 철도·발전자회사 등 공공기관 자회사(35개), KDI 등 출연연·학술연구기관 (60여개), 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12개), 국립발레단 등 문화·예술기관(22개), 재외동포재단 등 정부업무위탁집행기관(60여개)

2) '05년에 공사로 전환된 철도공사 포함시 7천명 수준 증가

3) 공기업 24개+산은,수은,기은 등 금융공기업 8개+과거 정부투자기관 3개(코트라, 농유통, 농촌공사) 대상으로 조세연구원 분석('08. 3)

2. 추진원칙

-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전환
 - 민간이 창의력을 발휘할 공간을 확대, 활력 있는 시장경제 구현
 - 공공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
 - 금융 등 민간의 역량이 성숙한 분야는 공공역할 조정
 - 관련 산업의 세계적 추이와 미래비전에 입각하여 판단
- 국민 편익 증대
 -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통해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
 - * KT 민영화(02)→상품의 다양화 및 전화료 인하 등 국민후생 증대
 -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절감으로 국민의 부담 경감
 - * 경영효율성 향상을 통해 재정지원 10% 축소시 연간 약 2조 원 절감
- 사회적 비용 최소화
 - (요금) 국민 기본생활과 직결되고 요금인상의 우려가 있는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
 - (고용안정) 민영화 기관은 '고용승계' 원칙, 통폐합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양한 대책 강구
 - * 자연감소분을 우선 활용하고, 명예·희망퇴직제 및 배치전환·전직지원 등 검토
 - (혁신도시) 공기업 선진화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는 차질 없이 추진
 - 旣 수립된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기본골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보완대책을 강구

- ☞ 이전대상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
- ☞ 통폐합 기관의 입지는 지자체간 협의, 균형위 조율을 통해 결정
- 보완대책 수립시 관련 지자체 및 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
-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선진화 방안을 투명하게 추진
 - 공개토론회 등 공론의 場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진화 방안 마련
 - 공공성, 경쟁성 등 공공기관 서비스 특성, 시장상황에 따른 합리적 기준을 제시, 대상기관에 적합한 선진화 방안 마련
 - 경쟁여건이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아 민간수행이 바람직한 경우 → 민영화
 - 업무가 상호 유사·중복된 기관 → 통폐합
 - 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 → 기능조정
 - 공공성이 있어 존치되는 모든 공공기관 → 경영효율화

III. 추진방향

1. 민영화

- 검토대상
 - 시장에 참여하여 민간과 경쟁하고 있거나 경쟁가능성이 높은 경우
 - 경쟁여건 조성, 국제경쟁력 확보 등 민영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 추진방향
 - 민영화 대상기관은 '08년 하반기부터 매각절차 착수
 - 다만,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매각

시기는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적 조정

- 경쟁여건 조성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08년 하반기부터 제도 정비 착수
- 단계별 민영화계획을 마련하되, 그 이전이라도 지분 일부 매각이 가능할 경우 매각 추진
- 매각가치 제고, 경제력 집중,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해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각전략 활용

2. 통폐합

■ 검토대상

- 동일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기관이 양립하여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경우
- 동일분야에 유사기관이 존재하여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경우

■ 추진방향

- 중복·유사기관은 통폐합하여 단일 통합조직으로 재설계
- 통합에 따라 관리조직, 비핵심사업 등은 슬림화하고, 고유 목적사업 중심으로 기능·인력 재배치

3. 기능조정

■ 검토대상

- 민간 활성화, 설립목적 달성 등으로 더 이상 공공 부문에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역할이 축소된 기관
- 비관련사업 비중이 과다한 기관
- 기관간 역할분담 재검토를 통해 효율성 제고, 이용 편의성 증대가 가능한 경우

■ 추진방향

- 공공부문에 존치할 필요가 약화된 기능은 폐지,

기능 축소 또는 주된 기능 수행기관으로 이관

- 기관간 기능 조정은 주된 기능 수행기관으로 일원화
- 기관 내 기능 조정은 고유 핵심역량 중심으로 인력·예산 재배치
- 급격한 인력감축보다는 강화될 기능에 인력 전환 배치

4. 경영효율화

■ 검토대상

- 공공기관으로 존치되는 모든 기관
- * 단계적 민영화 대상기관도 완전 민영화 시행 이전까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

■ (추진목표) 효율성 최소 10% 향상

- 기관별 방안은 금년 중 재정부와 주무부처가 협의하여 마련
- 각 주무부처는 소관기관의 경영효율화 계획을 제출(8월말까지)

■ (추진방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효율화 동시 추진

- 조직 및 인력은 기관 고유의 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운영
- * 과도한 상위직(임원포함) 및 지원인력 축소, 불요불급한 파견·교육 등 비현업인력 축소, 조직 유연성 제고를 위한 대부서 체제 운영 등
- 지방조직(지역본부-지사-영업소)은 계층구조의 단순화·광역화 등을 통해 대폭 정비
- * 해외 조직도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축소
-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인력 운영의 유연성 제고
- 임원 등 단위부서장과의 경영계약제, 내부성과관리 강화

- 민간 수행이 가능한 기능은 민간위탁(outsourcing) 추진
- 정부예산 절감 10% 취지에 맞춰 예산 절감
- 출자(재출자)회사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유휴자 산 매각 등
- 감사원·국회 지적사항 개선 등 조직·인사·예산집행에서 경영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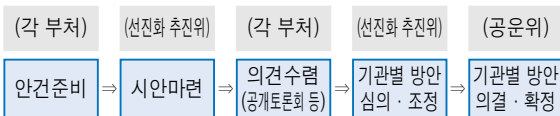
-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가 협의하여 금년중 기관별 방안 마련하여 선진화추진위에 상정
-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출자·재출자회사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경영평가, 기관장 경영책임제 강화 등 병행 추진

IV.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

1.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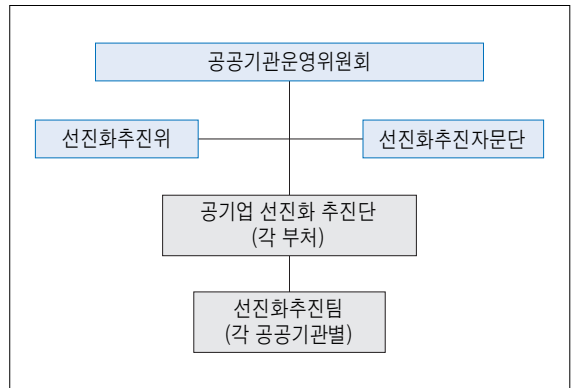
-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
 - ① 각 부처에서 방안이 마련된 기관부터 선진화추진위에서 심의
 - * 추진방향, 토론회 계획 등이 준비된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상정
 - ② 주무부처 주관하에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 진행
 - ③ 의견수렴 등을 거친 기관은 선진화추진위 종합·조정,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로 방안 최종 확정
 - ④ 관련법안 국회 제출(9월 정기국회) 등 선진화 착수

추진절차



- 선진화추진위는 기관별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방안을 우선 심의·점검

2. 추진체계



- 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 기관별 선진화방안 최종 의결
 -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 민간위원장, 공공기관운영위원(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 선진화방안 추진 관련, 공공기관운영위를 실무적으로 뒷받침
 - * 선진화방안 마련, 진행상황 점검 등
 - ‘공기업선진화추진자문단’
 - 학계, 언론계 등 각계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
 - 에너지, SOC, 산업, 문화 등 분야별로 선진화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② 공기업 선진화 추진단(각 부처) : 소관기관별 추진계획 마련
 - 별도 전담기구 설치(단장 : 차관)

→ 각 주무장관의 선진화 방안 추진을 종합적·
효율적으로 뒷받침

③ 선진화 추진팀(각 기관) : 기관별 선진화 방안 추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현황〉

주무부처(25개)	기 관 명
기획재정부(3)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과학기술부(4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강릉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등과학원, 광주과학기술원,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극지연구소, 기초기술연구회,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술평가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의학원, 공공기술연구회
외교통상부(3)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법무부(2)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更生보호공단
국방부(3)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호국장학재단
행정안전부(4)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화체육관광부(35)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사)전국문화회관연합회, (재)국립발레단, (재)국립오페라단, (재)국립합창단, 경복궁관광개발공사,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국민생활체육협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장애인체육회,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술의전당, (재)서울예술단, (재)정동극장, 저작권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문화번역원, 대한체육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언론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주무부처(25개)	기 관 명
농림수산식품부(9)	한국마사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농촌공사, (주)농지개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기술관리센터,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어촌어항협회
지식경제부(69)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광해방지사업단, KOTRA, 에너지관리공단, 요업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우정사업진흥회,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지원단, 기초전력연구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인천종합에너지(주),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표준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N,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별정우체국연합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기술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료연구소, (재)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전략물자관리원, (재)우정복지협력회
보건복지가족부(14)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국립암센터, 대한결핵협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환경부(6)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친환경상품진흥원
노동부(10)	산재의료관리원,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학교법인기능대학, 노사발전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주무부처 (25개)	기 관 명
국토해양부 (37)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지적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주)코레일개발, (주)코레일애드컴, (주)코레일엔지니어링,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투어서비스(주),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코레일트랙(주), 코레일전기(주), 한국토지신탁,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보안(주), (주)부산항보안공사
국무총리실 (2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금융위원회 (19)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금융감독원, 한국자산신탁(주), (주)기은캐피탈, 기보캐피탈, 기은신용정보(주),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산은캐피탈주식회사, (주)아이비케이시스템, (주)정리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코스콤,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
공정거래위원회 (1)	한국소비자원
방송통신위원회 (5)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국가보훈처 (3)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주)
방위사업청 (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경찰청 (1)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소방청 (1)	한국소방검정공사
문화재청 (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산림청 (1)	녹색자금관리단
중소기업청 (6)	시장경영지원센터,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특허청 (2)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우리나라 과거 정부의 민영화 추진실적〉

구 분	추진실적	주요 목적 및 평가
1차 민영화 ('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개 공기업 민영화 완료 • 한국기계, 대한통운, 대한해운, 대한조선, 인천중공업, 대한철광, 대한항공('68), 한국광업제련('70), 대한염업('71), 상업은행, 한국수산개발('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 육성 → 시장경제 유도 • 성공적인 민영화로 평가
2차 민영화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공기업 민영화 완료 • 대한재보험('78), 대한석유('80), 대한준설('81) • 한일은행('81),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82), 조흥은행('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자율화, 민간주도 경제 육성 ■ 정부 간여 지속으로 금융자율화 목적 달성에는 한계
3차 민영화 ('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거래소 민영화('87) ■ 한전, 포철 정부지분 매각(국민주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배 형평성 도모(국민주 도입) ■ 실질적인 민영화로 보기 곤란
4차 민영화 ('93~'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중석, 자회사 등 7개 매각 ■ 22개 기업, 지분 일부 매각 ■ 국민은행('95), 주택은행('97) 민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적인 민영화 목표 (58개 공기업 경영권 이양 목표) * 통신, 전력 등 기간산업은 제외 ■ 일부 지분매각에 그림 (경쟁력 집중, 이해관계자 반발 등)
5차 민영화 국민의 정부 ('98~'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공기업 민영화(11개 계획) ■ 67개 자회사 매각(77개 계획) ■ 기능, 조직·인력 구조조정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축소, 재정수입 확충, 산업·경영 효율화 ■ 망산업 등 공익성 기업까지 확대된 전면적인 민영화 계획 ■ 성공적, 다만, 망산업 등 논란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안 (1차)

I. 추진경과

- 금년 3월,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방침 보고(기획재정부 업무보고서)
 - 공공부문 선진화 기본방침을 정립
 - 민간과 경쟁하는 분야는 민영화를 통해 민간부문 활력 제고
 - 공공부문에도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경영효율화 유도
- 그동안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을 검토
 - 각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진화추진자문단 구성·운영
 - * 총괄, 에너지, SOC, 산업·IT, 금융, 문화 등 6개 분야, 37명
 -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6. 18, 당·정 협의)
- 그동안 검토해 온 기관 중 추진계획이 준비된 41개 기관을 우선 공기업선진화추진위에 상정

II. 1차 선진화 추진계획(안)

◇ 41개 기관 대상

- 민영화 27개, 통폐합 2→1개, 기능조정 12개
- ※ 주·토공, 관광공사, 인천공항, 기업은행은 공개토론회 개최

가. 민영화

- ◇ 민간과 경쟁하고 있거나, 경쟁 가능성이 높아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관

- (산업은행) 산업은행을 산은지주사와 한국개발펀드(KDF)로 분할 후 산은지주사는 민영화하고, KDF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6. 2, 기 발표)
 - 자회사(산은캐피탈, 자산운용)는 산은지주사와 동반 민영화
- (기업은행) 증시 상황을 보아가며 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
 - 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는 기업은행과 동반 민영화
- (인천국제공항) 세계 수준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공항운행사와의 전략적 제휴(15%) 등을 포함, 지분 49% 매각
- (공적자금투입기관 등 구조조정 기업) 외환위기사일시적으로 공공부문에 편입된 기업 등으로 조속히 지분 매각 추진
 -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은 연내 매각 마무리
 - 여타 기업도 조속히 매각을 추진하되, 기관별 매각여건,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기·방법을 탄력적으로 검토
- 민간부문과 경합되는 공기업 자회사 등 5개 기관 민영화
 - (한국문화진흥) 뉴서울CC 골프장 운영 기관으로 골프장 매각과 함께 민영화
 -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수행 중인 금융기능이 민간에서 기 활성화된 점을 감안, 민영화
 - (한국건설관리공사) 민간부문 설계·책임감리회사가 기 활성화된 점을 감안, 여건 조성을 거쳐 민영화

- (경북관광개발공사) 골프장, 관광단지 운영 등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로 민영화

나. 통폐합

◇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된 기능·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주택·토지공사) 택지개발기능 중복, 분양주택부문 민간과 경합 등을 감안하여 통폐합 및 기능 조정
 - 다만, 통폐합 문제, 추진 방식 등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토론회 개최

다. 기능조정

◇ 여건 변화로 기능·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기관

- 여건 변화를 감안, 고유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
 - (관광공사) 핵심기능인 관광진흥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비핵심기능 축소
 - 면세점·골프장 매각, 관광단지 등 개발사업 중단 등 비핵심기능 처리방안에 대한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토론회 개최
 -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석유, 광물 등 자원개발기능에 중점
 - 출자 확대, 민간자본 활용 등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
 - 개발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업무관련 조직·인력은 감축·효율화
- 수요 감소, 설립목적 상당부분 달성, 민간시장이 활성화된 기관은 기능 축소, 폐지 또는 이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민간에서 수행가능한 사업부문 매각

- 3개 스포츠센터를 민간에 매각
- (전기안전공사) 민간이 수행가능한 기능 폐지로 민간활성화 도모
- 저압부문 안전관리 대행사업을 공사의 업무범위에서 제외
- (산업기술시험원) 민간부문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정부지원 축소
- 정부출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여 순수 민간기관으로 전환
- 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성 제고, 이용 편의성 증대가 가능한 경우는 기관간 기능 재조정
 -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유사기능인 징수업무를 일원화하여 소비자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중복 수행 중인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를 기능별로 통합
 - 국내 수출지원 기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
 - 해외 수출지원 기능은 KOTRA로 일원화

Ⅲ. 공기업 선진화 전체 추진일정

① 금번에 심의된 1차 선진화 추진대상 기관

-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 선진화추진위 종합·조정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로 방안 최종 확정
- 주·토공, 관광공사, 인천공항, 기업은행 등은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 의견을 폭 넓게 수렴
- * 주택·택지 공급체계 효율화 방안(8. 14), 관광진흥 효율화 방안(8. 18)

* 인천공항, 기업은행은 추후 일정 확정

- 여타기관도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공개토론회 개최

② 추가 선진화 추진대상 기관

- 기관별로 방안이 준비되는 대로 2~3차례에 걸쳐 선진화추진위에 상정·심의

③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가 협의하여 금년 중 기관별 방안을 마련하여 선진화추진위에 상정·심의
- 재투자(출자) 기관에 대하여도 실패를 파악하여 모기업 및 해당기관의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지분 매각 등 검토

④ 공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검토

- 그동안 쌓인 공기업의 노하우를 활용,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강구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 및 재정사업 발주 현황

* 이 자료는 2008년 8월 4일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에서 발표한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 및 재정사업 발주현황」의 일부입니다. <편집자 주>

- 7월 30(수) 정부는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개최
 -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지원사업을 포함한 상반기 재정집행 상황, 재정사업 발주 현황 등을 점검하고 공기업 투자확대분 집행계획을 논의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08. 7. 30(수) 17:00
기획재정부 대회의실
- 참석자 :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주재),
국토부·복지부 등 27개 부처 국장,
토지공사 등 5개 공기업 실장
- 안 건 : ①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
② 재정사업 발주 현황
③ 공기업 투자확대분 집행계획 등

- 이날 회의에서는
 - 상반기중 집행이 부진한 일부 사업에 대해 집행애로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여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독려하는 한편,
 - 필요한 경우 사업별로 현장 점검을 추진하여 집행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음
 - 또한, 재정이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재정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함

■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은 계획수준에 근접
 - 예산·기금·공기업 주요 사업비의 6월말 현재 집행실적은 109.0조원으로 계획(114.3조원) 대비 95.4% 수준
 - 예산집행률은 94.7%로서 계획 미달 주요 사유는 시공업체의 기성금 신청 지연, 사업추진 방식 개선에 따른 일정 연기, 조직 개편에 따른 추진체계 정비 등임
 - 기금집행률은 102.9%로서 국민주택기금(118.8%),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109.1%) 등의 실적이 호조를 보임
 - 공기업 주요 사업비 집행률은 93.6%로서 대부분의 기관이 집행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토공(81.2%), 주공(97.0%)의 경우 각각 택지개발사업 인허가 협의, 집단민원에 따른 택지 보상협의 등으로 집행이 지연

〈'08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

(단위 : 조원, %)

구 분	'08 계획(A)	'08 상반기		
		계획(B)	실적(C)	집행률(C/B)
주요 사업비	219.9	114.3	109.0	95.4
■ 예산	151.0	80.1	75.8	94.7
■ 기금	28.7	12.5	12.9	102.9
■ 공기업	40.3	21.7	20.3	93.6

②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지원사업은 대체로 정상 집행중

- 서민생활 안정 관련 재정사업은 6월말 현재 12.9조원이 집행되어 계획(11.5조원) 대비 111.9% 집행
- 서민주거 안정(134.4%), 중소기업 경영 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158.2%), 장애인고용장려(106.9%) 등 대부분의 사업이 순조롭게 집행중
- 그간 다소 부진했던 노인요양시설 실비이용료 지원,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등도 집행률이 대폭 상승(각 96.8%, 97.4%)
- 일자리 지원 관련 재정사업은 6월말 현재 1.5조원 집행되어 계획(1.6조원) 대비 91.4%를 집행
-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56.3%), 전직실업자 취업훈련지원(68.0%)이 각각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채용부진, 훈련과정 심사절차 강화에 따라 계획에 미달
- 자활근로(100.0%),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124.9%) 등은 계획 달성

③ 재정사업 발주 현황

- '08년 정부 및 공기업 시설공사 발주 현황 점검 결과, 6월말까지 연간 규모(15.1조원)의 82.1%인 12.4조원 발주
- 하반기에도 각 기관이 설계 변경, 관련기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 연내 발주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토록 지속 독려할 예정

④ 공기업 투자 확대분 집행계획

- 건설부문 투자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공기업 투자 확대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투자 확대분 총 4.6조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

(단위 : 조원, 누계, %)

투자확대 금액	3/4분기	진도율(%)		
		3/4분기	4/4분기	진도율(%)
4.6	1.3	28.2	4.6	100.0

* 투자확대 기관 :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15개 공기업

- 향후 투자 확대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 각 기관이 연내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예정

'07년도 경영평가 부진 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본격 착수

* 이 자료는 2008년 8월 4일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에서 발표한 「'07년도 경영평가 부진 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본격 착수」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부진한 15개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컨설팅에 본격 착수하였음

가. 배경

- 기획재정부는 '07년도 경영평가 후속조치 '08. 6. 20)로서
 - 경영평가 결과 부진 기관에 대해 경영컨설팅을 받아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바 있음

나. 경영컨설팅 개요

① 대상기관 : 15개 부진기관(공기업 2개, 준정부기관 13개)

유형	기관명(총 15개)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2개)
준정부기관	한국소방경정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과학문화재단, 독립기념관,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우정사업진흥회,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산업기술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13개)

② 경영컨설팅 담당 민간전문가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컨설팅을 지원하

기 위해 경영컨설팅 전문가 풀을 구성하였으며,
 • 이번 경영컨설팅에는 인사/조직부문, 재무/회계부문, 전략/성과관리부문 등 3개 부문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교수, 회계사, 컨설턴트 등 4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음

③ 경영컨설팅의 주요 내용

- '07년도 부진 기관의 방만경영 주요 요인 분석 및 기관의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④ 경영컨설팅의 활용

- 부진 기관은 경영컨설팅을 받고 그 결과를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는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

다. 경영컨설팅 기대효과

- 공공기관은 경영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방만 경영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경영효율성 및 서비스 경쟁력 제고
- 경영평가의 환류기능이 강화되고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민은 경영시스템이 개선된 공공기관으로부터

경제적이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서비스만족도 향상

라. 경영컨설팅 일정

- ① 기관별 경영컨설팅 착수 : 8월 초
※ 경영컨설팅 참여 전문가 워크숍 기 개최(7. 21)
- ② 경영컨설팅 최종보고서 제출 : 8. 22
- ③ 경영개선계획 제출 : 8. 29
- ④ 경영개선계획 이행점검 : 10월중

마. 향후 조치계획

- 이번 부진 기관에 대한 경영컨설팅은 처음 도입된 조치로서, 기관의 경영시스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동 조치가 부진 기관의 경영효율화 등 충분한 성과를 내는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확대 실시할 계획

7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 이 자료는 2008년 8월 1일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에서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08. 7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9% 상승(전월 대비 0.7%)
 - 7월 초순까지 국제유가 상승, 장마기간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에 주로 기인
 - * 소비자물가 동향(전년 동월비, %) : (07.1~9)2.3→(10)3.0→(11)3.5→(12)3.6→(08. 1)3.9→(2)3.6→(3)3.9 →(4)4.1→(5)4.9→(6)5.5
 - *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5.9% 중 석유제품의 기여도가 2.02%p로 물가 상승의 약 34%가 석유제품 상승에 기인

부문별 물가동향

구 분	전체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공공			집세	개인서비스
				석유류	요금	요금		
전월비(%)	0.7	1.9	1.0	1.7	0.1	0.2	0.4	
기여도(%p)	0.7	0.15	0.33	0.12	0.01	0.02	0.16	
전년 동월비(%)	5.9	1.4	11.4	35.5	2.2	2.4	5.0	
기여도(%p)	5.9	0.12	3.48	2.02	0.37	0.23	1.73	

- ① 국제유가가 7월 중순 이후 하락하고는 있으나,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 하락까지는 2~3주 시차가 소요됨에 따라 7월중 소폭 상승
 - * 7월중 국제유가 : 평균 2.7% 상승 [Dubai油 기준 (6월)127.9 → (7월)131.3\$/B]
 - 7월중 소비자물가 중 석유제품 상승률(전월비) : 1.7%
 - * 석유협회 보도자료(8.1일) :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정유사 공급가격이 7월 4주 현재 전주 대비 휘발유 65.6원/ℓ, 경유

64.8원/ℓ 인하되었으며 8월 중순까지 추가 100원 내의 하락 요인 예상

- ② 개인 서비스요금의 경우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을 반영함에 따라 지속 상승
 - 7.1일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신규 적용되고,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약 30% 인상됨에 따라 항공요금·여행비 등이 크게 상승
 - * 전월비 상승률(%) : 국제항공료(10.2)
단체여행비(해외6.0, 국내5.7)

- ③ 최근 기상여건 악화 및 계절적 수요 급증에 따라 농축수산물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
 - 열무·시금치·양파·수박·닭고기 등이 크게 상승
 - * 전월비 상승률(%) : 열무(34.8), 시금치(24.2), 양파(10.8), 수박(10.7), 닭고기(15.0)

- 국제유가 상승으로 미국 등 다수의 OECD 국가가 10년 이상 기간중 최고 수준의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물가목표·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준
 - * 전년 동월비 상승률 기준 미국은 17년 만에 최고, EU는 16년 만에 최고(독일 14년, 프랑스 17년, 영국 16년 만에 최고), 일본은 15년 만에 최고 수준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국가	07				08					
	연간	10	11	12	1	2	3	4	5	6
미국	2.9	3.5	4.3	4.1	4.3	4.0	4.0	3.9	4.2	5.0
유로	2.1	2.6	3.1	3.1	3.2	3.3	3.6	3.3	3.7	4.0
중국	4.8	6.5	6.9	6.5	7.1	8.7	8.3	8.5	7.7	7.1
싱가포르	2.1	3.6	4.2	4.4	6.6	6.5	6.7	7.5	7.5	7.5
홍콩	2.0	3.2	3.4	3.8	3.2	6.3	4.2	5.4	5.7	6.1
대만	1.8	5.3	4.8	3.3	2.9	3.9	4.0	3.9	3.7	5.0
일본	0.0	0.3	0.6	0.7	0.7	1.0	1.2	0.8	1.3	2.0

* 주요국 물가목표(전망)치(%) : (중국)4.8, (유로)2.0, (싱가포르)4.5~5.5

- 이에 따라, 정부는 기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물가 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 8. 5일(화) 제4차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한국은행·소비자원·대한상의·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회의로 개최하여
 - 수입물가 등의 상승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 7월 물가상승의 주원인이 되는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 분석을 통해 물가 불안 요인 발생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
 - 또한, 소비자 단체·생산자 단체의 물가 안정 및 민생 안정을 위한 활동을 검토하는 등 민간부문의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할 예정임

- 앞으로도 정부는 매월 소비자물가 발표 직후에 「물가 및 민생 안정 차관회의」를 민관합동회의로 개최하여 전반적인 물가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물가 안정을 위한 민간과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해 나갈 것임

O8. 6월 및 2/4분기 산업활동동향 (O8.7.31 통계청 발표) 분석 및 평가

* 이 자료는 2008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에서 발표한 「O8. 6월 및 2/4분기 산업활동동향(O8. 7. 31 통계청 발표) 분석 및 평가」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6월 광공업 생산은 화물연대 파업 등에 따른 수출 차질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

* 광공업 생산(%) : (O7. 4/4)10.8→(O8. 1/4)10.6→(2/4)8.6,
(O8. 3)10.3→(4)10.7→(5)8.6→(6)6.7

〈전기비〉 3.1→2.1→1.4→1.1→1.0→△0.6→0.2

- 재고는 증가율이 확대(13.1%→15.9%)되었고, 이에 따라 재고-출하순환은 5개월 연속 경기둔화 영역으로 이동
- 서비스업 생산은 내수경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4.9%→2.8%)

■ 내수지출 부문 중 소비 부진이 심화되었으며, 투자는 소폭 증가

- 소비재 판매는 O6. 7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전월비로도 감소세가 확대

* 소비재 판매(%) : (O7. 4/4)4.5→(O8. 1/4)3.9→(2/4)2.5, (O8. 3)4.4→(4)5.4→(5)3.0→(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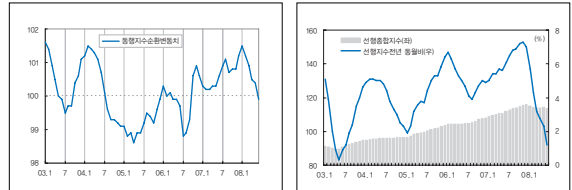
〈전기비〉 0.3→2.0→△1.1→1.5→△0.4→△0.7→△4.3

-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 증가로 인하여 증가세로 전환

* 설비투자추계(%) : (O7. 4/4)9.2→(O8. 1/4)△0.9→(2/4)0.1, (O8. 3)0.9→(4)△1.9→(5)△2.1→(6)4.4

- 경기종합지수는 동행지수·선행지수 모두 하락
- 선행지수가 7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며, 동행지수

가 5개월 연속 하락



■ 수출 차질의 영향으로 생산측면에서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 소비 부진이 가속화되고 경기선행지수가 7개월 연속 하락하여, 경기하강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
- 출하 측면에서도 수출호조·내수부진의 불균형 양상이 지속

	06	07	08.1	2	3	4	5	6
수출출하	10.1	10.2	14.2	12.9	15.7	14.1	15.9	10.9
내수출하	6.2	4.9	7.4	4.2	4.2	4.9	0.3	0.4

O8. 6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및 평가

I. 생산동향

[광공업 생산]

- 6월 광공업생산은 화물연대 파업 등에 따른 수출

차질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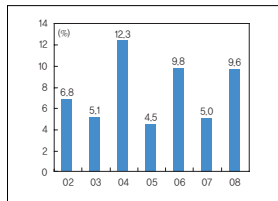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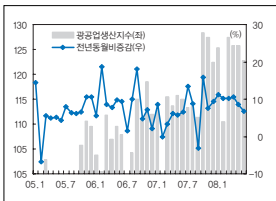
* 광공업생산(%) : (07. 4/4)10.8→(08. 1/4)10.6→(2/4)8.6,
(08. 3)10.3→(4)10.7→(5)8.6→(6)6.7
(전기비) 3.1→2.1→1.4→1.1→1.0→△0.6 →0.2

• 업종별로는 반도체 및 부품(25.0%), 영상음향통신(13.8%), 자동차(5.0%) 등이 생산 증가에 기여 (전년 동월 대비)

* 업종별 기여도(%) : 반도체 및 부품 4.02, 영상음향통신 0.76, 자동차 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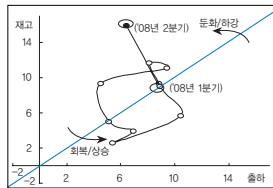
- 전월 대비로는 반도체 및 부품, 영상음향통신(휴대용 전화기) 등이 부진

광공업 생산 추이 1~6월중 광공업 생산 증기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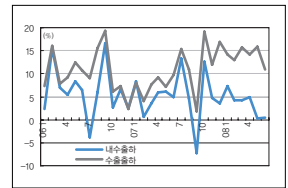


- 출하는 증가세가 감소되었으며(6.2%→4.5%), 재고 증가세는 확대(13.1%→15.9%)
- 재고 증가의 대부분은(15.9% 중 11.8%p) 「반도체 및 부품」에 의한 것이며, 자동차 재고도 증가(0.62%p)
- * 출하(%) : (07. 4/4)10.4→(08. 1/4)8.9→(2/4)6.4, (08. 3)8.7→(4) 8.5→(5)6.2→(6)4.5
- * 재고(%) : (07. 4/4) 5.7→(08. 1/4)9.0→(2/4)15.9, (08. 3)9.0→(4)12.0→(5)13.1→(6)15.9
- 제조업 재고-출하순환이 5개월 연속 경기둔화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내수출하와 수출출하간의 불균형 양상이 지속

제조업 재고-출하순환



내수출하와 수출출하



- 7월 광공업 생산은 수출 증가(7월 : 30%대 전망)에 힘입어 추세적인 증가 수준을 유지할 것이나,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제한될 전망

[서비스업 생산]

- 6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하여 전월(4.9%)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

* 서비스업 생산(%) : (07. 4/4)6.8→(08. 1/4)6.4→(2/4)4.6,
(08. 3)5.7→(4)6.0→(5)4.9→(6)2.8
(전기비) 1.7→0.8→0.1→0.3→0.2→0.1→△0.3

• 업종별로는 운수업(6.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5.9%), 금융·보험업(5.4%) 등이 서비스업 생산 증가에 기여

- 7월 서비스업 생산은 고유가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과 내수 부진으로 인하여 둔화세가 이어질 전망

II. 소비

- 6월 소비재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0% 감소하여 06. 7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시현하였으며, 전월비로도 감소세가 크게 확대(△0.7→△4.3%)
- 경기에 민감한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에 따라 차량용 연료 등 비내구재도 감소

* 소비자 판매(%) : (07. 4/4)4.5→(08. 1/4)3.9→(2/4)2.5, (08. 3)4.4→(4)5.4→(5)3.0→(6)△1.0

〈전기비〉 0.3→2.0→△1.1→1.5→△0.4→△0.7→△4.3

* 민간소비(국민계정, %) : (07. 2/4)4.4→(3/4)4.8→(4/4)4.6, (08. 1/4)3.4→(2/4)2.4

■ 7월 소비재 판매는 소비심리 위축·유가 상승·속보지표 등을 감안할 때 부진 추세가 지속될 전망

(전년 동기비, %)

* 신용카드 국내승인액 : (08. 2)17.2→(3)25.5→(4)19.4→(5)20.0→(6)18.8→(7. 1~15)23.9

* 백화점 매출 : 5.5→6.7→6.5→11.3→11.2→△0.5

* 할인점 매출 : △1.5→2.8→0.1→4.9→△1.9→8.0

* 휘발유판매량 : 0.7→△0.6→6.5→0.0→△4.6→△7.5

* 국산자동차내수판매량 2.9→5.9→11.4→3.3→△7.5→30.3

〈자료〉

지식경제부, 여신전문금융협회, 석유공사, 자동차공업협회, 단, 7월 자료는 재정부 모니터링 기준

Ⅲ. 투자

[설비투자]

■ 6월 설비투자 추계는 운수장비 투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기 및 전자기기, 통신기기 등 기계류 투자 증가로 인하여 증가세로 전환

* 설비투자추계(%) : (07. 4/4)9.2→(08. 1/4)△0.9→(2/4)0.1, (08. 3)0.9→(4)△1.9→(5)△2.1→(6)4.4

* 설비투자(국민계정, %) : (07. 2/4)11.0→(3/4)2.3→(4/4)6.5→(08. 1/4)1.4→(2/4)0.8

■ 7월 설비투자는 선행지표인 기계수주 및 기계류 수입 흐름, BSI 등을 감안할 때 큰 폭의 개선은 어려울 전망

* 기계수주(%) : (08. 1)44.4→(2)8.3→(3)24.1→(4)17.9→

(5)3.0→(6)5.4

* 기계류 수입(%) : (08. 1)12.2→(2)11.3→(3)12.0→(4)12.3→(5)5.7→(6)6.4

* 설비투자전망BSI : (08. 1)100→(2)100→(3)101→(4)101→(5)103→(6)103→(7)100→(8)98

BSI 추이

	07.12	08.1	2	3	4	5	6	7	8	증감	
실적	• 한은	84	83	82	84	87	85	77	76		△1
	(계절조정치)	84	83	84	81	83	83	76	80		4
	• 전경련	98.9	95.2	95.6	101.1	101.7	98.1	79.1	80.8		1.7
전망	• 중기협	85.1	84.0	77.1	82.9	83.7	82.3	74.0	72.4		△1.6
	• 한은	90	87	84	90	88	92	88	77	74	△3
	(계절조정치)	92	90	86	86	83	87	88	81	80	△1
• 전경련	103.4	103.0	94.8	102.1	98.1	104.7	95.3	83.2	80.8	△2.4	
• 중기협	91.5	89.6	87.4	95.1	92.3	93.1	87.5	78.2	76.3	△1.9	

[건설투자]

■ 6월 국내 건설기성(경상)은 민자사업의 증가에 힘입어 증가세 유지

* 건설기성(경상, %) : (07. 4/4)8.0→(08. 1/4)5.8→(2/4)6.1, (08. 3)3.8→(4)4.3→(5)7.7→(6)6.1

* 건설투자(국민계정, %) : (07. 2/4)1.6→(3/4)△0.1→(4/4)0.4, (08. 1/4)△1.1→(2/4)△0.8

• 선행지수인 건설수주(경상)는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

* 건설수주(경상, %) : (07. 4/4)29.5→(08. 1/4)△3.9→(2/4)△6.1, (08. 3)5.3→(4)△2.5→(5)18.8→(6)△23.4

■ 주택경기 침체, 건설부문 투자심리 위축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건설투자는 위축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 건설기업 BSI(건설산업연구원) : (2)75.0→(3)58.2→(4)51.4→(5)49.3→(6)51.7

IV. 경기종합지수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5p 하락, 5개월 연속 하락

- 비농가취업자 수,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등 3개지표가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업판매액지수(Δ1.1%), 수입액(Δ0.6%), 건설기성액(Δ0.6%), 내수출하지수(Δ0.6%), 제조업가동률지수(Δ0.4%)가 감소

* 순환변동치 전월차(p) : (1)0.3→(2)Δ0.3→(3)Δ0.3→(4)Δ0.4→(5)Δ0.1→(6)Δ0.5

* 동행지수 구성지표는 계절요인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하여 전월비로 계산

■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는 전월 대비 1.1%p 하락하여, 7개월 연속 하락

- 종합주가지수, 자본재수입액, 구인구직비율, 장단기금리차가 상승하였으나, 나머지 6개 지표*가 하락

* 재고순환지표(Δ3.6%p), 소비자기대지수(Δ3.7p), 기계수주액(Δ0.7%), 건설수주액(Δ8.1%), 금융기관유동성(Δ1.2%), 순상품교역조건(Δ1.0%)

*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차(%p) : (1)Δ1.3→(2)Δ1.4→(3)Δ1.1→(4)Δ0.4→(5)Δ0.5→(6)Δ1.1

〈산업활동 주요지표〉

(전년 동월(기)비, %)

		2007년			2008년					
		연간	2/4	6월	1/4	2/4p	4월	5월b	6월b	
생 산	· 전월(기)비	-	3.0	0.7	2.1	1.4	1.0	-0.6	0.2	
		· 동월(기)비	6.8	6.2	6.6	10.6	8.6	10.7	8.6	6.7
		· 조업일수적용	7.0	6.0	8.0	10.2	9.5	9.6	11.9	7.1
	- 제조업	7.0	6.3	6.7	10.7	9.0	11.1	8.9	7.0	
		(중화학)	8.2	7.0	7.9	12.9	11.1	13.4	11.4	8.7
		(경공업)	1.7	3.0	1.6	1.5	-0.7	1.0	-2.0	-1.0
	· 출하	7.1	6.9	6.8	8.9	6.4	8.5	6.2	4.5	
		- 내수	4.9	5.7	4.9	5.3	1.8	4.9	0.3	0.4
		- 수출	10.2	8.7	9.7	14.3	13.6	14.1	15.9	10.9
	· 재고 ²⁾	5.7	3.9	3.9	9.0	15.9	12.0	13.1	15.9	
제조업		평균가동률	80.3	80.7	80.9	81.1	80.9	82.2	80.2	80.3
	생산능력	5.2	4.4	4.7	5.9	6.2	6.1	6.4	6.1	
서비스업	전월(기)비	-	1.6	1.5	0.8	0.1	0.2	0.1	-0.3	
	동월(기)비	6.4	6.1	7.7	6.4	4.6	6.0	4.9	2.8	
소 비 재 판 매 액	전월(기)비	-	0.1	-0.6	2.0	-1.1	-0.4	-0.7	-4.3	
		동월(기)비	5.3	4.2	3.5	3.9	2.5	5.4	3.0	-1.0
	내수용소비재 출하	5.7	7.6	4.6	6.1	5.3	8.4	3.6	4.1	
투 비	설비투자추계	8.6	11.9	11.3	-0.9	0.1	-1.9	-2.1	4.4	
	국내기계수주	21.1	7.1	3.3	25.2	8.5	17.9	3.0	5.4	
	국내건설기성 ³⁾	6.6	6.0	4.9	5.8	6.1	4.3	7.7	6.1	
자 건 설	국내건설수주 ³⁾	19.3	26.3	28.8	-3.9	-6.1	-2.5	18.8	-23.4	

주: 1)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을 포함,

2) 개월, 분기, 연말 기준,

3) 경상금액 기준임

〈경기종합지수〉

	2008.2월	3월	4월p	5월p	6월p
동행종합지수(전월비,%)	0.1	0.2	0.0	0.3	-0.1
순 환 변 동 치	101.2	100.9	100.5	100.4	99.9
· 전월차(p)	-0.3	-0.3	-0.4	-0.1	-0.5
선행종합지수(전월비,%)	-0.7	-0.4	0.2	0.1	-0.4
전년동월비(%)	4.3	3.2	2.8	2.3	1.2
· 전월차(%p)	-1.4	-1.1	-0.4	-0.5	-1.1

외부전문가 세무조사대상 선정절차에 참여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성실신고법인 조사 제외

* 이 자료는 2008년 7월 22일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발표한 「외부전문가 세무조사대상 선정절차에 참여」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앞으로 세무조사대상 선정절차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청을 견제하게 됨
 -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은 '06년과 '07년 2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국세청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투명성 및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
 -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7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외부전문가가 세무조사대상 선정절차에 참여

-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조세전문기관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6명과 내부위원 5명(위원장 국세청 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법인세·소득세의 주요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 제외기준 등 조사대상 선정기준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법인 신고성실도 분석시스

- 템(CAF : Compliance Analysis Function)에 대하여 토의하였고,
 - 위원들은 경제여건 변화 및 지능적 탈세수법에 대응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유가·원자재 값 상승 등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감안하여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성실신고법인 조사 제외하기로

-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에 대한 조사 제외 방안을 중점 심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추진배경) 최근 유가 및 원자재 값 상승, 소비 위축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기업경영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큼

- (추진방안) 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1)기본적인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2)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는 경우 조사대상 선정시 우선적으로 제외

(1) 납세협력의무 이행요건

-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지급명세서의 작성·교부·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것
-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등 관련 국세를 모두 납부할 것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미가맹 및 발급 거부사실이 없을 것(해당 법인에 한함)

(2) 구체적인 탈루혐의 기준

-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매출 누락,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한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적용제외)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의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임대업 법인
- 유흥주점·사금융(사채업자)·금지금·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조장 사업자

- (사업연도) 적용대상 사업연도는 '06년과 '07년 2개 사업연도이며,

- 각 사업연도별로 상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시 제외

향후 계획

- 지금까지 납세자는 성실하게 신고해도 세무조사를 받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심리적 부담이 있었으나,
 -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의 조사 제외를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기업이 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음

-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사행정을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함은 물론

-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되,
-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성실신고가 최선의 전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음

경영애로 기업의 납세유예시 담보면제 대폭 확대

- 고유가 등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 지원 -

* 이 자료는 2008년 7월 21일 국세청 납세지원국에서 발표한 「경영애로 기업의 납세유예시 담보면제 대폭 확대」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담보 없이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상향 조정

- 국세청은 기업의 경영애로와 자금난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납세유예시 제공받는 납세담보의 면제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음
- ※ 납세유예란 자진납부하는 국세의 납기연장과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징수유예를 말하며,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임
- 납세담보 없이 납세유예 가능한 금액

- ◇ 유예세액 : 3,000만원(현행) → 5,000만원(개정)
- ◇ 생산적 중소기업 등 : 5,000만원(현행) → 1억원(개정)
- ◇ 성실납세자(포인트 고점자 포함) : 3억원(현행) → 5억원(개정)

* 생산적 중소기업 : 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성실납세자 : 국세청장·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 및 훈·포장수상자 3년간(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표창은 1년간)

- 특히,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금번 '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 7월 1일 신고·고지분부터 적용하여 조기에 시행

하고

- 납세유예 기간은 법이 허용하는 9개월까지 최대 한 승인

담보면제 금액 확대 효과

- 경영애로 기업은 납세담보 없이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담보 준비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크게 감소되어 경영정상화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번 제도 확대로 인해 담보 없이 납세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연간 약 3천명으로 예상되며
- 납세유예에 따르는 금융비용 상당액 약 64억원의 혜택과
- 납세보증보험증권 보증수수료 약 30억원을 절감 받는 효과

납세유예 신청방법

- 납세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
- ※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전자민원 → ③ 인터넷 민

원신청→④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
→⑤신청서 입력→⑥신청하기

납기연장 · 징수유예 신청사유

국세기본법 제6조【납기연장】 ①천재 · 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 ·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6. 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

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조세의 이종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재해의 범위】영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타의 재해”라 함은 화약류 · 가스류 등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도괴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를 말한다. 다만, 조세포탈 목적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한 재해는 제외한다.

【사업에 심한 손해의 정도】영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에 심한 손해”라 함은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를 말한다.

【사업의 중대한 위기】영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 함은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갑근세 등 원천세, 매월 신고·납부에서 6개월에 한 번으로

- 원천세 반기납부로 소규모 사업자 12만명이 혜택 -

* 이 자료는 2008년 7월 18일 국세청 원천세과에서 발표한 「갑근세 등 원천세, 매월 신고·납부에서 6개월에 한 번으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세(근로소득원천징수 등)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새로 12만명의 사업자를 반기납부자로 지정하여 6개월에 한 번씩만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였음
 -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지난해 종업원 수가 10인 이하이고 연간 납부세액이 1,2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이며,
 - 이번 반기납부 지정으로 전체 88만명의 원천징수의무자 중 반기납부자가 61만명(69.3%)이 되어 대다수 소규모 사업자는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게 되었음
- 원천세 반기납부제도란 매월 신고·납부하던 원천세를 신청이나 지정에 의해 1년에 2회(반기별)만 신고·납부하는 제도로
 -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의 경우에도 7월 지급분부터 1년에 2회(1월, 7월)만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임
 - 즉 종전 매월 신고·납부방식에서는 7월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을 8월 10일까지, 8월분은 9월 10일까지 매월 납부했으나, 반기납 지정 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치를 내년 1월 10일에 한 번만 신고·납부하면 됨
- 이러한 반기납제도의 시행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 매월 신고서 작성·제출, 세금납부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고
 - 세무서도 원천세 신고·납부 관리 업무 축소로 납세서비스 제고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됨
-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12만 사업자와 해당 세무대리인에게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 반기납부 지정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홈택스에 로그인 후 쪽지함을 확인하면 팝업창으로 안내
(주)성실은 원천세 반기납부자로(2008. 7월 기준), 2008년 7월부터 12월 지급분은 2009년 1월에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무대리정보관리』·『세무대리정보조회』·『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서 확인
 -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세청고객만족센터(☎ 1588-0060)를 이용하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음

1. 원천세 반기납부 지정 사업자

- 10인 이하인 사업자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12만 명

구 분	내 용
대상업종	전 업종(금융·보험업 제외)
종업원 수	2007년 1~12월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법인 포함)
대상세목	원천징수하는 모든 세목
대상기간	2008년 7월부터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007년 원천징수세액 1,200만원 초과자

2. 매월 신고·납부와 반기별 신고·납부 비교

매월 신고·납부	반기별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원천징수세액 ☞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1년에 12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2009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2009년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3.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종전과 같이 매월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7월말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종전과 같이 매월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4. '08년 개업자 등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가 원천세 반기납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반기별 납부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신청요건	종업원 수	2008년 1월~12월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 수 10인 이하
	제외 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08년 12월 1일 ~ 12월 31일
	전자신청	http://www.hometax.go.kr
	서면신청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2 서식)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신고 납부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2009년 1월 31일까지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

지방재정에 대한 궁금증, 한 번에 푼다

- 2004년 이후 지방재정 관련 질의회신 모두 정리하여 DB화 -

* 이 자료는 2008년 8월 6일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발표한 「지방재정에 대한 궁금증, 한 번에 푼다」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방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되는 내용, 해석상 논란이 있거나 특이한 사례 등을 정리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고 DB화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 이번 사례집 발간은 2004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작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학계, 일반국민들이 지방재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4년에도 질의회신 사례를 모아 정리한 적이 있었지만 내용이 예산분야에만 한정되었고, 그 이후 진행된 지방재정의 많은 변화와 발전*을 수용하지 못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 <예시> 지방재정법의 전문분야별 4대 분법(지방재정법, 지방기금법, 지방계약법, 공유재산법), 주민참여예산제와 사업예산제도 도입,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구축과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행 등

- 이번 사례집은 이러한 제도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내용뿐만 아니라 지방채·기금 등 지방재정의 여러 분야와 새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 관련 내용을 포괄하여 500여건의 사례를 수록하였다.
- 또한 질의회신 사례 이외에도 예산·회계와 관련

된 용어와(280여건) 대법원 판례 등도 알기 쉽게 정리했다.

- 행정안전부는 공무원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에 DB를 구축하고 인터넷*에도 게시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8월중)할 계획이다.

* 재정보 : <http://lofin.mogaha.go.kr/>

* 예산절감 인터넷 카페 : <http://cafe.naver.com/lfsst/45>,
<http://cafe.daum.net/LGCS10>

<질의회신 사례에 수록된 주요내용>

- 지방재정제도 관련 질의회신 사례
 - 사전재정관리제도
 - 재정사업관리(사업구조화)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 지방채
 - 예산 편성 및 운용
 - 세입예산, 성립전 예산
 - 예산의 편성, 배정
 - 과목구분과 설정(인건비, 운영비, 보조금 등)
 - 예산의 변경 관리
 - 예산의 이월, 이·전용, 변경, 이체

- 기타 지방재정제도

- 기금, 채권, 금고

- 지방예산절감

- 법제처 지방재정법령 해석 및 질의·답변 사례

- 예산·회계 용어 해설



재정통계

- 소득세 예산 및 징수
-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 시도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 시도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1994~2006)

1. 소득세 예산 및 징수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부과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¹⁾	비율	
	(A)	(B)		(C)			B/A	C/A
1965	11,409	12,060	13,426	11,668	52	340	105.7	102.3
1966	17,879	21,318	21,883	20,305	128	884	119.2	113.6
1967	26,625	32,271	34,039	30,950	297	1,024	121.2	116.2
1968	42,639	50,926	51,220	47,600	597	1,656	119.4	111.6
1969	58,758	72,094	73,802	69,609	858	1,627	122.7	118.5
1970	71,597	88,324	90,908	84,452	1,861	2,012	123.4	118
1971	93,539	113,831	115,715	107,615	2,244	3,972	121.7	115
1972	110,756	111,000	117,854	104,697	3,149	3,154	100.2	94.5
1973	119,652	130,553	140,881	123,710	2,743	4,100	109.1	103.4
1974	142,054	170,012	171,172	164,660	2,289	3,063	119.7	115.9
1975	179,315	208,583	211,682	198,619	2,448	7,516	116.3	110.8
1976	309,247	334,806	116,450	319,021	6,054	9,731	108.3	103.2
1977	403,913	308,215	158,803	352,715	8,914	18,586	76.3	87.3
1978	507,602	488,052	179,798	467,759	9,289	11,004	96.1	92.2
1979	603,827	643,579	207,164	614,679	8,438	20,462	106.6	101.8
1980	626,954	722,526	277,286	661,374	12,066	49,086	115.2	105.5
1981	795,015	980,331	978,499	886,150	24,329	69,852	123.3	111.5
1982	993,009	1,199,159	1,243,815	1,005,516	75,352	118,291	120.8	101.3
1983	1,084,303	1,303,480	1,346,101	1,136,116	78,699	88,665	120.2	104.8
1984	1,199,439	1,427,947	1,450,667	1,229,093	84,044	114,810	119.1	102.5
1985	1,350,537	1,728,660	1,760,676	1,481,558	153,952	93,150	128	109.7
1986	1,603,826	2,017,272	1,966,158	1,784,559	165,193	67,520	125.8	111.3
1987	1,925,496	2,441,576	-	2,158,867	179,292	103,417	126.8	112.1
1988	2,271,238	3,404,756	-	2,964,061	166,616	274,079	149.9	130.5
1989	2,761,640	3,929,698	-	3,556,892	165,932	206,874	142.3	128.8
1990	3,250,654	5,142,916	-	4,723,114	190,693	229,109	158.2	145.3
1991	5,853,144	6,873,897	-	6,459,371	111,321	303,205	117.4	110.4
1992	8,249,600	8,601,334	-	8,008,357	127,378	465,599	104.3	97.1
1993	8,920,708	10,414,353	-	9,462,850	336,643	614,860	116.7	106.1
1994	10,655,200	12,134,606	-	11,207,767	420,178	506,661	113.9	105.2
1995	13,423,000	15,182,977	-	13,618,190	739,637	825,150	113.1	101.5
1996	14,503,400	16,688,611	-	14,766,882	833,812	1,087,917	115.1	101.8
1997	15,801,600	17,291,735	-	14,867,893	1,060,173	1,363,669	109.4	94.1
1998	17,174,600	20,091,533	-	17,194,021	1,466,600	1,430,912	117	100.1
1999	14,903,940	18,171,394	-	15,854,601	1,409,364	907,429	121.9	106.4
2000	15,608,500	19,812,645	-	17,508,873	1,384,560	919,212	126.9	112.2
2001	17,121,500	21,207,904	-	18,662,955	1,642,483	902,466	123.9	109
2002	20,131,900	21,786,670	-	19,160,496	1,811,802	814,372	108.2	95.2
2003	20,157,400	23,508,368	-	20,787,302	1,809,790	911,276	116.6	103.1
2004	22,007,700	26,366,532	-	23,434,004	1,832,570	1,099,958	119.8	106.5
2005	24,507,600	27,888,719	-	24,650,520	1,982,681	1,255,518	113.8	100.6
2006	27,677,700	33,998,701	-	31,004,340	1,808,625	1,185,736	122.8	112

주: 1) 미수납액=징수결정액-수납액-불납결손액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단위: 명, %)

	납세인원 ¹⁾ (A)	과세미달 추정인원 ²⁾ (B)	확정신고 대상인원(C=A-B)	과세인원비율 (C/A)	확정신고 인원 (D)	장부, 증빙에 의한 신고 인원(E)	근거과세 인원비율 ³⁾ (E/(E+F))
1983	1,688,802	1,063,079	625,723	37.1	622,262	89,479	14.4
1984	1,733,907	1,104,184	629,723	36.3	619,777	124,478	20.1
1985	1,788,651	1,139,802	648,849	36.3	644,312	168,300	26.1
1986	1,866,447	1,194,642	671,805	36	668,851	201,857	30.2
1987	2,008,049	1,342,394	665,655	33.1	661,906	219,469	33.2
1988	2,073,895	1,366,747	707,148	34.1	703,666	240,016	34.1
1989	2,171,912	1,519,036	652,876	30.1	636,633	253,675	39.8
1990	2,367,012	1,623,513	743,499	31.4	739,807	269,377	36.4
1991	2,593,388	1,758,651	834,737	32.2	827,764	305,541	36.9
1992	2,811,346	1,856,023	955,323	34	946,365	308,218	32.6
1993	3,165,119	2,010,119	1,155,000	36.5	1,138,204	332,203	29.2
1994	3,353,842	2,060,336	1,293,506	38.6	1,266,489	361,313	28.5
1995	3,507,003	2,119,468	1,387,535	39.6	1,356,606	395,282	29.6
1996	3,657,253	2,385,651	1,271,602	34.8	1,247,442	460,568	37.6
1997	3,437,818	2,119,926	1,317,892	38.3	1,299,442	504,933	39.6
1998	3,495,183	2,245,873	1,249,310	35.7	1,225,614	495,045	40.8
1999	3,407,662	2,047,371	1,360,291	39.9	1,342,153	572,904	43.3
2000	3,480,371	1,849,585	1,630,786	46.9	1,616,244	679,536	44.3
2001	3,808,476	2,001,757	1,806,719	47.4	1,782,369	790,224	45.4
2002	4,160,795	2,115,269	2,045,526	49.2	2,010,363	918,803	47.3
2003	4,227,354	2,059,254	2,168,100	51.3	2,114,527	1,018,068	50.1
2004	4,363,257	2,071,336	2,291,921	52.5	2,235,905	1,143,900	53.6
2005	4,369,881	1,954,779	2,415,102	55.3	2,279,497	1,230,024	56
2006	4,580,357	1,718,328	2,862,029	62.5	2,736,478	1,394,979	53.3

2.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계속>

(단위: 명, %)

추계신고 인원 (F)	추계 인원비율 ⁵⁾ (F/(E+F))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자(G)	비사업자 인원비율 (G/D)	서면결정인원 ³⁾ (F)	서면결정인원비율 (F/E)	실지조사대상인원 (G)	실사인원비율 (G/E)
				40,851	45.7	48,628	54.3
				94,843	76.2	29,635	23.8
				152,339	90.5	15,961	9.5
				191,536	94.9	10,321	5.1
				207,433	94.5	12,036	5.5
				225,910	94.1	14,106	5.9
				235,290	92.8	18,385	7.2
				248,388	92.2	20,989	7.8
				282,057	92.3	23,484	7.7
				290,593	94.3	17,625	5.7
				320,672	96.5	11,531	3.5
				347,790	96.3	13,523	3.7
939,665	70.4	21,659	1.6	-	-	-	-
765,172	62.4	21,702	1.7	-	-	-	-
769,726	60.4	24,783	1.9	-	-	-	-
717,950	59.2	12,619	1	-	-	-	-
748,762	56.7	20,487	1.5	-	-	-	-
856,124	55.7	80,584	5	-	-	-	-
950,665	54.6	41,480	2.3	-	-	-	-
1,023,137	52.7	68,423	3.4	-	-	-	-
1,012,943	49.9	83,516	3.9	-	-	-	-
989,294	46.4	102,711	4.6	-	-	-	-
965,662	44	83,811	3.7	-	-	-	-
1,221,082	46.7	120,417	4.4	-	-	-	-

주: 1) 납세인원에는 분리과세소득자,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됨
 2) 과세미달추정인원은 연간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되는 납세자 인원임
 3) 서면결정인원에는 확정신고결정자가 포함됨
 4) 1994년 이전에는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인원/확정신고인원
 5) 1994년 이전에는 추계신고인원/확정신고인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시도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단위: 명, %)

연 도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시 계
1987	납세의무자	2,008,049	615,528	174,795	115,311	77,079	55,377	-	-	1,038,090
	과세대상자	665,655	268,182	77,319	36,788	23,485	14,153	-	-	419,927
	과세인원비율	33.1	43.6	44.2	31.9	30.5	25.6	-	-	40.5
1988	납세의무자	2,073,895	647,009	185,879	120,007	81,114	57,504	53,900	-	1,145,413
	과세대상자	707,148	283,377	80,104	40,698	25,965	15,850	15,731	-	461,725
	과세인원비율	34.1	43.8	43.1	33.9	32	27.6	29.2	-	40.3
1989	납세의무자	2,171,912	672,169	194,592	122,836	93,320	59,645	56,433	-	1,198,995
	과세대상자	652,876	276,503	72,238	36,487	24,578	13,440	14,458	-	437,704
	과세인원비율	30.1	41.1	37.1	29.7	26.3	22.5	25.6	-	36.5
1990	납세의무자	2,367,012	697,642	219,641	138,620	104,610	62,760	63,691	-	1,286,964
	과세대상자	743,499	296,072	84,210	42,360	29,684	17,436	17,180	-	486,942
	과세인원비율	31.4	42.4	38.3	30.6	28.4	27.8	27	-	37.8
1991	납세의무자	2,593,388	734,187	273,585	152,066	117,444	75,555	68,382	-	1,421,219
	과세대상자	834,737	319,322	92,552	47,766	34,401	20,742	20,042	-	534,825
	과세인원비율	31.4	42.4	38.3	30.6	28.4	27.8	27	-	37.8
1992	납세의무자	2,811,346	775,707	228,128	160,316	129,290	85,130	77,349	-	1,455,920
	과세대상자	955,323	358,967	93,623	53,331	38,106	22,144	23,400	-	589,571
	과세인원비율	34	46.2	41	33.3	29.5	26	30.2	-	40.4
1993	납세의무자	3,165,119	885,188	277,522	188,624	137,527	90,695	86,790	-	1,666,346
	과세대상자	1,155,000	413,879	109,514	63,019	51,705	28,219	28,672	-	695,008
	과세인원비율	36.5	46.8	39.5	33.4	37.6	31.1	33	-	41.7
1994	납세의무자	3,353,842	900,071	296,831	206,154	144,557	103,476	92,384	-	1,743,473
	과세대상자	1,293,506	418,165	126,288	74,152	56,237	34,162	32,688	-	741,692
	과세인원비율	38.6	46.5	42.5	36	38.9	33	35.4	-	42.5
1995	납세의무자	3,507,003	997,857	328,230	209,079	151,776	102,381	100,966	-	1,890,289
	과세대상자	1,387,535	448,846	136,976	75,112	64,254	38,470	40,178	-	803,836
	과세인원비율	39.6	45	41.7	35.9	42.3	37.6	39.8	-	42.5
1996	납세의무자	3,657,253	1,024,437	324,610	204,114	166,456	102,216	110,088	-	1,931,921
	과세대상자	1,271,602	410,712	122,905	67,141	60,804	31,638	33,438	-	726,638
	과세인원비율	34.8	40.1	37.9	32.9	36.5	31	30.4	-	37.6

3. 시도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계속>

(단위: 명, %)

연 도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시 계
1997	납세의무자	3,437,818	895,698	332,229	192,782	133,661	106,732	105,419	62,943	1,829,464
	과세대상자	1,317,892	420,107	137,996	75,131	54,338	35,060	36,099	23,962	782,693
	과세인원비율	38.3	46.9	41.5	39	40.7	32.8	34.2	38.1	42.8
1998	납세의무자	3,495,183	880,370	307,246	195,982	161,294	103,420	107,169	63,987	1,819,468
	과세대상자	1,249,310	375,090	111,728	71,815	58,954	34,040	31,077	19,689	702,393
	과세인원비율	35.7	42.6	36.3	36.6	36.5	32.9	29	30.7	38.6
1999	납세의무자	3,407,662	909,038	292,551	185,137	167,770	91,424	109,288	63,101	1,818,354
	과세대상자	1,360,291	417,573	127,878	74,445	76,529	36,760	38,417	24,183	795,785
	과세인원비율	39.9	45.9	43.7	40.2	45.6	40.2	35.2	38.3	43.8
2000	납세의무자	3,480,371	885,466	287,837	198,084	170,370	105,541	119,117	62,041	1,828,456
	과세대상자	1,630,786	482,350	147,056	87,260	92,406	45,675	46,437	30,813	931,997
	과세인원비율	46.9	54.5	51.1	44.1	54.2	43.3	39	49.7	51
2001	납세의무자	3,808,476	890,970	339,790	201,735	214,691	124,872	121,655	80,714	1,974,427
	과세대상자	1,806,719	521,830	157,382	95,255	106,040	51,199	52,201	35,070	1,018,977
	과세인원비율	47.4	58.6	46.3	47.2	49.4	41	42.9	43.4	51.6
2002	납세의무자	4,160,795	997,825	361,680	223,325	245,991	139,375	126,582	87,142	2,181,920
	과세대상자	2,045,526	589,319	175,284	105,926	123,243	56,860	57,832	39,146	1,147,610
	과세인원비율	49.2	59.1	48.5	47.4	50.1	40.8	45.7	44.9	52.6
2003	납세의무자	4,227,354	1,022,719	342,892	223,888	232,809	126,068	126,594	85,340	2,160,310
	과세대상자	2,168,100	614,295	179,589	108,489	124,800	63,105	59,276	44,352	1,193,906
	과세인원비율	51.3	60.1	52.4	48.5	53.6	50.1	46.8	52	55.3
2004	납세의무자	4,363,257	1,059,319	336,580	225,007	229,422	117,820	126,460	85,645	2,180,253
	과세대상자	2,291,921	641,920	176,604	111,370	123,560	56,904	59,200	45,265	1,214,823
	과세인원비율	52.5	60.6	52.5	49.5	53.9	48.3	46.8	52.9	55.7
2005	납세의무자	6,543,467	1,065,510	333,716	221,348	226,744	115,284	127,030	83,954	2,173,586
	과세대상자	3,706,279	675,008	184,133	115,511	135,650	65,095	68,828	46,952	1,291,177
	과세인원비율	56.6	63.4	55.2	52.2	59.8	56.5	54.2	55.9	59.4
2006	납세의무자	4,580,357	1,123,251	365,521	230,378	259,656	137,105	139,770	88,745	2,344,426
	과세대상자	2,862,029	780,923	225,370	136,377	166,578	78,511	80,403	56,845	1,525,007
	과세인원비율	62.5	69.5	61.7	59.2	64.2	57.3	57.5	64.1	6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시도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계속>

(단위: 명, %)

연 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도계
1987	납세의무자	233,729	82,604	56,963	136,244	89,646	93,505	113,936	137,817	25,515	969,959
	과세대상자	63,829	20,141	14,267	33,141	21,088	19,868	26,619	39,985	6,790	245,728
	과세인원비율	27.3	24.4	25	24.3	23.5	21.2	23.4	29	26.6	25.3
1988	납세의무자	234,978	83,783	57,094	84,217	93,383	98,805	118,561	132,649	25,012	928,482
	과세대상자	72,311	20,431	14,531	18,957	21,678	19,898	27,733	42,893	6,991	245,423
	과세인원비율	30.8	24.4	25.5	22.5	23.2	20.1	23.4	32.3	28	26.4
1989	납세의무자	255,135	85,953	61,117	86,762	98,867	111,441	116,743	131,482	25,417	972,917
	과세대상자	69,045	16,272	11,820	15,297	17,538	16,759	23,603	38,295	6,543	215,172
	과세인원비율	27.1	18.9	19.3	17.6	17.7	15	20.2	29.1	25.7	22.1
1990	납세의무자	299,171	85,473	66,121	96,176	105,513	115,062	118,538	164,300	29,694	1,080,048
	과세대상자	86,209	17,793	14,179	17,950	20,721	19,229	27,464	45,393	7,619	256,557
	과세인원비율	28.8	20.8	21.4	18.7	19.6	16.7	23.2	27.6	25.7	23.8
1991	납세의무자	334,216	93,059	72,610	104,754	110,731	116,561	129,845	176,058	34,335	1,172,169
	과세대상자	99,996	21,833	17,195	21,270	24,433	22,978	32,365	50,351	9,491	299,912
	과세인원비율	29.9	23.5	23.7	20.3	22.1	19.7	24.9	28.6	27.6	25.8
1992	납세의무자	376,085	93,425	77,606	110,145	120,729	122,684	158,031	254,266	42,455	1,355,426
	과세대상자	121,302	23,702	21,266	24,402	27,859	25,731	36,874	72,102	12,514	365,752
	과세인원비율	32.2	25.4	27.4	22.1	23.1	20.9	23.3	28.3	29.5	26.9
1993	납세의무자	467,886	109,934	84,312	118,144	127,970	123,492	157,306	265,214	44,515	1,498,773
	과세대상자	156,574	27,921	25,069	28,163	32,124	27,583	44,660	105,744	12,154	459,992
	과세인원비율	33.5	25.4	29.7	23.8	25.1	22.3	28.4	39.9	27.3	30.7
1994	납세의무자	542,772	123,641	89,239	121,864	133,741	120,196	160,233	280,445	38,238	1,610,369
	과세대상자	210,883	41,129	29,683	31,551	35,926	30,359	47,746	111,229	13,308	551,814
	과세인원비율	38.9	33.3	33.3	25.9	26.9	25.3	29.8	39.7	34.8	34.3
1995	납세의무자	548,778	93,379	102,628	130,844	144,178	137,319	164,411	254,307	40,870	1,616,714
	과세대상자	224,944	38,168	34,639	37,379	42,638	35,763	58,069	97,769	14,330	583,699
	과세인원비율	41	40.9	33.8	28.6	29.6	26	35.3	38.4	35.1	36.1
1996	납세의무자	596,689	102,553	112,504	132,737	136,375	136,543	191,039	277,230	39,662	1,725,332
	과세대상자	219,589	33,708	29,379	33,825	36,317	33,773	54,933	89,859	13,581	544,964
	과세인원비율	36.8	32.9	26.1	25.5	29.6	24.7	28.8	32.4	34.3	31.6

3. 시도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계속>

(단위: 명, %)

연 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도계
1997	납세의무자	602,985	108,500	105,800	128,758	134,238	128,325	180,495	177,696	41,557	1,608,354
	과세대상자	251,140	29,947	29,578	35,836	35,800	30,122	52,110	57,012	13,654	535,198
	과세인원비율	41.6	27.6	28	27.8	26.7	23.5	28.9	32.1	32.9	33.3
1998	납세의무자	607,911	120,467	107,556	130,895	136,466	135,538	183,491	211,144	42,247	1,675,715
	과세대상자	231,734	45,155	26,877	31,855	38,481	35,639	58,342	64,969	13,865	546,917
	과세인원비율	38.1	37.4	25	24.3	28.2	26.3	31.8	30.7	32.8	32.6
1999	납세의무자	551,856	115,840	104,658	125,096	123,395	122,585	178,616	225,267	41,995	1,589,308
	과세대상자	258,752	35,250	31,820	37,906	36,959	31,023	55,191	64,643	12,962	564,506
	과세인원비율	46.9	30.4	30.4	30.3	30	25.3	30.9	28.7	30.9	35.5
2000	납세의무자	568,986	119,016	114,071	136,348	139,031	120,784	191,107	221,477	41,095	1,651,915
	과세대상자	322,991	43,674	39,869	45,551	46,505	36,564	66,649	79,482	17,504	698,789
	과세인원비율	56.8	36.7	35	33.4	33.4	30.3	34.9	35.9	42.6	42.3
2001	납세의무자	707,737	122,338	114,817	137,868	143,633	132,246	200,711	226,768	47,931	1,834,049
	과세대상자	379,032	47,156	43,162	49,159	50,536	40,344	72,061	87,412	18,880	787,742
	과세인원비율	53.6	38.5	37.6	35.7	35.2	30.5	35.9	38.5	39.4	43
2002	납세의무자	809,365	136,482	120,312	147,716	142,821	127,298	202,595	241,103	51,183	1,978,875
	과세대상자	442,005	54,327	47,791	54,545	55,989	44,684	80,046	97,486	21,043	897,916
	과세인원비율	54.6	39.8	39.7	36.9	39.2	35.1	39.5	40.4	41.1	45.4
2003	납세의무자	870,212	140,487	120,870	146,236	144,806	132,518	201,620	255,984	54,311	2,067,044
	과세대상자	477,643	60,334	50,239	58,968	61,565	48,835	81,722	110,198	24,690	974,194
	과세인원비율	54.9	42.9	41.6	40.3	42.5	36.9	40.5	43	45.5	47.1
2004	납세의무자	948,753	138,583	120,119	156,221	144,649	140,078	210,776	269,346	54,479	2,183,004
	과세대상자	533,888	60,024	51,319	69,700	62,179	57,090	92,707	125,378	24,813	1,077,098
	과세인원비율	56.3	43.3	42.7	44.6	43	40.8	44	46.5	45.5	49.3
2005	납세의무자	967,652	136,949	122,629	157,734	142,154	137,024	209,418	268,806	53,929	2,196,295
	과세대상자	563,059	62,451	56,365	69,410	65,122	55,089	95,786	131,107	25,536	1,123,925
	과세인원비율	58.2	45.6	46	44	45.8	40.2	45.7	48.8	47.4	51.2
2006	납세의무자	1,016,34	136,735	128,863	160,815	145,536	123,825	212,389	256,321	55,106	2,235,931
	과세대상자	673,994	73,092	70,757	90,688	77,414	64,487	112,448	145,657	28,485	1,337,022
	과세인원비율	66.3	53.5	54.9	56.4	53.2	52.1	52.9	56.8	51.7	59.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4. 시도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1994~2006)

(단위: 명, 백만원)

연 도	1984		1985		1986		1987		1988		1999	
	신고인원	결정세액	신고인원	결정세액	신고인원	결정세액	신고인원	결정세액	신고인원	결정세액	신고인원	결정세액
합계	1,266,489	3,129,612	1,356,606	3,478,045	1,247,442	3,669,079	1,299,442	4,080,024	1,225,614	3,015,607	1,342,153	3,557,819
서울특별시	423,282	1,547,576	449,625	1,693,616	403,297	1,810,862	416,677	2,006,732	379,503	1,379,410	412,010	1,616,160
부산광역시	122,910	286,936	132,179	322,611	122,422	330,490	136,862	386,171	116,471	265,216	126,578	298,793
대구광역시	70,003	174,879	75,012	193,010	66,477	197,958	73,290	229,063	70,455	178,382	73,845	207,310
인천광역시	55,513	101,350	63,716	114,243	61,933	120,298	53,674	106,105	60,213	93,180	74,829	127,066
광주광역시	34,068	53,505	34,012	61,461	28,689	62,968	34,877	72,263	32,830	61,134	36,410	66,627
대전광역시	32,498	57,394	37,074	65,260	33,017	65,665	35,323	78,114	33,546	65,358	38,018	74,624
울산광역시	-	-	-	-	24,284	46,727	23,493	57,079	21,644	41,987	23,833	47,539
시계	738,274	2,221,640	791,618	2,450,201	740,119	2,634,968	774,196	2,935,527	714,662	2,084,667	785,523	2,438,119
경기도	198,404	366,470	216,532	451,218	214,611	488,731	244,905	587,396	235,133	443,280	257,052	552,209
강원도	32,032	43,252	35,016	49,474	30,862	52,828	29,075	52,780	31,471	50,337	33,685	57,062
충청북도	28,244	45,368	33,209	53,997	28,950	52,540	29,278	60,596	30,147	51,778	31,270	60,257
충청남도	30,564	42,410	35,751	51,087	32,736	56,112	35,412	63,102	33,185	54,405	37,356	62,946
전라북도	35,821	56,550	44,322	65,038	35,538	64,550	35,376	71,348	33,638	61,671	36,509	69,310
전라남도	29,360	39,904	32,498	47,704	35,512	48,103	29,532	48,964	28,489	43,472	30,452	50,467
경상북도	51,597	90,855	57,969	100,150	53,485	105,733	51,702	110,191	47,836	90,309	54,113	106,308
경상남도	109,117	197,855	95,419	181,157	62,858	135,515	56,504	115,741	58,483	106,962	63,481	128,446
제주도	13,076	25,308	14,272	28,019	12,771	27,999	13,462	34,379	12,570	28,726	12,712	32,695
도계	528,215	907,972	564,988	1,027,844	507,323	1,032,111	525,246	1,144,497	510,952	930,940	556,630	1,119,700

4. 시도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1994~2006) <계속>

(단위: 명, 백만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신고인원	결정세액	신고인원	결정세액	신고인원	결정세액	신고인원	결정세액	신고인원	결정세액	신고인원	결정세액	신고인원	결정세액
1,616,244	4,803,125	1,782,369	5,537,259	2,010,363	5,745,486	2,114,527	6,288,663	2,235,905	6,943,835	2,279,497	7,437,191	2,736,478	9,232,353
477,812	2,155,702	514,995	2,565,315	579,680	2,670,087	612,819	2,935,365	636,598	3,233,234	652,749	3,478,884	764,795	4,282,919
145,614	377,021	156,207	419,620	171,422	424,762	174,632	457,550	180,210	492,759	180,957	508,310	212,576	605,629
86,288	247,425	94,337	260,252	104,319	261,851	107,206	274,041	110,807	299,370	111,510	317,298	133,864	409,780
91,768	182,462	104,434	214,833	119,833	231,049	122,429	234,912	130,311	252,874	130,827	257,007	158,294	330,745
45,283	96,034	50,652	105,835	56,669	104,371	58,077	107,369	60,779	117,261	61,948	133,128	74,306	175,514
45,937	106,371	51,784	110,869	56,697	112,522	58,398	122,570	61,890	131,560	63,235	144,302	77,698	188,019
30,512	66,953	34,633	75,099	39,033	73,465	40,735	82,233	43,822	95,862	44,316	103,463	54,300	132,419
923,214	3,231,968	1,007,042	3,751,823	1,127,653	3,878,107	1,174,296	4,214,040	1,224,417	4,622,920	1,245,542	4,942,392	1,475,833	6,125,025
321,969	808,062	373,686	952,189	438,647	1,053,131	473,720	1,202,083	514,372	1,347,747	534,392	1,473,587	648,442	1,850,344
42,360	79,689	46,048	85,290	49,953	84,398	53,560	91,118	55,765	95,717	54,000	101,538	66,989	123,471
39,378	79,156	42,555	87,202	46,597	85,029	48,937	93,479	51,663	102,689	51,971	108,278	65,634	135,761
45,048	85,287	48,482	96,156	54,219	94,269	57,631	104,369	64,012	129,384	66,085	136,240	83,149	166,849
46,106	97,700	49,802	104,991	54,602	97,378	56,417	100,909	58,464	107,380	58,861	110,517	71,463	144,854
36,250	67,486	39,560	74,850	43,456	71,452	44,520	73,146	46,929	76,981	48,650	84,831	59,175	102,106
65,907	138,263	71,020	144,914	78,063	139,180	80,651	145,771	86,491	164,336	85,633	170,127	104,505	209,419
78,683	172,436	85,826	191,903	96,462	195,605	102,931	216,128	110,773	243,803	111,480	256,954	135,250	313,140
17,329	43,078	18,348	47,941	20,711	46,937	21,864	47,620	23,019	52,877	22,883	52,727	26,038	61,384
693,030	1,571,157	775,327	1,785,436	882,710	1,867,379	940,231	2,074,623	1,011,488	2,320,915	1,033,955	2,494,799	1,260,645	3,107,32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감세안 봇물..재원 마련 가능할까

여당인 한나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부가가치세 감면, 소득세법 개정 등 선심성 감세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이미 법인세·유류세 인하, 유가환급금 지급, 할당관세 인하 등 6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밝힌 가운데 세수 비중이 큰 소득세·부가세마저 인하될 경우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런 여당의 잇단 감세안 발표에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정치적 논리에 따라 추가 감세안이 추진될 경우에 대비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감세재원 마련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감세정책이 재정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감세정책은 재정여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여당, 3대 세목 “모두 인하”

여당은 전반적으로 세율 인하 여력이 생겼다고 보고 경기 침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제 인하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런 관점에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3대 세목인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를 모두 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부가가치세는 특정 품목에 한해 서민계층이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주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일례로 쌀·밀가루·라면 등 품목을 소비한 증거를 보여주면 이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일부분을 환급해주는 방식 등이다.

지난해 징수된 부가가치세는 국세 161조 5천억원 중 40조 9천억원(25.3%)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여당은 국세 중 두번째로 큰 세목인 소득세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나라당은 소득세 과표 구간을 상향하는 방식을, 재정은 과표구간별로 8~35%인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등은 낮은 과표구간에 소득세율을 1~2%포인트 낮추고 높은 과표 구간에 소득세율을 1% 올리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여당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며 중소기업 최저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재산세 인하에 대해선 이미 당정이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봤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여당이 당론을 확정하지 않았고 정부도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 정부, 미시조정에 초점

조세연구원의 입을 빌어 서서히 흘러나오는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은 여당에 비해 소극적이다.

정부는 소득세 인하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세연구원도 지난해 과표

조정 및 유가환급금 등으로 소득세 인하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만큼 2010년부터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구원은 또 면세자 축소, 세계 간소화, 소득파악률 제고 등 소득세 구조개선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 조정에 대해선 매우 신중한 모습이다. 면세 대상이 너무 넓어 범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려는 정책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최대 세목이고 한번 결정하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의 경우 원칙적인 발언은 있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선 '8월말 세계개편안 때까지 검토해보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재산세 및 증부세 인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조세연구원 박형수 기획조정실장은 "감세에 대한 원칙은 정해졌는데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방법론에 대해 정치권이 매우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다"며 "기존에 제시한 법인세 인하안 및 유가환급금 등만 해도 정부의 감세 여력은 거의 다 썼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좀 더 실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정부의 재정 여력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단계에선 결국 우선 순위를 정해 필수적인 세목만 감세하게 될 것"고 말했다.

◆ 소득세·부가세 인하..예산절감 여부에 좌우

이처럼 정치권에서 선심성 감세안이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실제 재정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시행되거나 국회 통과 후 시행 예정인 감세정책 규모는 현재까지 약 6조원 내외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3월에 단행된 유류세 10% 인하가 7천억원,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할당관세 인하가 5천 500억원, 법인세 인하 1조 8천억원, 유가환급금 2조원 등이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택시용 LPG 부탄 개별소비세 면제 등도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현재까지의 감세정책만으로는 아직 재정건전성

을 훼손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초과세수 14조 2천억원 중 절반 가량인 7조원은 세원투명성 강화 등 구조적·제도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정부는 이런 구조적·제도적 요인에 의한 세입여력 증대분은 항구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다소간의 증감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매년 7조원 규모의 감세여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발표된 감세정책 규모인 6조원 내외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정치권에서 추가로 추진중인 감세정책에 있다. 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으로 꼽히는 소득세·부가세에다 재산세·증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인하될 경우 매년 발생하는 7조원 규모의 감세여력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소득세·부가세 등의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 밀어붙일 경우에 대비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감세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다.

새 정부는 이미 출범과 동시에 올해 2조원, 내년 18조원 등 모두 20조원의 예산을 절감, 이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 서민주거안정 지원 등에 사용하는 한편 감세 재원으로도 활용하기로 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부가세 인하방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내년부터이므로 결국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추진하면 감세재원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입이 늘어나지 않아도 세출을 줄일 수 있다면 그만큼의 감세여력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정치권의 감세안이 모두 추진된다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8년 8월 5일자〉

“교육세 · 농특세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 “교육 · 농특세, 세목 없애고 본세에 통합해야”
- 교육 · 농촌 지원 축소될까 우려도

담배와 맥주 석유 등에 부과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세와 특별소비세 등 본세에 합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납세협력 비용 감축 및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매년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발표되는 조세연구원의 보고서는 기획재정부가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것으로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연구원은 우선 소비세와 증권거래세 주세 등에 주렁주렁 달려 있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낳는 만큼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세와 농촌특별세 교통세 등은 대표적인 목적세로 과세 단계에서부터 어떤 분야에 사용될 것인지 용처가 정해진 세금이다. 그간 정부 안팎에서는 이같은 목적세가 ‘세입과 세출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데다, 해당 재원이 특별회계에 경직적으로 배분되는 만큼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교육세는 지난 82년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마련됐고, 농어촌특별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통세는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94년 각각 도입됐다. 모두 한시적으로 도입된 세금이지만, 일몰기한이 연장되면서 존치돼 왔다.

연구원은 “교육세와 농특세는 폐지하고 본세에 통합해야 한다”면서 “세수여건과 대체재원 확보가 우려된다면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조세연구원의 검토안대로 교육세와 농특세를 폐

지한다 해서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거나 교육과 농어촌 지원 예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세목은 없어지지만 해당 세금은 특별소비세와 주세 증권거래세 등의 본세에 통합돼 부과되기 때문이다. 교육세와 농특세 폐지 후 교육과 농어촌 지원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배분할지는 예산당국과 국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육세와 농특세가 사라질 경우 그간 많지는 않지만 일정규모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교육과 농어촌 지원사업이 다른 사업에 밀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통세는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봤다. 교통세의 경우 내국세의 7%를 차지할 정도로 세수 비중이 높은 만큼 개별소비세 등으로 편입시켜 일반회계로 전입하거나,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환경부문과 에너지고효율 사업 등으로 예산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연구원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납부 대상 세목과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세목별 세금신고와 납부횟수를 축소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2008년 7월 31일자〉

부동산 감세, 소득세 확대로 보전 추진

정부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감세 방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세금을 늘리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만 추진하면 정부 재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율을 올리기도는 별다른 명분 없이 세금 감면 특혜를 받는 각종 공제 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감세 규모만 17조원… 재정 악화 우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8일 “각종 분야에서 준비하고 있는 감세안과는 별도로 일부 분야에서 세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세 정책으로 재정이 파탄나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감세 방안은 정부가 견뎌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만 유류세 10%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할당관세 추가 확대 등 총 4조원에 이르는 감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와 법인세, 소득세 등 전망위험적인 감세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모두 현실화한다면 정부가 덜 거둬들이는 세금은 총 16조~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최대한 조세 지출을 줄인다 해도 감당하기 힘든 규모다.

◆ ‘증세 카드’로 재정 파탄 막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라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세 기조는 그대로 가되 재정 안정을 위해 명분 없는 비과세나 감면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우선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소득세 납세자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근로소득 공제 등을 축소해 저소득층도 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근로자의 50% 정도만 세금을 내고 있어 세금을 안내는 계층에선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소득세제를 재정,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219개에 이르는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농어민 유류세 면제,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 공제 등을 축소하는 대형 방안이 발표될 수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소득·소비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추려 세제 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 조세연구원은 24~25일 잇따라 개최한 토론회에서 △금융·보험·의료·보건·교육 등 분야의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 축소 △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공기업 업무에 부과세 과세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분야 거래세 도입 △개인간 미술품 거래에 대한 양도세 부과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대부분 논란이 많은 사안들이라 정부의 최종 방침이 주목된다.

(파이낸셜뉴스 2008년 7월 28일자)

작년 가구당 담배소비세 부담 7만9천원

저소득층일수록 실효세율 높아

지난해 가구당 담배소비세 부담은 평균 7만 9천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담배수요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저소득층일수록 실효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조세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담배소비세 부담은 1982년(전매익금을 세액으로 환산) 가구당 평균 2만원에서 2001년 10만 2천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7만 9천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세율인상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감소한 것은 소비감소 때문으로, 담배는 1990년대 중반까지 소비가 증가하다 이후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계층별로 담배소비세 부담을 따져보면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가구는 연간 3만 8천원을 부담했고 2분위 6만원, 3분위 7만원, 4분위 7만 4천원, 5분위 8만 7천원, 6분위 9만 1천원, 7분위 9만 6천원, 8분위 8만 8천원, 9분위

9만 7천원에 이어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는 9만 1천원으로 집계됐다.

조세연구원은 "담배수요의 소득 비탄력성으로 인해 소득계층별 담배소비비는 평준화 돼 있다"면서 "빈곤층·노년층 비율이 높은 1~2분위를 제외하면 소득계층별 담배소비세의 절대세부담 격차가 매우 작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득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실효세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역진적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소비세의 실효세율은 1분위가 0.41%로 가장 높았고 2분위 0.39%, 3분위 0.33%, 4분위 0.28%, 5분위 0.27%, 6분위 0.24%, 7분위 0.22%, 8분위 0.17%, 9분위 0.16%에 이어 10분위가 0.10%로 가장 낮았다.

조세연구원은 "담배의 경우 세부담의 역진성이 있으나 형평성보다는 흡연의 유해성에 기반을 둔 사회적 외부비용 문제가 더 심각하므로 후자에 초점을 맞춰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08년 7월 26일자〉

“소득세율 1%p 인하 1년 늦춰 2010년부터”

조세연구 ‘소득세제 개선 토론회’

소득·특별공제 줄이고 인적공제는 확대 필요
골동품 양도차익 과세...물가연동제 도입 신중을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1년 늦춘 2010년부터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논란이 됐던 개인간의 서화·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열린 조세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제 개선방

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으로 발표된 이번 방안은 오는 8월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전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006년 기준 3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유사한 수준에 있는 등 변동을 야기할 만한 특별한 요인은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2007년 소득세수(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가 전년 대비 18.7%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에 있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 소득세율 인하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심을 끄는 소득세율 인하 시기에 대해서 전 연구위원은 기존 감세정책이 끝나는 2010년부터 적용해야 할 것으로 제시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2009년부터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상태다.

인하 시기를 2010년으로 늦춘 것은 올해부터 소득세율이 구간별로 10~20% 상향조정 됐고,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유가환급금 규모가 소득세율 1%p포인트 인하와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는 점을 감안했다. 또 여러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소득세율 인하는 2010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세율 인하를 위해서는 면세자 축소, 세제 간소화, 소득파악률 제고 등 소득세 구조 개선 노력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공제체계 개편과 관련, 소득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과세기반 확충에 제약이 되는 근로소득공제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16개 항목에 이르는 특별공제제도 역시 근로자의 면세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적공제 등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가 있는 공제항목은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득세제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뚜렷한 이론적·법적 근거 없이 비과세되고 있는 부분들도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특히 상속·증여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 간의 서화·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하고 공무원 직급보조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금 등 법적 근거 없이 비과세되고 있는 부분들도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자동 조정해주는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물가상승이 매년 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높지 않고, 공제 확대 등 세부담 경감정책이 추가로 시행될 경우 소득세제의 재원조달 기능을 저해하며, 정상적 소득세 구조가 전제되어야 하나 현행 세제는 그 기능이 취약해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자녀세액공제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영국 등에서는 순수 세제혜택이 아닌 근로장려금(EITC) 방식의 환급형 세액공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EITC가 시행되므로 이 제도가 정착된 이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세연 소득세제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율 2010년부터 인하 • 소득세율 인하 때 소득세 부담구조 개선 병행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공제 · 특별공제(16개) 점진적 축소, 인적공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과세저변 확대 • 개인간의 서화 · 공동품 거래 양도차익 부과 • 사내근로복지금 지원금,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 과세

이종구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구 분	적용세율	개정세율	세수증감(예상)
1,200만원 이하	8%	6%	1조 7,533억원 감소
1,200만~4,600만원	17%	16%	2조 6,105억원 감소
4,600만~8,800만원	26%	26%	-
8,800만원 초과	35%	36%	1조 6,134억원 증가

※2009년도부터 실행

〈서울경제 2008년 7월 25일자〉

재정포럼

2008년 8월호 통권 제146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우석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월간 재정포럼

2008년 8월 16일 발행 / 제13권 제8호(통권 제146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라 10107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